

연구보고서 2007-13

# G8국가 경호시스템 분석을 통한 경찰경호발전 방안 연구

《研究陣》

연구위원 :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목 차

제1장 서론 : 연구목적 및 방법	5
제2장 한국의 경호체계와 현황	10
1. 경찰경호조직과 현황	10
2. 대통령 경호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	18
3. 한국의 경호체계	26
제3장 경찰주도형 경호체제 국가의 현황	28
1. 영국의 경찰경호체계와 현황	28
2. 독일의 경찰경호체계와 현황	42
3. 캐나다 연방경찰(RCMP)의 경호체계와 현황	67
4. 일본경찰의 경호체계와 현황	77
제4장 특별경호조직 주도형 경호체제 국가의 현황	89
1. 국토안보부 소속의 경호실(Secret Service)	89
2. 국무부소속의 경호보안국(DS)	104
제5장 특별 및 일반경찰 혼재형 경호체제 국가의 현황	109
1. 프랑스의 경찰체계	109
2. 경찰청소속 경호부서	109
3. 파리지방경찰청(La 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111
4. 군인경찰(La Gendarmerie Nationale)의 경호부서	111
제6장 결론	112
1. 선진 각국제도의 시사점들	112
2. 바람직한 경호경찰 발전 방안 모색	116



## 제1장 서론 : 연구목적 및 방법

### 1. 문제제기 및 필요성

21C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종교, 이념, 인종, 민족, 계층간에 다양한 이해관계 및 갈등이 대립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극단적 방법과 수단들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집단이나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국가)에게는 테러와 암살을 자행하는 일까지 빈번하다. 이러한 暗殺이나 테러행위는 한 국가의 元首(VIP)뿐만 아니라 기업가, 사회지도자 등으로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5월 모정당대표에 대한 피습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정당대표 등 중요정치인을 경호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요인경호법案】이 제출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동향이다. 이처럼 신변경호가 필요한 중요인사의 범위가 확대되면서,<sup>1)</sup> 경호경찰의 역할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지도자를 비롯한 중요인사에 대한 危害야기는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암살이나 테러에 의한 국가원수나 중요인사의 희생으로 국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전쟁유발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가차원의 정치적 혼란과 위기발생,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발생 등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원수나 중요인사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국가원수 등에 대한 경호는 국가기능의 무사온전성(無事穩全性) 유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마다 공식 경호조직을 구성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1)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요인경호법안】에는 국외경호대상자로서, 행정수반이 아닌 총리, 왕족, 부통령, 부총리와 그 배우자, 전직외국 대통령, 전직총리,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중요인사, 중앙정부의 장관급 이상 중요인사 등을 포함시킨 것은 매우 긍정적인 입법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선진 각국에서는 자국의 각료급(장관급)인사들, 고위법관 등에 대해서도 신변경호를 실시하고 있는 점은 향후 한국 경찰의 경호직무 재편과정에서 대단히 참고될 만한 내용이다.

중요인사에 대한 危害를 사전에 예방·제거하는 경호작용은 전형적인 경찰작용이다. 공공의 안녕(oeffentliche Sicherheit)과 질서(gute Ordnung)를 유지하고, 위협을 방지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삶의 영역(sicheres Gebiet)을 제공하는 국가의 기능은 통상 경찰작용을 통해서 달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호활동은 경찰직무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경호직무가 근대경찰(1894년) 태동이후 1961년 5월까지의 일반경찰(국내경찰서, 경무대경찰서)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그 후 5.16 군사쿠데타를 기점으로 軍출신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조직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이러한 특별조직의 모델이 되었던 것은 미국의 「Secret Service」였다.

한편, 한국경찰은 경호직무에 있어서 현재까지 많은 人的·物的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보충적·2차적 역할(조직, 권한, 전문성, 등)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경찰출신 인사를 경호책임자에 임명하는 등 경호부서에 대한 문민화 조치가 취해진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른 바 선진국 클럽이라고 일컬어지는 G7(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최근에는 러시아를 포함시켜 G8으로 부르기도 함)국가들의 경호조직 사례를 보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반경찰조직(연방경찰, 국가경찰 혹은 수도경찰)이 경호직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경호조직을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경찰조직 혹은 일반 경찰직무의 일환으로 이해하면서, 책임자의 직급도 次官補(1급, 치안정감) 혹은 2-3급(치안급 혹은 경무관) 정도에 해당하는 경찰간부들이 임명되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G8 국가들이 대통령, 국왕, 총리 및 각급 주요인사의 신변보호 임무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중요인사에 대한 높은 테러가능성과 각종 危害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경호직무를 전문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G8 국가들의 “경찰중심 경호활동”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들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경호조직, 연방/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업무협조, 권한·직무 및 책임한계, 갈등상황의 해결, 경호대상의 범위, 직무전문성, 인사관리 관행

등에 대한 자료는 한국경찰에 매우 필요시 된다.

국가기능의 무사온전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중요인사 신변보호 임무는 경찰의 중요한 직무영역에 속한다.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호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의 통합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찰의 경호직무 전문성, 경찰경호조직의 상설·통합화, 업무한계 등에 대해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지방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경찰경호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가 절실했다.

또한 경호직무의 수요(前·現職 국가원수, 경호대상의 확대, 정당대표의 신변보호 필요성, 다양한 위협요인 상존 등) 및 중요성이 증가함으로써, 경찰 경호직무의 전문성과 인력, 조직에 대한 획기적인 접근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필자는 경호직무를 전형적인 경찰작용의 일환으로 이해하면서, 대규모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면서 경호직무를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일반경찰이 그 책임과 위상에 걸맞는 권한·조직·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데 문제의식에 공감해왔다. 따라서 기히 수행한 바 있는 “경찰경호 시스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구체적, 실증적·광범위한 비교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본 연구결과는 「지방자치 경찰제」시행에 따라 경호직무와 관련한 바람직한 경찰경호조직(案)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및 G8 국가들간의 경호시스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경찰경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 2. 연구 방법 및 대상관서

### 1) 연구방법

본연구는 경호제도 및 직무와 관련하여 경찰실무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

논증이나 문헌연구보다는 경험적 연구방법에 치중하게 되었다. 즉 필자가 G8 국가들의 경찰경호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경호경찰관 및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각종 내부 문건(공문서)을 입수하는 한편, 공개된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다. 따라서 경호기법을 연구하는 실질적인 면보다는 경호시스템, 경찰경호조직의 운영관리적인 면에서 G8 국가들의 경호시스템을 대상으로 이들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방법이 활용되었다.

필자는 그동안 이러한 국제적 비교 연구를 수차례 수행하였는 바, 선진 각국의 전문가 및 경찰관계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Network)을 유지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현지 대사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 등의 협조를 받아, 선진 각국의 경찰경호 조직에 가장 근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기존연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헌분석 및 새로운 자료들을 인용, 소개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본연구가 선진 각국(G8)의 경호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교 실증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수행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었다.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국가들과 경찰 경호조직들을 우선적으로 방문, 연구 분석하게 되었다.

## 2) 연구대상 관서 및 방문일정

### ▶ 2006. 6.- 8월경

- 독일 연방내무성 연방수사청(BKA) 경호국(SG): 베를린소재 연방국경수비대(BGS) 서부지역대(West) 및 동부지역대(Ost) Stuttgart 경찰청(바덴뷔르템베르크州)
- 영국 수도경찰청(MPS) 경호국

### ▶ 2006. 10월경

- 일본 경찰청 및 동경 경시청, 항공경찰본부

▶ 2006. 12- 2007. 2월경

○ 캐나다 연방경찰청(RCMP) 및 벤쿠버경찰청

한편, 이태리 및 러시아경찰은 금번 연구에서는 여러 제약요건으로 제외하였다.

###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선진 각국의 경호제도에 대한 실증연구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학문분야 (경호학, 경찰학 등) 및 경찰실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 지방자치경찰제 시행에 즈음하여 경찰경호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경찰 경호조직, 위상정립, 직무 및 권한범위 설정에 참고한다.
- 경호부서 전종요원에 대한 인사관리(채용, 교육, 승진, 전보, 보수, 근무여건, 적정 요원 數 등) 및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정책 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이다.
- 선진 각국의 경호체제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경찰주도형 통합경호조직」 마련에 이론적 논거를 제시한다.
- 각국의 경호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경호대상자의 범위 등 한국의 관련 직무범위 확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제2장 한국의 경호체제와 현황

### 1. 경찰경호조직과 현황

본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부터 2007년까지의 경찰경호조직의 변천과정과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 1)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제2공화국까지

- 경찰 경호조직으로서의 경무대경찰서 -

##### (1) 건국경찰과 경호직무

1947년 당시 요인들이 암살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 경호를 해주었다. 李承晩 박사가 돈암장, 마포장을 거쳐 이화장에 안착하게 되면서 경호요원들이 파견되었던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경찰은 제헌헌법에 따라 새로운 행정조직의 체계 속에서 미 군정하의 경무부가 내무부의 治安局으로 격하 조정되었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해 대한민국 정부를 다시 세우자, 대한제국 때의 전통이 되살아나 내무부 치안국(경찰청의 전신) 산하 경위부가 이승만(李承晩) 대통령 호위를 담당하게 되었다.<sup>2)</sup>

그러던 중 1949년 2월 23일 舊왕궁을 관할하던 창덕궁경찰서는 폐지되고 경무대 경찰서(景武臺는 청와대의 옛 이름이다)를 신설되었다. 경무대경찰서가 대통령의 경호<sup>3)</sup> 및

2) [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李承晩 대통령은 거처를 경무대로 옮기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서정학 경무관과 총경이었던 金正旭씨가 경무대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다. 金正旭씨는 내무부 치안국 소속이면서 경무대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다.

관저의 경비를 맡게 되었다. 同年 12월 29일 내무부훈령 25호로 “경호규정”이 제정되면서, “경호(警護)”라는 용어가 처음 쓰이게 되었다. 즉 경호는 경찰이 대통령을 호위한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경호라는 용어의 상용과 경호업무체제가 정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경무대 경찰서장은 경호책임자로서 대통령 경호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때의 경무대 경찰서 조직은 경무계, 사찰계, 경비계로 구성되었다.<sup>4)</sup>

## (2) 5.16군사쿠데타와 경무대경찰서의 폐지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로 4.19혁명이 발발하였으며(제1공화국 붕괴),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下野하였다. 4. 19의거 이후 민주당이 정권을 인수하여 제2공화국이 탄생하였다. 당시 부통령 경호는 서울시경이 담당하였다. 1960년 4·19의거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동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을 통하여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전환되었다. 권력이 대통령(尹潽善)에서 총리(張勉)로 이동하자, 즉 제2공화국 시대에는 국무총리의 지위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대통령경호를 담당해오던 경무대 경찰서는 폐지되고(1960년 6월 29일),<sup>5)</sup> 동년 8월 13일 민주당정부를 중심으로 제2공화국이 수립됨에 따라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에서 “경무대경찰관 파견대”를 설치하여 대통령의 경호 및 대통령관저의 경비를 담당하였다. 동년 12월 30일 윤보선 대통령이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칭함에 따라서 “경무대 경찰관 파견대”는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sup>6)</sup> 즉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 소속 경찰이 청와대경호를 담당했다.<sup>7)</sup>

그런데 이후 매일 계속되는 데모로 국가와 사회는 안정되지 못하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발발하였으며, 박정희(朴正熙) 소장이 주도한 군사혁명은 경찰경호를 마감시켰다.

全權을 장악한 박소장이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어(1961년 5월 20일 발족) 의장에

3) 경무대에서 李承晩(이승만) 建國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던 경호원은 스무 명 정도였다고 한다.

4) 1950. 4.21 대통령 경호는 경무대 경찰서가 담당하였으며, 경무대경찰서 편제는 다음과 같다: 경무계 → 경무, 통신, 경리업무; 사찰계 → 사찰 형사업무; 경비계 → 경비, 보안, 수행, 차량, 이화장 관리업무 등이었다.

5) <http://www.pss.go.kr/warp/kr/intro/history/>.

6) 장기봉, “21세기 國家警護機關 MODEL에 관한 研究”,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0면.

7)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103/nd2001030150.html](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103/nd2001030150.html).

취임하자, 박종규(朴鐘圭) 소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재건 최고회의의장(軍)경호대」가 창설돼 박소장을 경호했다. 1961년 6월1일 창설과 동시에 중앙정보부는 同경호대를 흡수하고, 그 후 중앙정보부는 11월 14일 “경호대설치령(중앙정보부령 제25호)”을 제정해, 행정과·기획과·경호과·정보과·기동경호의 5개 과, 37명으로 편제된 중앙정보부 경호대를 발족시켰다.<sup>8)</sup> 당시 경호대는 국가원수, 최고회의의장, 副의장, 내각수반, 국민 및 기타 경호대장이 지명하는 주요인사의 신변보호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1963년 12월 제5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법률 제1507호인 대통령경호실법에 근거하여 독립된 정부기구인 「대통령경호실」이 창설되었다.<sup>9)</sup>

이처럼 경호실과 중앙정보부(現 국가정보원)는 5.16 군사쿠데타를 거치면서, 일반경찰 조직에서 분리된 채, 軍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조직으로 발전되었다. 이후 정보조직과 경호조직은 지난 40여년간 권력의 부침과정에서 막강한 權府로서의 위상을 누리면서, 현재의 국가정보원, 경호실로 변천되었다.

## 2) 제3공화국에서 2004년 12월까지 경찰경호조직 변천

경무대경찰서가 폐지된 후, 경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직무와 관련하여 경호실에 파견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주로 101경비단 및 22특별경호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949년 2월 23일 경무대 경찰서가 신설되어 유지되다가,

1960년 6월 28일 경무대경찰서 폐지된 바 있다. 같은 해 8월 13일 서울시경 경비과 소속의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설치되어 대통령경호직무를 담당하였다.

1967년 1월 12일 「청와대 파견대」를 경호실 「경비과」로 개칭되었다.

같은 해 2월 6일 경호실 경비과를 「제7과」로 개칭하였다.

1974년 10월 31일 서울시경 소속의 「22특별경비대(대장은 총경급)」가 설치되었다.<sup>10)</sup>

8)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103/nd2001030150.html](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103/nd2001030150.html).

9) <http://www.pss.go.kr/warp/kr/intro/history/>.

10) 같은 해 8월 15일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여사가 광복절기념식 도중 피한의 피격을 받아 서거한 사

- 1975년 3월 8일 경호실 제7과를 『101경비대』로 개칭  
 1975년 9월 30일 치안본부 경비과에 『경호계·방호계』가 신설되었다.  
 1976년 3월 29일 101경비대를 『청와대 101경비단(단장은 경무관급)<sup>11)</sup>』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9년 10월 26일 이른 바 10·26사태(대통령시해사건)를 경험하였다.  
 1979 11월 12일 4개 중대로 잠정 개편 (대통령 권한 대행 공관 경비)  
 1980 03월 10일 3개 중대로 개편 (공관 경비임무 종료)  
 1983년 의무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치안업무를 보조하게 하였다.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였고, 치안본부→경찰청 시대로 바뀌었다.  
 1999년 1월 1일 서울지방청 기동단 소속의 『120경비대』를  
     지방청次長 소속 직할대로 전환하면서, 명칭을 『202경비대』로 변경하였다.<sup>12)</sup>  
 2001년 12월 27일 『22특별경비대』명칭이 『22경찰경호대』로 변경되었다.  
 2004 10월 21일 4개 경비대로 개편하였다.  
 2006년 3월 전후하여, 101경비단 단장의 직책이 총경급으로 바뀌었다.

### 3) 각급 경찰경호조직 및 경찰력

경찰경호조직은 대체로 前·現職대통령 및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회의장 등 각급 요인의 신변(주로 수행경호), 공관 및 사저 경호경비조직으로 나뉜다.<sup>13)</sup> 경

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 경호직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경찰조직이 『치안국』→『치안본부』로 승격되는 등 일대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당시 22특별경호대는 서울시경찰국 소속 직할대였다.

11) 2006년 3월을 전후하여, 101경비단 단장은 경무관급에서 총경급(19, 20대 101경비단장)으로 낮추고, 대신에 경무관급 경찰관은 경찰관리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경찰관리관(경무관)은 101경비단과 22경찰경호대 등 경호실에 파견된 경찰부대를 총괄지휘하는 직책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2007년 3월 현재, 청와대 101경비단장은 총경급 경찰관이 맡고 있다. 서울시 지방경찰청 직제에는 여전히 101단경비단장이 경무관급 경찰관으로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정확한 직제와 계급이 확정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12) 경찰청, 『경찰백서 2000』(서울: 경찰청, 2000), 343면.

13) 이외에도 최근 서울대 황우석 교수를 요인으로 분류, 경찰이 경호를 맡은 바 있었다.

찰청 소속 경호직무 담당 부서는 경비국산하 「경호과」,<sup>14)</sup> 지방청단위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sup>15)</sup> 소속의 경비2과 「경호계」 등이 있다.<sup>16)</sup> 상시 경호경비 경찰력 동향은 다음과 같다.<sup>17)</sup>

(1) 現職 대통령경호 경찰력

現職 대통령 및 그 가족의 경호경비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와대에 파견된 「101경비단」 및 서울시경 직할대로 편성된 「22경찰경호대」, 외곽경비를 맡은 「202경비대」 등 총 1,200여명에 이른다.

(2) 前職 대통령경호 경찰력

前職대통령 및 그 가족 신변경호 및 사저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경호대 및 경비관련 경찰력 규모는 약 450여명에 이른다.

<표 1> 전직대통령 신변 및 사저경비 경찰력 동향

경호대상 및 경찰력동향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수행경호 경찰력	경정이하 00명	경정이하 00명	경정이하 00명	
부서명칭	12경호대	13경호대	?	경호실소관
사저경비경찰력 (기동중대)	1개 중대 000명		1개 중대 000명	1개 중대 000명
간접경비경찰	서대문경찰서 연희치안센터		노량진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마포경찰서 북부지구대
합 계	000명		000명	000명

14) 경찰청 경비국에는 경비1과, 경비2과 및 경호과가 설치되어 있다.  
 15) 기타 지방경찰청(부산, 경기, 제주제외)의 경우, 경비교통과에서 경호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16) 경호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 경호경비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 경호경비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경호경비 교양에 관한 사항  
 · 경호장비 지원 및 운용  
 · 외빈경호대 운용  
 · 전직 대통령 경호업무 등이다.  
 17)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외교사절 등에 대하여 수시로 경호경비 직무가 부여될 수 있다.

퇴임 후 7년 이내인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직무는 경호실 부책하에 실시하고 있는 바, 김영삼 前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5. 2.24 경호실의 경호임무가 해제되어 경찰에서 경호를 전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10월 22일 최규하 前대통령이 별세함에 따라 그동안 수행해 오던 경찰경호임무가 종료되었다.

### (3) 각급 요인경호 경찰력

경찰청 훈령인 「경호규칙」 제3조(경호의 대상)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요인(乙호)에 대하여 경호를 실시하고 있는 바,

- 국회의장 수행경호 및 숙소/의상공관경비 경찰력,
- 대법원장 수행경호 및 공관경비 경찰력,
- 헌법재판소장 수행경호 및 공관경비 경찰력,
- 국무총리 수행경호 및 공관경비 경찰력 등 총 000여명이다.

이상과 같이 상시 경호경비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력은 약 2,000여명에 이른다.<sup>18)</sup>

### (4) 문제점

퇴임 후 7년이 경과한 前職대통령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실로부터 경호업무를 이관 받을 시 필요한 조직, 인원, 예산(차량, 총기 및 각종 장비)등의 지원 없이 업무만 이관되어 서울지방경찰청 자체로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영삼 前대통령의 경우, 경호실에서 최근까지 맡아 오던 경호업무가 2005년 2월 25일경 경찰로 이관되었다. 이처럼 每 7년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업무가 동일한 방식으로 경찰로 이관될 것인 바, 신변(수행)경호 및 사저경비 경찰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1999년 11월 12일 당시 퇴임대통령 경호보완대책과 관련하여 경

18) 물론 간접적으로 경호경비직무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경호과 및 경호계 그리고 순찰지구대까지 포함하면 경찰력은 이 보다 훨씬 더 많다. 또한 대통령선거후보자 등에 대한 경호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더 많은 경찰력이 소요될 것이다.

호대 경찰관을 증원하고, 경호대장을 경감급→경정급으로 격상토록 하부기관에 지시한 바 있다.<sup>19)</sup> 전두환·노태우 前대통령들의 경우, 경호대장을 경정으로 補하고 있으나, 지방경찰청의 係단위 조직 및 경정급 직책이나 편제는 경찰청장의 승인사항으로서, 2004년 12월까지 승인되지 않았다고 한다.<sup>20)</sup>

뿐만 아니라 전직대통령 특별경호대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인 바, 소속 경찰관 숫자가 수 십 여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前職대통령 경호업무 이관시 필요한 조직, 경찰력 확보 및 이에 상응한 예산편성이 긴요시 되고 있다.

전직대통령 사저경비는 기동대 소속 경비중대 혹은 경찰서 소속 방법순찰대로서 책임은 관할 “동작, 마포 및 서대문경찰서”가 맡고 있다.

청와대 외곽경비를 맡고 있는 「202경비대」 및 「22경찰경호대」는 “서울지방경찰청 次長 소속 직할대”로 편성되어 있고, 전직대통령 수행 및 신변경호를 맡고 있는 「특별경호대」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 2과”에 소속되어 있는 등 조직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경비2과에는 작전계, 경호계, 항공대 및 3-4개의 「특별경호대」가 소속되어 있는 등 인원이 비대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렵고, 경비2과장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한편, 경호 목적상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원화 되어 있다. 현직 대통령경호경비와 관련하여 경호실에 파견된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동법 제2조 ..경호실에 파견된 者는 소속공무원.....)은 대통령경호실법 제9조상의(무기 휴대 및 사용)규정을 적용받는다.<sup>21)</sup> 그렇지만,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직무를 수행하는 일반경찰관들의 경우

19) 경찰청 경호과 내부 공문서 참조.

20) 일선에서는 경정급 경호대장 T/O 확보가 어려우면, 경감급으로 격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청 係단위 조직 승인이 어려우면 관할경찰서로 조직이관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1) **第9條(武器의 携帶 및 使用)** 室長은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公務員에게 武器를 携帶시킬 수 있다. <개정 '00. 1. 1> 第1項에 依하여 武器를 携帶하는 者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경우 그 事態에 應하여 不得已하다고 判斷되는 限度내에서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刑法에 規定한 正當防衛와 緊急避難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危害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00. 1. 1> 1. 第3條의 職務遂行中 認知하는 所管에 속하는 犯罪에 관하여 死刑, 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또는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者가 所屬公務員의 職務執行에 대하여 抗拒하거나 逃避하려고 할 때 또는 第3者가 그를 逃避시키려고 所屬公務員에게 抗拒할 때에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使用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 인정되는 相當한 理由가 있을 때 <개정 '00. 1. 1> 2. 夜間이나 또는 集團을 이루거나 凶器 기타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警護業務를 방해하기 위하

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 4)상의 총기사용규정의 적용을 받는 바, 적어도 경찰관이 경호목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경호실법상의 총기사용 요건의 적용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4) 경호직무경찰관 선발, 교육 및 인사관리 실태

- 청와대 101경비단 근무경찰관(순경급)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별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며, 신규임용 24주 교육기간 중 경호직무와 관련하여 101경비단 소속 지도교관에 의한 자체 경호교육을 5주간 실시한다.
- 근접경호경찰인 22경찰경호대 요원은 일반경찰(순경급)중에서 개인희망에 따라 1개월간의 교육 후<sup>22)</sup> 소정의 점수를 취득한者を 선발하여 충원하고 있다. 대략 6년간 경호업무(국빈에 대한 근접경호 기회를 가짐)를 수행하며, 경사까지 승진한 후 일선 경찰에 복귀한다.
- 외빈(外賓)경호대는<sup>23)</sup> 일반경찰 중에서 개인희망을 토대로 서류심사와 서울지방경찰청 경호계의 면접을 통해 선발, 신규 편성된 직원에 대해 1주간의 실무위주 교육.
- 전직대통령경호대는 개인희망을 토대로 경호대장과 전직대통령 비서관의 면접을 통하여 선발한다.
- 국무총리경호대는<sup>24)</sup> 總理비서실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의 추천을 받아 비서실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경찰교육기관에서의 경호직무관련 정규교육 프로그램은 없으며,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수준이다.

여 所屬公務員에 抗拒할 때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개정 '00. 1. 1>

22) 22경찰경호대는 선발과정에서 4주간교육을 실시하는 바, 경호관련법규, 경호실무, 우발상황조치, 수행경호, 행사장경호 등이다.

23) 한국경찰의 외빈경호대는 미국무부 산하 경호보안국(Bureau of Diplomatic Security)의 경호팀을 모델로하여 최근 창설되었으며, 해외관련기관에서의 연수 등을 통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4) 국무총리공관파견대는 정부중앙청사경비대에 소속된 경찰관들이 파견된다.

이와 같이 선발·신규 편성된 경찰관은 경호전문경과제가 시행되지 않는 관계로, 경호 임무를 종료하고 일선경찰관서에 복귀하면, 별도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有경험자로서 차후에 경호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우대를 받을 뿐이다.<sup>25)</sup>

## 2. 대통령 경호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

### 1) 제1, 2공화국 시절<sup>26)</sup>

#### (1) 제1공화국 시절

1956. 8.15 제3대 이승만 대통령 취임

1960. 3.15 正(정)·副(부)통령 부정선거 → 4.19 혁명발발로 제1공화국이 붕괴되었다. 당시 副(부)통령 경호는 서울시경에서 담당했다.

1960. 4.26 이승만 대통령 下野

1960. 6.15 제3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전환되었다.

1960. 6.29 “청와대 경찰관과견대”(서울시경 소속경찰관)가 설치되었다.

#### (2) 제2공화국 시절

1960. 8.13 제4대 윤보선 대통령 취임

1960.12.30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칭

1961. 5.16(군사혁명)발발~1963.12.16일까지 지속(군정기)

박정희(朴正熙) 소장이 주도한 군사혁명은 경찰 경호를 마감시켰다.<sup>27)</sup> 전권을 장악한 박소장이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어 의장에 취임하자, 박종규 소령을 중심으로 한 “軍경

25) 변관수, “韓國警察의 要人近接警護 發展方案에 관한 研究“,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1면.

26) [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

27) 예외적인 몇몇 국가들(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진 각국(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는 경찰에서 대통령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호대”가 창설돼 박소장을 경호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경호대”는 경호를 담당하였으며, 당시 청와대의 경비담당은 서울시경 소속 “청와대 경찰관파견대”가 맡았다.

1961년 6월1일 창설된 중앙정보부는 【경호대설치령】을 제정하여, 1961.11.18 “중앙정보부 경호대”가 발족되었다. 이를 통해 “軍경호대”를 흡수했다. 즉 행정과·사전기획과·경호과·정보과·기동경호과 등 5개 과, 37명으로 편제된 경호대가 출범하였다.<sup>28)</sup>

1962. 3.22 윤보선 대통령 사임하였으며,

1962. 3.24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1962. 9.29 경호대를 “경호실”로 개칭하였다. 이로써 특별전문 경호기관이 정착되었다.<sup>29)</sup>

## 2) 제3공화국에서 2007년까지 대통령경호실

독립된 대통령 경호실은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탄생했다. 그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박의장이 5대 대통령에 취임하기 사흘 전인, 1963년 12월 14일 【대통령경호실법(법률 제1507호)】이 제정되어,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전문기구로서 경호실이 설치되었다.<sup>30)</sup> 이틀 후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이 공포되고 다음날(12월17일) 박정희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경호실이 발족했다.<sup>31)</sup> 당시 미국의 재무부 산하 경호실(Secret

28) 당시 경호대의 임무는 국가원수, 최고회의의장, 부의장, 내각수반, 국민의 신변보호, 경호대장이 지명하는 인물의 신변확보 등이었다.

29) 대통령경호실과 국가정보원은 5.16군사혁명을 계기로 탄생한 조직으로서, 특별한 시대적 상황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호실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학문상 분류되기도 한다.

30) 그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박의장이 5대 대통령에 취임하기 사흘 전인 1963년 12월14일 “대통령 경호실법”이 공포되었다. 이틀 후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이 공포되고 다음날(12월17일) 박정희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경호실이 발족했다.

31) 대통령경호실의 창설배경을 소개한 자료에 의하면, 정치적 측면과 경호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적 목적 가운데 하나는 5.16군사혁명과 함께 창설된 경호실은 군사적 정변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혁명지도자에 대한 완벽한 신변보호는 물론 반혁명세력의 견제와 군대의 안정 그리고 대통령 취임이후 대통령의 지도력의 확립 등의 원초적인 정치적 목적과 배경을 갖고 창설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그 이후에도 정치적 목적을 수반하여 지속 발전되었다. 두 번째 정치적 이유로는 4.19혁명 이전 자유당정권의 대통령경호제도와 軍통수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Service·약칭 SS)이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당시 한국의 대통령 경호실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PSF(Presidential Secret Force)로 정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PSS(Presidential Secret Service)로 정했다.

대통령경호실에는 경호실장을 두고 그 직속으로 行政次長 및 計劃次長을 두도록 하였다.<sup>32)</sup> 대통령경호실법은 수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1963년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제정 1963.12.16 각령)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실 소속 직원들은 경호관 혹은 경호사(통상 경호원으로 호칭)로서, 별정직 공무원신분이었다.

대통령 경호실의 창설된 후, 대통령이나 VIP의 경호에 있어서 측근경호는 경호실이 전담하게 되었고 경찰은 외곽(제2선 및 제 3선)경호를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이뤄졌다. 1968년 6월 당시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정원은 별정직경호원 112명, 경찰직공무원 38명 등 총 262명 정도였다.<sup>33)</sup>

이후 경호실은 네 차례 엄청난 사건을 겪는데, 1968년의 1·21사태와 74년의 문세광 사건, 79년의 10·26사태, 83년의 아웅산 사건이 그것이다.

당시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경찰이 경무대 경찰서를 설치하고 경호를 전담하면서, 국가원수 경호에 필수적인 군사적 지원요소를 특별한 관계법령이나 규정없이 경찰이 군을 일방 지휘하는 체계를 갖추었고, 특히 4.19 혁명당시 경호책임자였던 경무대경찰서장 박영주는 그 직책을 이용하여 高齡의 이승만대통령으로부터 개인적 신뢰를 독차지하고,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의 그늘 아래서 대통령을 호위호가하면서 軍인사 등에 개입함을 물론 대통령→국방장관→각 군총장의 정상적인 軍權의 指揮(지휘)계통을 무력화하는 전횡을 일삼기도 하였다. 또한 1956년 5월 15일 정부통령의 부정선거 이후 정부 및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의 올바른 실상파악과 박영주의 지나친 軍인사 등의 군권개입은 물론 군 고위장성의 경무대 방문시 경호를 빙자한 일정의 제한 및 대통령 보고내용의 사전청취 등의 월권행위와 지나친 검색행위 등 박영주 개인과 경찰에 대한 매우 좋지 않은 군심이 태동되었으며, 이것이 軍으로 하여금 이승만정권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몇몇 관점에서 5.16군사쿠데타 세력은 정권의 위기시 정권유지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정권의 몰락을 촉진시켰던 경찰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전담의 경호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경호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문경호기관으로 탈바꿈했던 대통령경호실에서 제3대 경호실장으로 재직했던 차지철이 경호실장이라는 직책과 대통령의 측근임을 이용한 초법적이며 월권적인 행위로 인하여, 급기야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대통령을 직접 시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몇몇 경호실장의 전횡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명운이 좌우되기도 하였음을 역사를 통해 경험한 바 있다. 同旨 장기봉, “21세기 國家 警護機關 MODEL에 관한 研究”,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2면 이하.

32) 행정차장은 室의 人事管理·教育訓練·豫算의 審査分析 및 管理에 관한 業務를 계획차장은 警護·警備·搜查 및 情報에 관한 業務와, 行事計劃에 관한 業務를 각각 처리한다.

33) 대통령경호실공무원정원표(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일부개정 1968.6.4 대통령령 제3479호)를 기준.

&lt;표 2&gt; 1964년 전후 대통령경호실공무원정원 현황

	별정직	일반직 2급내지 4급	경찰직	기능직
공무원 현황	경호실장 1	행정이사관 2	경 무 관 1	2등급 통신원 4
	경호관(1급상당) 2	행정부이사관 4	총 경 2	2등급 난방원 1
	경호관(2급갑류상당) 5	행정서기관 6	경 감 5	3등급 조무원 31
	경호관(2급을류상당) 13	재경서기관 1	경 위 10	3등급 정비원 4
	경호관(3급갑류상당) 23	행정사무관 10	경 사 10	3등급 정리원 4
	경호관(3급을류상당) 37	재경사무관 1	순 경 10	3등급 건축원 3
	경호사(4급갑류상당) 15	행정주사 9		
	경호사(4급을류상당) 16	재경주사 1		
소 계	112명	34명	38명	75명
총 계	262명			

대통령경호실법상 경호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으로 당선된 者와 그 가족의 호위,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7년 이내의 前職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sup>34)</sup> 경호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한 호위를 담당하는 것이다.<sup>35)</sup>

이하 내용은 경호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중요 사항을 시대

34) '前職 대통령 출가한 딸도 경호' 법 개정안...노 대통령 '그럴 필요 있나' 제동 [중앙일보] 국무회의서 의결 보류- 2006년 10월 31일 오전 9시30분, 노무현 대통령 주제로 48차 국무회의가 청와대 세종홀에서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15건의 법률안과 6건의 대통령령, 일반안건 4개가 상정됐다....물 흐르듯 진행되던 회의가 중반 무렵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대통령 경호실 안에 경호안전교육원을 두는 것과 전직 대통령의 출가한 딸을 경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現 시행령은 전직 대통령 가족이 대통령과 한 집에 살고 있으면 경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조항을 뒤 출가한 딸은 결혼 뒤에 대통령과 함께 살더라도 경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여성가족부가 출가 여성을 경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여성 차별적 조항'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대통령 경호실은 여성가족부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법률 제안권이 있는 행정자치부**를 통해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용섭 행정부 장관이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설명을 마치자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너무 당연한 데다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 노 대통령이 나섰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전직 대통령 자녀까지 굳이 경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개정안 의결은 보류됐고 회의는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다. <http://www.joins.com/article/2493599.html?ctg=1003>(2006년 11월 1일 검색)

35) 대통령경호실법 제 4조, 동법시행령 제 12조

순으로 정리하였다.<sup>36)</sup>

- 1963.12.17 대통령경호실 독립조직으로 정식 창설<sup>37)</sup>
- 1967. 7. 1 제6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
- 1968. 1.21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 (1.21사태)
- 1968. 3.30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개정, 청와대 방어계획 및 보안활동 강화편성 :  
실장, 차장, 행정처, 보안처, 기획처, 경호처, 통신처
- 1971. 7. 3 제7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
- 1971. 7.31 청와대 폭파기도 미수사건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검거)
- 1972.12.27 제8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 유신헌법 공포
- 1974. 8.15 박정희 대통령 시해미수사건 (육영수여사 저격사건)
- 1974. 9.11 대통령경호·경비안전대책위원회 설치 관계부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서간 협조를 명확히 함
- 1975. 8. 2 대통령경호·경비안전대책통제단 설치
- 1978.12.27 제9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 1979.10.26 박정희 대통령 서거 (10.26사건)
- 1979.12.21 제10대 최규하 대통령 취임식
- 1980. 8.16 최규하 대통령 하야
- 1980. 9. 1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sup>38)</sup>
- 1980. 8.26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개정: 前職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護衛 제도화
- 1981. 3. 3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
- 1983.10. 9 동남아 순방시 危害 기도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 1987. 12. 대통령 당선확정자 전담경호대 편성 및 운영
- 1988. 2.25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

36) [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old3.html](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old3.html)

37) 선진각국의 사례와는 달리 미국의 경호실(SS)은 일반경찰 소속이 아니었으며, 창설당시 재무부소속이었다. 또한 최근에는 9.11테러사건 이후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경호실(Secret Service)은 한국 경호실이 추구하는 목표점이자, 한국 경호실의 모델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경호실이 영문 이름을 PSS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할 것이다.

38) [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old5.html](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old5.html).

1988. 8.22 제1차 대통령경호실 경호요원 공개채용 실시
1993. 2.25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sup>39)</sup>
1993. 2.26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으로 전문경호관 출신의 박상범 취임<sup>40)</sup>
1998. 2.25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sup>41)</sup>
2000. 1. 1 대통령경호실법을 개정하여, 별정직신분→특정직으로 전환.<sup>42)</sup>
- 2000.10.19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개최 (경호안전통제단 운용)<sup>43)</sup>
2003. 2.25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국회의사당)<sup>44)</sup>
2003. 3. 3 제12대 대통령경호실장 김세옥 취임<sup>45)</sup>

39) [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old7.html](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old7.html).

40)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103/nd2001030150.html](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103/nd2001030150.html) 문민정부의 초대 경호실장은 경호실에서 잔뼈가 굵은 박상범씨가 임명되었다. 박상범씨의 별명은 “불사신”이다. 그는 문세광 사건 때 총을 들고 연설대 뒤에 숨은 박대통령을 지켰다. 10·26사건 때는 궁정동 안가에서 총을 맞았으나, 확인사살을 당하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 아웅산사건 때도 폭발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

41) [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old8.html](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old8.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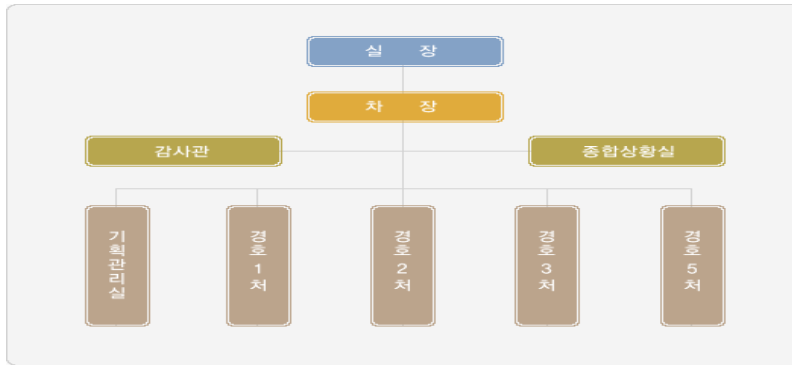
42)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103/nd2001030150.html](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103/nd2001030150.html) 대통령 경호실법개정안은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이뤄진 다음인 1999년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경호 공무원은 특정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신규직원은 전부 7급으로 공채하게 되었다. 이 법은 또 경호 사무관제를 채택함으로써 행정고시에 합격한 엘리트들이 경호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도 터주게 되었다.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처럼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고 신분도 보장받게 되지만, 별정직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방식이다. 대통령경호실 직원은 창설 이래 1999년 12월31일 대통령경호실법의 제2차 개정까지 직원의 신분을 규정하는 동법 제5조에 따라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질 수 밖에 없었으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담보로 하여 국가원수의 경호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신분보장이 전혀 되지 않았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임명된 경호실장은 절대적인 인사권자로서 소위 당근과 채찍을 들고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하기 위하여 경호원의 신분을 담보하였던 것이다. 同旨 장기봉, “21세기 국가경호기관 MODEL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21면 이하.

43)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103/nd2001030150.html](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103/nd2001030150.html): ASEM (아시아-유럽회의)은 26명의 국가원수가 한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유례가 없는 행사였다. 경호실 인력으로는 이렇게 많은 정상을 경호할 수가 없었다. 이를 통하여 경호실·국정원·경찰청·합참·육본·기무사·수방사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 “경호안전대책위원회”가 열려, 경찰청특공대(868부대), 수방사 헌병대와 특수임무대, 특전사 특수임무대 등 대(對)테러 훈련을 받은 모든 부대가 출동했다. 이렇게 많은 기관이 출동했는데도 경호실은 ASEM 경호를 매끄럽게 마무리 지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ASEM 경호에 성공하자 경호실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SS는 우리 경호실을 “꽤 경호를 잘하는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44) [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old9.html](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old9.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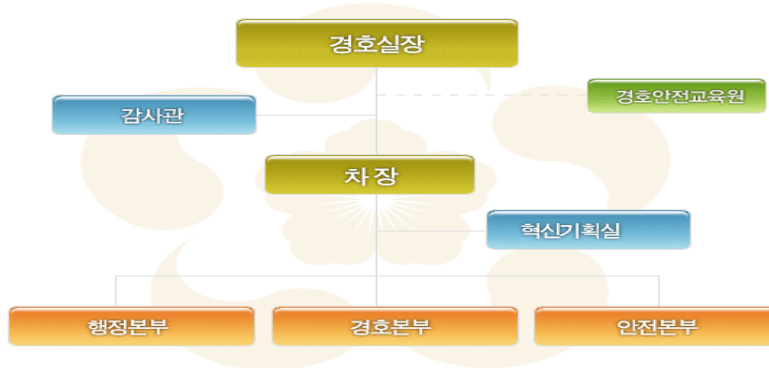
45) 경무대경찰서가 폐지되고 경호실이 설치된 후, 경호공무원 혹은 軍장성 출신이 아닌 경찰청장출신

2004. 3.12 ~ 5.14 최초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 경호업무 수행- 대통령권한대행(고건 국무총리)과 그 배우자



<그림 1> 2004년 대통령경호실 직제표

2006. 1. 2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19260호 개정을 통하여, 본부-팀제 도입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sup>46)</sup>



<그림 2> 2007년 3월 현재, 대통령경호실 조직도

인사가 처음으로 경호실장에 임명된 사례이다. 향후 경호실과 경찰과의 협력 및 인사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46) <http://www.pss.go.kr/warp/kr/intro/constitution/>(2007년 3월 31일 검색)대통령경호실은 혁신기획실, 행정본부, 경호본부, 안전본부 및 감사관으로 편성되며, 경호전문교육기관을 위한 소속기관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두게 되었다.

2007. 3. 12.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 취임

2007년 3월 현재,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은 경호실장<sup>47)</sup> 및 차장은 정무직(2명), 특정직 366명(전문경호공무원) 등 525명에 이르고 있다. 특이한 것은 경호실 소속 공무원들 가운데, 사무관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의 비율이 무려 65.2%나 되고 있어 (240/368),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형평성을 잃고 있다.<sup>48)</sup> 또한 선진 각국의 일반직 인 관행과도 배치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신규채용 경호공무원들은 약 19주간에 걸쳐 교육훈련을 이수하면서 전문경호공무원으로 임용된다.<sup>49)</sup>

한편, 시급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로서 대통령경호실의 편제와 관련, 경호직무가 아무리 중차대한 국가임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경호임무만을 위하여 장·차관급을 수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속의 국가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선진외국에 그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다. 경호업무가 국민의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법공안행정의 범집행 업무라는 본질과 국가기관으로서 존립을 위한 합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국가의 민주화로 인하여 대통령경호실 창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었던 대통령 1인 권력체계의 구축 필요성과 군사적 불안정성의 타개 등의 정치적 목적이 소멸됨에 따라서 대통령경호실 편제는 조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할 것이다.<sup>50)</sup>

47) 최근 들어 경호실장 및 경호실차장에 임명될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 가운데, 장관급장성 및 장관급장교가 제외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48) 1999년 3월 31일 현재, 행정부소속 국가공무원 일반직 1급→9급까지 91,807명 중 5급이상 공무원은 15.5%인 14,191명이었다. 同旨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1999』(서울: 행정자치부, 1999), 68면; 한편 2003년 현재 경찰공무원 92,165명 중, 경정급 이상 경찰관의 비율은 겨우 1.8% 정도였다. 同旨 경찰청, 『경찰통계연보』(서울: 경찰청, 2004), 19면.

49) <http://www.pss.go.kr/warp/en/info/education/>.

50) 同旨 장기봉, 전제논문, 10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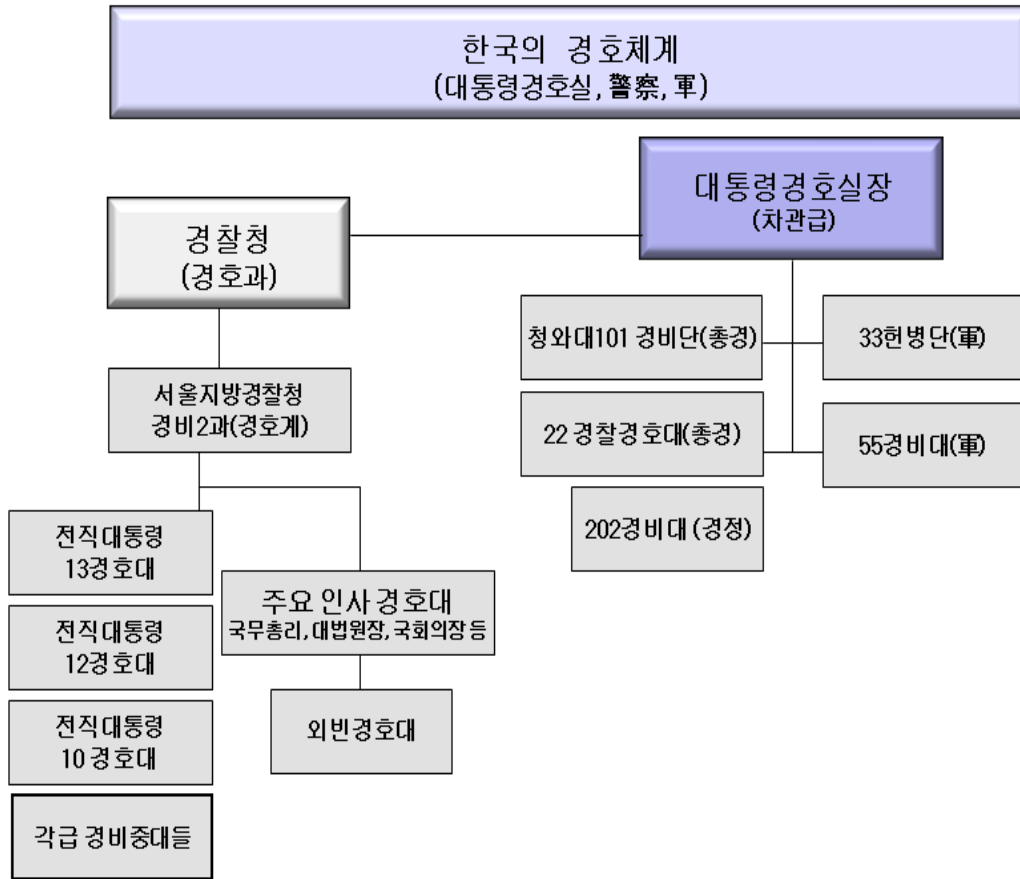
〈표 3〉 2007년 3월 현재 대통령경호실공무원정원 현황

구분	정 무 직	특 정 직	기능직
경호 공무원 현황	경호실장 (장관급 또는 차관급) 1명	관리관 또는 경호이사관	3
		관리관·경호이사관·별정직 1급상당 또는 별정직 2급상당	2
		경호이사관 또는 경호부이사관	1
		경호부이사관	18
		경호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3급상당	3
		경호부이사관 또는 경호서기관	8
		경호서기관	48
		경호서기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경호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4
		경호서기관 또는 경호사무관	14
		경호사무관	122
		경호사무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	5
		경호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8
		경호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등	99
경호주사보·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등	29		
합계	2명	366명	157명

### 3. 한국의 경호체계

한국에서는 대통령경호실을 정점으로 각급 기관에서 경호경비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警察에서는 101경비단, 202경찰경호대, 軍에서는 33헌병단, 55경비대 조직을 통하여 경호실 직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경찰에서는 경찰청 경호과를 정점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직대통령 경호대, 202경비대, 국무총리/국회의장 등 주요인사 경호대, 외빈경호대 조직 등을 통하여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3> 한국의 경호조직체계

## 제3장 경찰주도형 경호체제 국가의 현황

### 1. 영국의 경찰경호체제와 현황

#### 1) 런던수도경찰청 조직

수도경찰청(MPS)은<sup>51)</sup> 런던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에 대한 치안수요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적 치안사무를 담당하기도 한다.<sup>52)</sup> 경찰청장(Commissioner), 부청장(Deputy Commissioner)<sup>53)</sup> 그리고 업무분야별로 인사국(Human Resources), 지역경찰담당국(Territorial Policing, 치안감), 특별범죄수사국(Specialist Crime: AC, 치안감급),<sup>54)</sup> 재정국(Resources Director), 특별작전국(Specialist Operations: AC 치안감급) 등이 있다.

수도경찰청은 수도 런던과 영국 전역에 걸쳐 다양한 특수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몇몇 조직들의 하나는 다름 아닌 특별작전국(혹은 경호경비국, Special Operations)로 불리는 부서이다. 특별작전국(Specialist Operations)<sup>55)</sup>에서 경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同부서에는 對테러단 및 테러범죄수사조정부(Counter Terrorism Command and National Co-ordinator of Terrorist Investi- gation,

51) Metropolitan Police Service의 줄임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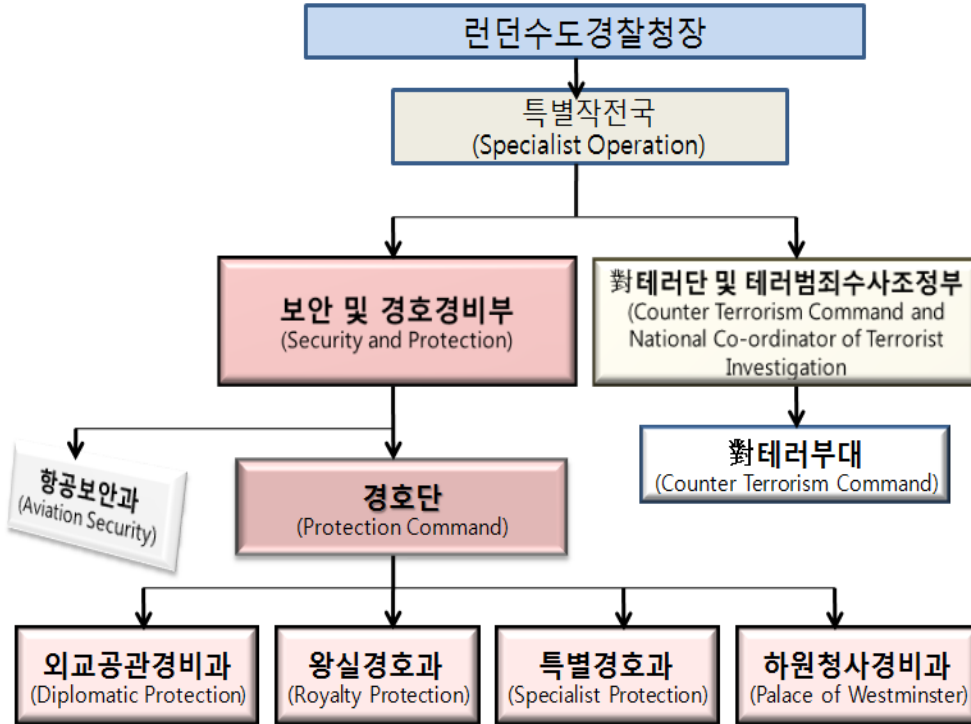
52) <http://www.met.police.uk/so/index.htm>: 이러한 임무 중의 하나가 바로, 특별작전국에서 취급하는 직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보, 경비(Security),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 대사관, 왕실에 대한 경호(protection of politicians), 그리고 인종차별적·폭력범죄 그리고 테러와 같은 범죄유형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53) 직속기관에는 Directorate of Strategic Development(차장보), Directorate of Professional Standards(차장보), Directorate of Information Director(정보화담당국장), Diversity(경무관급), Legal Services Director(법률지원국), Organisational Learning부서가 소속되어 있다.

54) AC: Assistant Commissioner의 줄임말이다. 次長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과 비교해 보면, 치안감급에 해당한다. 한편 DAC는 Deputy Assistant Commissioner의 줄임말이다. 통상 차장보라고 번역하기도 하며, 치안감 및 경무관 중간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Cmdr는 Commander의 약자이다. 총경 및 경무관 중간정도의 계급으로 이해할 수 있다.

55) 한국의 일부 관계기관 자료에서는 “특수작전처”라고 번역·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SO 13, DAC)와 보안및경호경비부(Security & Protection)가 설치되어 있다.<sup>56)</sup> 런던수도경찰청 산하 경호경비부서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sup>57)</sup>



<그림 4> 런던수도경찰청 산하 경호경비부서 조직도

## 2) 경호조직과 직무범위

### (1) 런던수도경찰청 산하 요인경호부서(PC) 조직

특별작전국은 런던수도경찰청의 한 부서로서, 대체로 3가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즉, 런던을 방문하거나 런던에 거주 혹은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

56) <http://www.met.police.uk/so/index.htm>

57) <http://www.met.police.uk/so/structure.htm>(2007년 3월 27일 검색)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직도를 필자가 재구성한 것임.

무이다. 對테러업무, 보안 및 안전업무 그리고 왕실가족과 외교관 등 요인에 대한 경호 및 청사경비(정부관공서 및 의회청사)를 맡고 있다.<sup>58)</sup>

따라서 영국에서 경호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수도경찰청 특별작전국 산하 보안 및 경호경비부(Security & Protection Commands)라고 할 수 있다.<sup>59)</sup> 同경호경비부 산하에는,<sup>60)</sup> Protection Commands(경호실 혹은 경호단으로 번역) 그리고 Security Commands(보안실, 무기 및 항공보안담당-Firearms/ Aviation Security)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특별작전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찰청 경비국장급(치안급)에 해당한다. 【보안 및 경호경비부장】은 局長補급이며 우리나라의 경무관급에 해당하는 고위경찰관이라고 할 수 있다.<sup>61)</sup>

同경호단 산하에는 외교공관경비과(Diplomatic Protection), 왕실경호과(Royalty Protection), 특별경호과(Specialist Protection) 및 하원청사경비과(Palace of Westminster)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특별작전국(SP)에 소속된 경찰관들은 정보, 보안업무, 경호/경비업무, 對테러 업무 및 수도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하고 특별한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다.<sup>62)</sup> 이들 심각한 범죄유형에는 인종차별, 폭력범죄 그리고 테러행위들이 포함된다.

## (2) 요인경호부서(Protection Commands)의 경호대상

영국경찰의 요인경호경비 부서인 【경호단 혹은 경호실】에서는 대체로 국왕 및 4촌

58) <http://www.met.police.uk/about/organisation.htm#metorg>(2007년 3월 27일 검색)

59) 同부서의 책임자는 Deputy Assistant Commissioner이다. 우리나라의 경무관에서 치안감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비교될 수 있다.

60) 런던수도경찰청 전체 조직도에는 특별정보실(Special Branch, SO 12) 조직이 제시되어 있으나 공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특별작전국(Special Operations) 홈페이지상의 조직도에는 특별정보실 조직이 없으며, 보안 및 경호경비부와 대테러부 조직만이 소개되어 있다.

61) <http://www.met.police.uk/about/organisation.htm#rank>(2007년 3월 28일 검색) 런던수도경찰청의 경찰계급구조를 다음과 소개한다: The rank structure of Metropolitan Police officers is as follows: Commissioner(경찰청장), Deputy Commissioner(수도경찰청 副청장), Assistant Commissioner(경찰청 국장급, 치안감), Deputy Assistant Commissioner(경찰청 국장보, 치안감-경무관급), Commander(경무관-총경급), Chief Superintendent(총경급), Superintendent(경정급), Chief Inspector(경감급), Inspector(경위급), Sergeant(경사급), Constable(순경-경장급) 등이다.

62) <http://www.met.police.uk/about/organisation.htm#metorg>(2007년 3월 27일 검색)

이내의 왕실 직계가족 경호와 왕궁의 경비를 맡으며, 수상 및 각료, 중요 정치인의 신변 보호, 각급대사관(관저 포함) 및 국빈에 대한 경호경비 업무를 수행한다.<sup>63)</sup> 각 부서별로 경호대상자들이 구분되어 있다.<sup>64)</sup>

#### ① 특별경호과(Specialist Protection)

- ▷ 특별경호과의 경호대상자들은 現職수상, 前職수상들, 행정각부의 장관들, 일부 대사들, 영국 내 그리고 해외에서 테러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요한 인사들이다.<sup>65)</sup>
- ▷ 비엔나협약(under the Vienna Convention)에 의거, 영국을 방문하는 외교사절에 대한 경호도 포함된다.
- ▷ 또한 정보나 첩보에 의거,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혹은 국가적 이익이 있는 장소에 있는 중요한 인사에 대한 경호를 포함한다.
- ▷ 중요한 공적인 인물에 대하여 신변경호 조언을 제공한다.
- ▷ 높은 위험성이 존재하는 해외지역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런던수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신변안전에 대한 확인,
- ▷ 영국이나 해외에 파견된 공식인사들과 외교관들의 안전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 ▷ 영국이나 해외에서 전개되는 경호작전과 중요행사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업무,
- ▷ 영국에서 신변경호를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공적으로 자격인증을 제공해주는 것 등이 同부서의 임무영역이다.<sup>66)</sup>

▶ 同부서의 常時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Prime Minister(VIP), 4명의 자녀들과 영부인에 대한 非노출경호,  
前職 수상(ex-Prime Minister, 예를 들면, 마가렛 대처 前수상),  
副수상(Deputy Prime Minister)

63) <http://www.met.police.uk/about/organisation.htm#metorg>(2007년 3월 27일 검색)

64) <http://www.met.police.uk/so/protection.htm>(2006년 10월 6일 검색)

65) <http://www.met.police.uk/so/protection.htm>(2007년 3월 29일 검색)

66) <http://www.met.police.uk/so/protection.htm>(2007년 3월 29일 검색)

외무부장관(Foreign Secretary)

내무부장관(Home Office Secretary)

▶ 必要時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장관(Defence Secretary)

北아일랜드담당 장관(Northern Ireland Secretary)

前職 北아일랜드담당 장관(ex-NI Secretary)

미국 대사(US Ambassador)

이스라엘 대사(Israel Ambassador) 등이다.<sup>67)</sup>

## ② 왕실경호과(Royalty Protection: SO 14)

▷ 왕실경호팀은 국내외에서 여왕 및 왕실가족들의 신변경호를 담당하며,

▷ 런던, 윈저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소재한 궁전들을 경비한다.

▷ 궁전을 방문하는 공식인사들을 경호한다.

▷ 몇몇 궁전의 경우, 제복을 착용한 요원들이 24시간 동안 안전 및 경호직무를 수행한다.

▷ 영국을 방문하는 유럽의 다른 나라 왕실가족에 대한 신변경호업무도 수행한다.

▷ 경호대상자들 및 관련된 재산, 위험한 죄수, 그리고 취약한 재산에 대해서 런던 시내 및 국경을 넘는 범위의 작전을 위하여 이동경호를 실시하며,

▷ 합동 경호작전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sup>68)</sup>

▶ 왕실경호과의 경호대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엘리자베스여왕 부부(Queen Elizabeth II and Duke, Husband)

2. 찰스왕세자 부부(Prince Charles, His Wife)

3. 찰스왕세자의 아들(두명의 왕자들: Two sons)

67) 관련내용은 필자가 2006년 동연구를 위하여 런던수도경찰청 경호관계자를 면담하여 입수한 자료의 일부이다.

68) <http://www.met.police.uk/so/protection.htm>(2007년 3월 29일 검색)

4. 엘리자베스여왕의 왕자(Andrew: Son of Queen)
5. 엘리자베스여왕의 왕자(Edward and his wife)
6. 엘리자베스여왕의 공주(Princess Ann)
7. 엘리자베스여왕의 손녀들(Andrew's two daughters).....

### ③ 외교사절 경호 및 외국공관경비과(Diplomatic Protection: SO 16)

- ▷ 영국을 방문하는 외국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그리고 외무장관들의 숙소경비를 담당한다.
- ▷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행사들, 외교적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혹은 중요한 장소에 대한 감시와 수색/정찰을 실시한다.
- ▷ 민감한 장소들, 중요한 행사지역 그리고 범죄현장 등에서 테러대응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수색요원들을 파견한다.
- ▷ 런던수도경찰청 청사 및 다우닝街(수상관저)에 접근하는 방문객들과 차량에 대해서 접근통제활동과 수색활동을 전개한다.
- ▷ 외교관련 및 정부의 공식행사에 있어서 전문화된 안전지침을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同부서 소속 요원들은 총기를 휴대한다. 이 부서에 근무하는 者들에게는 수도경찰청이 무기를 제공한다. 관할구역내의 비상사태를 담당하며, Downing街 10번지에 소재한 수상 官邸 및 私邸에 대한 경비를 맡고 있다. 비엔나협약(1961년)에 의거, 외교관계부서의 구성원들, 영국정부 각부처의 구성원들(수상 및 장관들)에 대한 경호와 이를 지원하는 부서이다. 영국정부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장관들 및 외국의 요인에 대한 경호를 지원한다. 주로 외교적 사무와 관련하여, 비엔나협약 22조에 따라서 고정된 장소의 대사관, 영사관, 각급 국제기구에 대한 경비를 실시한다. 웨스트민스터宮을 경비하고 있는 非무장 경찰관들을 지원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 ④ 下院청사경비과(Palace of Westminster: SO 17)

- ▷ 同부서 소속 경찰관들은 하원의원들, 그 직원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안전하고 보안이 잘 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원청사내 보안요원들과 함께 근무한다.
- ▷ 하원청사인 웨스트 민스터 궁전을 순찰하며,
- ▷ 그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모니터링하고 신원을 체크하기도 한다.
- ▷ 하원청사에 출입하는 방문객, 직원들의 개인소지품과 차량을 수색하기도 한다.
- ▷ 질서를 잘 유지하여 하원의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 범죄발생 기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조치들을 강구한다.
- ▷ 하원의원들과 소속 직원들에게 범죄예방, 보안 및 신변안전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 ▷ 폐쇄회로 및 경보장치 그리고 경찰무전기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사건사고에 대응한다.<sup>69)</sup> 우리나라의 국회경비대와 비교할만한 부서이다.

同부서에는 경찰, 소방 및 경비원이 포함되어 있다. 웨스터민스터궁에 소재한 영국하원이 제정한 정책과 규정을 집행한다. 下院의원들과 그 보좌진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다양한 건물들에 대한 경비를 맡고 있다. 하원청사에는 하원의원과 직원 등 4,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시설이다. 범죄의 위협을 막아내고, 청사내의 안전유지, 절도방지, 非인가된 출입의 금지, 會期中의 무질서 내지 장애를 제거하는 임무를 각각 맡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私服을 착용하기도 한다. 동부서 직원들은 요인들의 하원청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수행경호를 실시하기도 한다.

### (3) 각급 경호부서의 근무형태 및 경찰력 배치사례

특별경호과 및 왕실경호과는 주로 근접 신변경호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사복을 착용한 채 비노출로 근무하는 경호요원들은 대체로 신변경호에 집중하고 있다. 사저, 관저, 궁전 등은 정복경찰관이 상시 (입초)경비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교사절경호부서는 무장한 채 근무하는 것이 특이하다. 가장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는 동향이다. 하원청사 경비과는 우리나라의 국회경비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청사외곽경비 및

69) <http://www.met.police.uk/so/protection.htm>(2007년 3월 29일 검색)

출입자통제(검문검색등)에 비중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경찰력 규모 및 근무형태는 다음 표와 같다.<sup>70)</sup>

<표 4> 영국 수도경찰청 각급경호부서의 근무체제와 경찰력 배치동향

부서	SO 1 특별경호과 (Specialist Protection)	SO 14 왕실경호과 (Royalty Protection)	SO 16 외교사절 경호및 외교기관경비과 (Diplomatic Protection)	SO 17 하원청사경비과 (Palace of Westminster)
근무인원	190 명	70 명	850명	120-130명
경호근무 방식	근접경호 close protection	근접경호 close protection	입초근무 및 근접경호 (Uniform)	입초근무 및 일부 수행경호 (Uniform)
경호대상	Prime Minister ex-Prime minister	Royale	Diplomatic	House of Parliament
무장여부	Intelligence Unit: meeting harmony		armed	unarmed
차량형태	비노출 형태	비노출 형태	red police vehicle	

### 3) 경호경찰관 인사관리 제도

#### (1) 경호전종요원 선발 및 교육

4년 이상 정복경찰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런던수도경찰청 소속 일반(normal) 경력 경찰관들 가운데에서 선발한다. 주로 선발당시의 계급은 순경급(constable)이라고 한다. 선발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전문화 교육(additional special training)을 실시한 후 경호부서에 배치한다. 경찰작전활동에 적합하고(Operationaly), 경호직무에 적합하고(Occupationaly) 그리고 능력이 있는(Competently) 者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특히 비무장한 채로 경호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unarmed combat)을 점검한다.

70) 同자료는 필자가 경호관련부서의 현직경찰관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선발된 경찰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전문화 교육과정이 제공된다.<sup>71)</sup>

- ▶ 첫 단계는 3주간에 걸쳐 실시되는 바, 화기조작 및 처리, 기본적인 활용능력배양, 경찰봉, 가스총사용, 권총 및 중화기, 신체보호, 사격연습을 진행한다.
- ▶ 두 번째 교육단계에서는 2주간의 교육 일정이 제공되는 바, 방어적인 경호훈련이 실시된다. 교육중반에는 평가(assessment)가 실시된다.
- ▶ 마지막 세 번째 교육단계에서는 기본교육과정이 혼합된 것(joint course)으로서, 2주간에 걸쳐 선배 경호경찰관과 짝을 이루어서 중요인사 경호에 투입되어 실습을 하게 된다. 부드러운 기법(soft skill)을 익힌다. 그리고 육체적인 단련보다 상황판단이나 경계력, 주의력 등 경호직무에 있어서 정신적으로(mentally) 필요한 분야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중요인사의 이동상황에 맞는 환경(호텔 등)에서 그리고 일정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실제상황처럼 훈련을 실시한다. 경호대상자의 실제 생활(real life) 및 활동영역을 본 따서(mimic), 그 상황에 맞게 훈련을 진행한다.

상황판단과 처리에 대한 논리적 사고역량(logical thinking)을 배양한다. 인식능력(awareness) 향상 훈련이 이틀간에 걸쳐 실시되며, 경호관련 건물 및 지역에 대한 수색훈련(search), 응급조치훈련(first aid) 등이 실시된다. 교육후반부에는 평가(assessment)가 이루어진다.

71) 이하 내용은 필자가 경호부서 담당자와의 인터뷰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5> 영국 수도경찰청 전입 경호경찰관 신규 교육과정 개요

## (2) 기본적인 인사관리 관행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後 일선 경호부서에 배치되면, 배치 후에는 주당 2-3시간씩 훈련이 실시된다.<sup>72)</sup> 1년에 6회 정도의 사격훈련이 실시된다. 사격점수는 있어서 90%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고 한다. 4일 정도는 경호기법(tactical refresher)을 향상시키는 再교육을 받는다. 매 3년마다 사격실력 테스트를 실시하며, 매 6개월마다 심장 등 신체검사를 받는다고 한다.

2006년 8월 현재, 경호부서에는 최소 25세, 최고 57세 정도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40대 이상의 경찰관들은 25% 정도 된다. 이들은 향후 5년 정도 되면 퇴직할 것이라고 한다. 일선 경호요원으로서 근무하는 계급은 순경에서 경사급까지라고 한다. 근무 경찰관들의 정년은 60세까지이다. 그러나 경위이상(Inspector) 계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경호부서의 내근요원으로 혹은 일반 정복경찰부서로 보직이동을 해야 한다고 한다 (must).<sup>73)</sup> 현재 신변경호요원으로 활동 중인 간부들은 경감급(Chief Inspector) 1명, 경위급(Inspector) 3명이 전부라고 한다. 1년에 한 번씩 경호요원들을 대상으로 체력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력검사, 혈압검사를 병행한다.

72) 경호실에 근무했던 경찰관들은 3년 후 다른 경찰부서로 복귀가능하다. 보수수준은 일반경찰관들보다 높은 편이다.

73) 필자가 본 연구를 위해서 면담한 경호부서 경찰간부의 경험에 의하면, 본인은 일선 경호요원으로서 더 근무하고 싶었지만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서, 신변경호요원이 아닌 경호교육부서에 교관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일선 경호요원은 모두 순경-경사급 경찰관이라고 한다.

보수는 일반경찰과 동일(경찰보수 수준 높은편)하다. 단기간(3년) 근무 후 경찰 현업 복귀가 가능하다. 경찰기관 자체 능력으로 임무 수행하고 있으며, 인사관리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한다. 단점으로는 경호요원 수시 교체에 따른 전문성, 보안성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 (3) 경호근무방식 등

영국의 경호기관은 최상의 치안확보가 최고의 경호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과 자치 경찰로서 영국 시민들을 우선한다는 기본적인 인식하에 요란한 경호를 배제하고 軍, 국가정보기관 및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대한 평시 긴밀한 공조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보다 나은 치안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경호관련 대민통제는 영국 시민의 기본권 최우선 보장 관행에 따라 승하차 지점과 행사장 핵심지역에 대한 순간 통제외에 일체의 검문, 검색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며, 순간통제는 사전 배치된 정복경찰관에 의해서 실시된다. 그러나 피경호인의 공연관람 등 개인적 비공식 행사시에는 경호차량 없이 수행경호원 1명만 대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동시 교통통제는 하지 않는다.<sup>74)</sup> 또 공식행사시에는 MPS의 “Escort Group”에서 “Auto-Bike”에 의한 교통관리를 실시하나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Siren 취명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무리 교통이 혼잡해도 긴급하지 않는 일로 영국시민을 놀라게 하지 않겠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sup>75)</sup>

직무의 특성상(because of bad working condition) 불규칙적 음식습관, 불충분한 휴식 등이 제일 문제된다고 한다. 경호근무시 하루에 12-18시간 정도씩 근무하는 등 근무여건이 좋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10일간 근무하고, 4일씩 휴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74)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2003년 7월 2일 민주노동당 이문옥 등 시민 315명이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직대통령 행차에 주변차량 통제하는 것은 특혜”라면서 경호와 교통통제를 없애달라는 요지의 국민감사 청구를 한 바 있다.

75) 장기봉, 전계논문, 46면.

## 4) 유관부서와의 관계: 정보 및 보안부서(M5, M6 등)

런던이외의 지역에서 경호업무가 실시되는 경우, 지역경찰당국(Support by constabulary)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해당 지역경찰관서에서는 무장경찰 경력을 제공하고 있다. 1년에 3-4회 정도의 경호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MI 5, MI 6, 외무부, 국방부 등과 경호관련 정보교환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며, 관련정보는 slow time information 및 fast time information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MI 6에서는 경찰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정보기관간의 상호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경호업무에 있어서 심각한 실패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간 협력은 중요시 여기고 있다.

예를 들면, 1984년 4월 17일 영국 런던에 소재한 리비아 대사관 내부 관계자가 발사한 총격에 의해 Woman Police Constable Yvonne Fletcher(25세, 수도경찰청 소속 여자경찰관)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다.<sup>76)</sup> 同사건은 관계 정보기관들간에 관련 첩보가 제때에 제공되지 않아서, 즉 정보기관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빚어진 불상사였다고 한다. 同사건은 정보기관과 경찰, 특히 경호담당부서와의 정보교환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래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77)</sup>

76) [http://news.bbc.co.uk/onthisday/hi/dates/stories/april/17/newsid\\_2488000/248839.stm](http://news.bbc.co.uk/onthisday/hi/dates/stories/april/17/newsid_2488000/248839.stm)  
(2007년 3월 30일 검색) "1984: Libyan embassy shots kill policewoman"-A police officer has been killed and ten people injured after shots were fired from the Libyan People's Bureau in central London. WPC Yvonne Fletcher had been helping control a small demonstration outside the embassy when automatic gunfire came from outside. She received a fatal stomach wound and some of the demonstrators were also severely injured. WPC Fletcher, 25, died soon afterwards at Westminster Hospital.....

77) 필자가 영국 수도경찰청 경호부서의 경찰관과 대화시, 관계기관간 경호관련 정보교환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 상호협력하고 있는 지 등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담당 경찰관이 언급된 사례이다.



<사 진 1> 1984년 리비아대사관 주변에서 저격당하여 사망한 영국수도경찰청  
경호부서 경찰관(Yvonne Fletcher, 女)

Yvonne Fletcher(女)라는 여성경찰관이 런던 시내 제임스 스퀘어광장주변(St James's Square in London)에 소재한 리비아대사관(the Libyan Embassy) 앞에서 소규모 시위 군중들(당시 Colonel Gaddafi 정권에 반대하는 리비아사람들 75명)에 대하여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sup>78)</sup> 갑자기 대사관 안(from inside the Libyan embassy)에서 不詳者가 발사한 총격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현장주변에 있었던 일반인들 10여명도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同사건으로 런던주재 리비아대사관이 무장한 영국 수도 경찰청 경찰들에 의하여 무려 11일 동안이나 포위된 바 있었다.<sup>79)</sup>

그렇지만 당시 리비아대사관의 저격 관련자는 외교특권(diplomatic immunity) 덕분에 영국경찰 당국의 어떠한 訊問이나 조사도 받지 않은 채(unable to question suspects) 영국으로부터 추방되었다.<sup>80)</sup>

한편 1986년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과 가까웠던 영국의 관계자의 언동에 따르면, 당시 영국경찰관을 저격하였던 대사관 관계자는 후일 리비아로 귀국하자마자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하며,<sup>81)</sup> 영국은 리비아정부가 경찰관 저격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관계가

78) [http://en.wikipedia.org/wiki/Yvonne\\_Fletcher](http://en.wikipedia.org/wiki/Yvonne_Fletcher)(2007년 3월 30일 검색)

79) 한편 이 사건으로 트리폴리 주재 영국대사관에 대해서 가다피정권은 무장군인들로 하여금 대사관을 포위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양국간의 외교관계가 한동안 단절된 바 있었다.

80) [http://news.bbc.co.uk/onthisday/hi/dates/stories/april/17/newsid\\_2488000/2488369.stm](http://news.bbc.co.uk/onthisday/hi/dates/stories/april/17/newsid_2488000/2488369.stm)  
(2007년 3월 30일 검색)

81) WPC Fletcher's murderer was reportedly hanged after returning to Libya.

정상화되었다고 한다.<sup>82)</sup> 희생된 경찰관의 유족들에게 배상을 했다고 한다.

## 5) 경찰경호사례

본항에서는 前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여사를 경호하는 사례를 소개한다. 同부서는 특수경호와 소속요원들과 사저를 경비하는 정복경찰부서로 구분된다.

◎ 2006년 00월 00일

- ▶ 08:00 특수경호와 (사복)요원들(근접 신변경호요원들, SO 1, Plain Clothes)은 私邸를 경비하는 정복경찰부서(House)로부터 경호임무를 인계받는다. 대체로 5-10명 정도의 요원들이 일상적인 전직 수상경호에 투입된다. 2명의 차량운전요원은 10주 정도의 고도의 운전전문 훈련을 받은 요원들이다. 두 대의 차량으로 편성된 경호팀원들이 당일 경호업무에 투입된다.
- ▶ 09:00 前수상이 私邸를 출발한다(위험요소가 증가한다)  
재직시 정치적 이슈들과 관련하여, 그녀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위해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북아일랜드의 테러위협 및 재직당시 구조조정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다수의 노동자들이 있다.
- ▶ 10:00 상원에 도착한다. 현재 그녀는 上院(귀족원)의원이다. 청사에 도착하면, 상원을 경비하는 하원청사경비대(SO 17, Palace of Westminster)의 정복경찰부서의 책임하에 청사내 경호경비가 이뤄진다. 위험요소는 감소하고, 안전한 상태가 지속된다.
- ▶ 12:00 상원청사를 출발하여, 시내의 모처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한다. 식사하는 도중에 일반인들에게 진직 수상이라는 모습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안전하지만, 시간이

82) [http://news.bbc.co.uk/onthisday/hi/dates/stories/april/17/newsid\\_2488000/2488369.stm](http://news.bbc.co.uk/onthisday/hi/dates/stories/april/17/newsid_2488000/2488369.stm)  
(2007년 3월 30일 검색)

지나면서 신분이 노출되면 다시 위험요소가 증가한다고 판단한다.

- ▶ 14:00-18:00 시내모처로 이동하여 개인적인 접촉 등이 이뤄진다. 非공개된 루트를 통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는 감소하지만, 특정한 공개된 행사에 참석하거나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또다시 위험요소가 증가한다.
- ▶ 19:00 사저에 도착하면, 사저를 경비하는 정북경찰관서의 관할하에 경비책임이 이관된다. 신변경호요원들은 철수한다.

## 2. 독일의 경찰경호체계와 현황

- 연방수사청(BKA) 경호국(SG)을 중심으로 -

### 1) 경찰사무의 배분원칙과 경찰조직

1949년 독일기본법(Grundgesetz)<sup>83)</sup>이 제정되면서 독일연방공화국(BRD)의 경찰권 행사는 州(Land)의 권한에 속하도록 규정하였다.<sup>84)</sup> 경찰사무는 원칙적으로 各州의 사무에 속하며, 각주별로 고유한 경찰법 및 경찰조직을 보유하게 되었다. 독일경찰을 지방자치 또는 분권화된 제도라고 하는 이유는 기본법 제30조와 제70조의 규정에 따라서 확인될 수 있다.<sup>85)</sup> 기본법 제 71조 이하에서 연방의 입법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83) 1990년 10월 3일 본 기본법(Bonner Grundgesetz)이 통일과 동시에 독일전역에 발효되었다.

84) Semerak, Arved F., Die Polizei, 1988, p. 26.

85) **Art. 30 Kompetenzverteilung zwischen Bund und Ländern:** Die Ausübung der staatlichen Befugnisse und die Erfüllung der staatlichen Aufgaben ist Sache der Länder, soweit dieses Grundgesetz keine andere Regelung trifft oder zuläßt. Art. 70 Verteilung der Gesetzgebungskompetenzen zwischen Bund und Ländern (1) Die Länder haben das Recht der Gesetzgebung, soweit dieses Grundgesetz nicht dem Bunde Gesetzgebungsbefugnisse verteilt. (2) Die Abgrenzung der Zuständigkeit zwischen Bund und Ländern bemußt sich nach den Vorschriften dieses Grundgesetzes über die ausschließliche und die konkurrierende Gesetzgebung.

대해서는 각주의 입법사항(각주의 권한)이다.<sup>86)</sup> 이와 같이 연방(정부)경찰사무와 州(정부)경찰사무의 배분기준은 基本法の 근거규정에 의한다.

그렇지만 경찰사무가 각주의 사무라고 할지라도 기본법은 특별한 사무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 차원의 경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87)</sup> 즉 전국적 사항, 긴급사태 등을 대비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연방경찰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표 5> 독일경찰 일반현황

총인구	범죄발생건수	전체경찰관 수	전체 공무원수
82,500,849명 2005년 1월 1일 현재	6,391,715건 2005년 12월 31일	266,000여명 2006년 11월 10일 현재	4,610,000 여명 2004년 6월 30일 현재

#### (1) 연방의 독점적 입법사항과 연방경찰사무

基本法 제 73조 이하에서는 국방, 국민의 보호, 國籍사무, 통화, 도량형, 관세, 항공교통, 철도, 우편, 통신, 상속, 출판저작권과 상업의 권리보호와 연방과 州정부간의 공동협력에 관한 내용(동조 10호), 즉 수사경찰에 관한 사항,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헌법 보호차원의 연방과 州의 안전에 관한 사항, 폭력의 사용이나 독일연방공화국의 대외적인 이익을 훼손 목적으로 企圖된 행위들에 대한 연방내에서의 보호, 연방수사청과 국제적인 범죄진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연방이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한다. 즉 요인경호 직무에 관해서는 연방경찰이 담당한다.

86) 독일의 각주정부에는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환경부 등 행정각부가 설치되어 있다. 州법무부산하에 각급 검찰청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검찰사무가 지방자치사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권한과 임무는 연방법의 규율사항이기 때문에 검찰권의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사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의 여부는 자기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독자적 입법권이 부여되어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형법과 州형법이 따로 존재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이 연방법으로 규율되어 있어, 독자적인 주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경찰법을 비롯한 상당수의 행정법적인 사항은 각주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87) Volkmar Götz,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12. Aufl., 1995, pp. 177-179; Franz-Ludwig Knemeyer, Polizei- und Ordnungsrecht, 6. Aufl., 1995, pp. 18-20.

## (2) 州정부 및 자치경찰사무

연방정부의 독점적, 병렬적 입법사항이 아닌 경찰사무에 관해서는 州(정부)경찰의 專屬의 사무가 된다. 즉, 수사업무에 관한 연방과 州정부간의 협력사항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경무, 교통, 방법, 일반수사 및 경비업무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州경찰의 사무로 이해할 수 있다.

## (3) 州경찰간의 직무응원 및 공동협력의 문제

대규모 시위사태 및 경호경비 직무를 수행할 시 各州경찰간의 응원, 협조문제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연방경찰(Bundespolizei)이 개별 州경찰을 지원하며, 2차적으로 다른 州경찰은 연방과 州의 질서보호차원에서 협력할 의무를 지며(헌법사항), 이러한 경우에 연방내무부가 이를 통제·조정할 수 있다.

## 2) 연방경찰조직(Bundespolizei)

### (1) 개 요

연방경찰조직으로는 연방내무부 소속의 경찰업무국(Abteilung Polizeian- gelegenheiten), 연방범죄수사청(BKA), 연방경찰청(Abteilung Bundespoli- ze), 연방헌법보호청이 있다. 한편, 연방총리실에 소속된 연방정보부(Bun- desnachrichtdienst: BND), 국방부 소속 軍 기무사령부(Militärisches Ab- schirmdienst: MAD)등도 直接強制수단과 執行경찰은 없지만, 연방경찰기관이다.<sup>88)</sup> 사물관할에 따라 제한된 권한을 행사하는 “특별경찰”이 존재하기도 한다.<sup>89)</sup> 본항에서는 연방범죄수사청, 연방헌법보호청 및 연방경찰청에 대해서 상술한다.

### (2) 연방범죄수사청

88) Scholler·Schloer, Grundzüge des Polizei- und Ordnungsrecht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4. Aufl., 1993, p. 40.

89) Arved F. Semerak, Die Polizei, 1988, p. 37.

연방범죄수사청은 1946년 1월 1일 함부르크에서 영국점령지역을 위한 "수사경찰관청("Kriminalpolizeiamt für die Britische Zone")"으로 처음 설치되었다. 1949년 5월 23일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한 【기본법(Grundgesetz)】이 공포되었다. 기본법 제 73조와 87조상의 규정을 토대로 연방범죄수사청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드디어 1951년 3월 15일 연방범죄수사관청의 설치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연방정부는 同부서의 본부를 Wiesbaden에 두고, 연방경호총국(Abteilung "Sicherungsgruppe")은 Bonn에 설치하였다.<sup>90)</sup> 동년 10월 31일 영국점령지 Hamburg에 소재했던 수사관서를 인수하고, 대신에 Hamburg에는 연방범죄수사청의 支部형태("Außenstelle Hamburg")의 기관으로 남겨두었다.

연방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 BKA)은 연방내무부산하 外廳이다.<sup>91)</sup> 청장은 내무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연방내각에서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B9)이다.<sup>92)</sup> 특정한 범죄유형의 수사(국제적 범죄, 조직범죄, 마약, 폭발물관련, 화폐위조사건, 무기밀매, 요인압살기도 행위 등)에 있어서 관할권을 가지며, 범죄정보수집, 분석업무 및 국가적 법의 침해사범 수사직무가 부여되어 있다.<sup>93)</sup> 외국과의 수사협조(인터폴총국), 경찰전산업무, 州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한 장비, 인력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방범죄수사청 설치법】에 의거, 각주의 내무부산하에 州범죄수사청(Landeskriminalamt: LKA)이

90) <http://www.bka.de/profil/profil5.html>(2007년 3월 27일 검색)

91) 한국 문헌에서는 연방수사청, 연방수사국, 연방범죄수사청 등으로 번역하는 사례가 있는 바, 본고에서는 연방범죄수사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92) 2006년 6월 현재 연방범죄수사청장은 Jörg Ziercke(1947년생)이다. 동인은 1967년 Schleswig-Holstein州 경찰관으로 입직하였다. 1992년부터 2004년까지 Schleswig-Holstein 경찰청에서 고위관리로 재직하면서, 1995년부터는 州경찰청장을 지낸 바 있다. 2004년 2월 청장으로 임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전임 청장이었던 Dr. Klaus Ulrich Kersten(April 1941 im Berlin)은 법률가출신으로 1973년 경찰직에 입문하여, 1996년 4월 연방범죄수사청장에 임명되어 약 8년간 재직하다가 지난 2004년 2월 5일 퇴임한 바 있다. [http://www.biologie.de/biowiki/Bundeskriminalamt# BKA-Pr.C3.A4sidenten](http://www.biologie.de/biowiki/Bundeskriminalamt#BKA-Pr.C3.A4sidenten) (2007년 3월 27일 검색) 한편 동부서의 청장(BKA-Präsidenten)으로 재직한 인사들의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다: Dr. Max Hagemann - 1951 bis 1952, Dr. Hanns Jess - 1952 bis 1955, Reinhard Dullien - 1955 bis 1964, Paul Dickopf - 1965 bis 1971, Horst Herold - 1971 bis März 1981, Heinrich Boge - März 1981 bis 1990, Hans-Ludwig Zachert - 1990 bis April 1996 Klaus Ulrich Kersten - April 1996 bis Februar 2004, Jörg Ziercke - amtierender Präsident (seit dem 26. Februar 2004) 등이다.

93) Möller · Wilhelm,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4. Aufl., 1995, p. 11.

설치되어 있다.

독일에는 별도의 경호실과 같은 기관이 없으며, 연방범죄수사청에서 요인경호 직무부서-Sicherungsgruppe: 경호총국-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적 범익침해사건 (Staatschutzdelikte)에 대한 수사는 보안사범수사국(Abteilung ST)이 담당하고 있다.<sup>94)</sup> 2005년 1월 현재 연방범죄수사청에는 일반경찰관(49.3%)을 비롯한 직원 4,729명이 근무하고 있다. 2005년도 예산규모는 약 3억9천2백만 유로(Euro)에 달하고 있다.<sup>9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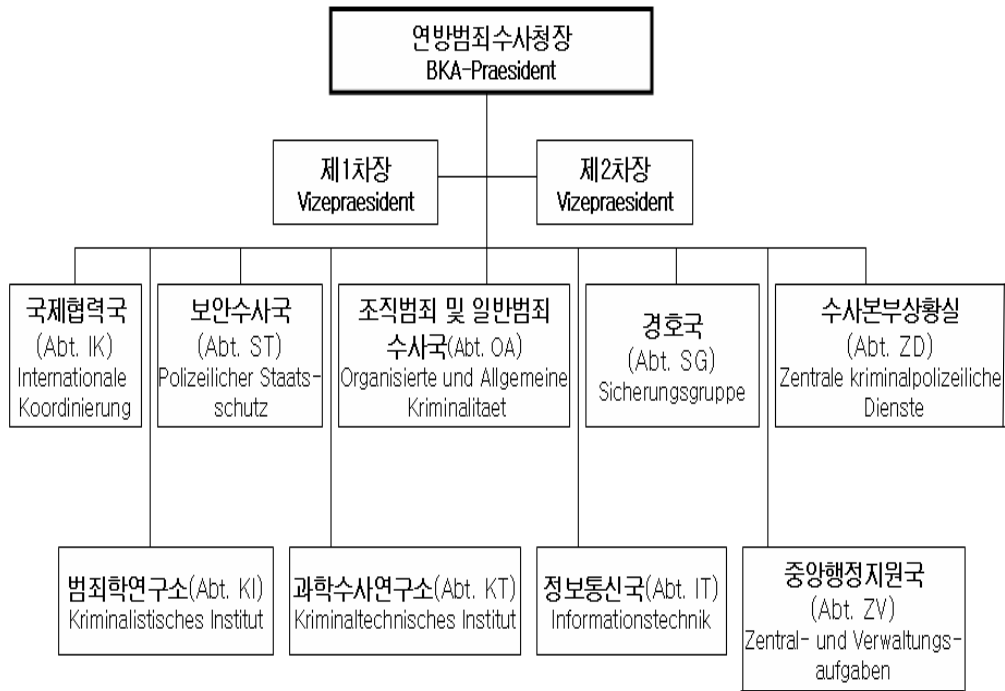


<사진 2> Wiesbaden에 소재한 연방범죄수사청본부 건물<sup>96)</sup>

94) 극단주의적 범죄 및 테러범죄를 지향하고 있는 바, 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유형을 수사한다. 정치적 동기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로서 극좌/극우주의적 범죄 및 테러행위, 정치적 동기에 의한 외국인 범죄중 국제 테러행위, 정치적 동기에 의한 외국인 범죄 중 이슬람인에 의한 테러행위, 방첩(Spionagebekämpfung), 중요기술의 불법적 이전, 대량파괴 및 살상무기의 유포행위 등을 수사한다. 또한 테러단체 결성, 외국의 범죄조직 및 테러조직 등 관련범죄수사를 관할한다.

95) [http://www.bka.de/profil/broschueren/bka\\_zahlen\\_fakten.pdf](http://www.bka.de/profil/broschueren/bka_zahlen_fakten.pdf)(2006년 4월 28일 검색) 2005년 1월 기준으로 연방범죄수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4,729명이다. 절반정도는 경위급 이상의 정규 수사경찰관(Kriminalbeamte)이며, 32.8%는 기능직, 16.7% 행정직 및 기타 공무원이다. 교육생은, 1.2%이다. 한편 동부서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36.2% 정도이다. 2005년판 연방범죄수사청의 Broschüre “Bundeskriminalamt Das FAKTEN UND ZAHLEN”참조. 한편, 1998년의 경우, 동부서 소속 전체 직원들은 4,357명이었으며, 이중 절반은 경위급 이상의 수사경찰관이었다고 한다. <http://www.ks1.s.bw.schule.de/seitenwww/themen/projekte/bundeslandesverwaltung/bundeskriminalamt.htm> (2007년 3월 27일 검색)

96) 필자는 수년전 동부서에서 실습을 한 바 있다.



<그림 6> 독일연방범죄수사청 조직도

(3) 연방헌법보호청

【연방헌법보호청법】에 의하면, 연방헌법보호청(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BfV)은 자유민주의적 기본질서, 연방과 개별 州의 안전과 평온상태를 보호하고, 연방과 각주 헌법기관을 보호하며, 안전을 위협하고 비밀정보활동을 위태롭게 하는 외부세력으로부터 이를 보호하는 임무(방첩업무)를 수행한다. 즉 독일연방공화국의 내적 안전(innere Sicherheit) 유지 임무를 띠고 있다.<sup>97)</sup> 국가의 존립과 안녕을 저해하는 세력 등의 국내에서의 스파이 활동<sup>98)</sup>에 대한 정보수집과 배포, 연방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적대적인 세력 등에 대한 감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즉 정보수집대상은 좌익테

97) <http://www.verfassungsschutz.de/de/publikationen/verfassungsschutzbericht/vsbericht> \_2003(2006년 4월 30일 검색).

98) 해외 스파이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은 연방정보부(BND) 소관사항이다.

러, 군대내의 극좌테러분자, 연방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할 위험성을 갖고 있는 이념단체, 정당, 이들과 연계된 국제조직, 극우세력, 新나찌 추종세력 및 조직원, 이들과 연계된 단체, 출판물, 내적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외국인 관련사항등이며, 외국 첩보기관의 침투에 대한방첩업무(스파이방지)를 맡고 있다.<sup>99)</sup>

同부서에는 일반적인 경찰 집행권한, 예를 들면, 체포, 압수, 수색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단지 국가적 법익보호와 관련된 정보(Erkenntnisse)를 일반경찰과 교류하고 있는 바, 反국가사범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정보를 경찰수사당국에 이첩하는 역할을 하며, 보안사범수사는 일반(수사)경찰이 담당한다. 각주에는 州내무부산하에 州헌법보호청(국)이 설치되어 있어 연방과 州정부간의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같이 反국가사범(Staatsschutzdelikte)에 대한 수사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독일의 일반집행경찰은 정보수집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sup>100)</sup>

#### (4) 연방경찰청(Bundespolizei)의 조직과 경호관련 직무

독일기본법(GG) 제73조 및 연방국경수비대설치법에 의거, 1951년 동독지역 1,393km, 체코지역 356km의 국경수비를 목적으로 1951년 3월 16일 서독지역 국경수비(Bundesgrenzschutz)를 목적으로 【국경수비법】을 근거로 설립되었다.<sup>101)</sup> 1972년 對테러부대(연방경찰특공대, Grenzschutzgruppe 9: GSG-9)가 창설되어 테러진압 업무도 수행한다.<sup>102)</sup> 연방경찰청본부(Bundespolizeidirektion)는 Koeln에 소재하며, 독일 전역을 5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東·西·南·北·中 관구경찰국(Bundespolizeipräsidium)를 운용하고 있으며, 관구경찰국 산하 19개 경찰서 및 128개 지구경찰서가 설치되어 있다. 기동경찰대, 교육대, 항공대, 통신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99)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Verfassungsschutzbericht 1996, 1997, pp. 13-15.

100) 범죄정보수집, 분석업무가 연방수사국에 부여됨으로써, 州수사국의 경우도 범죄정보수집, 분석업무가 연계적으로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범죄정보에 관한 수집, 작성, 분석, 배포업무는 일반집행경찰에 의해서도 수행된다.

101) [http://www.bundespolizei.de/cdn\\_030/nn\\_484486/DE/Home/09\\_Historie/Historie\\_node.html\\_nnn=true](http://www.bundespolizei.de/cdn_030/nn_484486/DE/Home/09_Historie/Historie_node.html_nnn=true)(2006년 6월 20일 검색)

102) Semerak, Arved F., Die Polizei, 1988, p. 40. 특히 1972년 뮌헨 올림픽대회 당시 “검은 9월단”에 의한 이스라엘선수단 피격사건 발생 후 설치된 부대이다. 물론 프랑스도 이 사건을 계기로 자국 경찰조직에 이와 유사한 대테러부대를 창설,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임무는 국경지역의 감시, 국경 통과 차량 및 사람의 통제, 국경에서 30km 이내의 장해제거, 해상경비, 여권통제, 국가 비상사태시 危害防止, 재해경비, 다중범죄진압, 국제공항경비, 對테러업무,<sup>103)</sup> 핵폐기물수송경비, 대규모 국제행사장 경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과 임무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 9.11테러사건을 계기로 관련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조직 및 임무에 부합하도록 2005년 6월 30일자로 “국경수비대(Bundesgrenzschutz: BGS)”라는 부서 명칭을 “연방경찰(Bundespolizei)”로 개칭하게 되었다. 독일통일 당시 동독지역 국경경비대 소속원 7,000여명을 인수, 再임용한 바 있다.

헌법기관의 청사경비(특히 연방의회 청사, 연방대통령, 수상의 관저 및 연방헌법재판소청사)를 담당하며, 외국기관의 보호업무(베를린 소재 외국 대사관 경비 등)를 수행한다. 대규모 시위사태를 비롯한 경비수요(대규모의 자연재해발생, 외국원수 등의 방문, 범죄자 수배 등)가 발생할 시에는 각州 경찰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2006년 4월 현재, 소속 공무원은 40,000여명이고, 정규경찰관은 약 30,000여명이다. 이 부서에서도 경호업무를 분담수행하고 있다.

연방경찰의 경호임무와 구체적인 청사경비 대상은 다음과 같다. 연방수도인 베를린에 소재한 헌법기관들인

- ☞ 연방대통령 관저(Bundespraesidialamt)
- ☞ 연방수상 관저(Bundeskanzleramt)
- ☞ 외무부 청사(Auswartiges Amt)
- ☞ 연방내무부 청사(Bundesministerium des Innern)
- ☞ 연방법무부 청사(Bundesministerium der Justiz) 및
- ☞ 바덴-뷔르템베르크州 칼스루에市에 소재한 연방헌법재판소청사(Bundesverfassungsgericht in Karlsruhe)<sup>104)</sup> 등에 대하여 경찰상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

103) 1972년 뮌헨올림픽 테러사건을 계기로 對테러특공부대(GSG-9)를 창설, 운용하고 있다.

104) 필자는 연방헌법재판소 및 연방하원청사를 경비중인 경찰관들과 면담한 바 있다.

다.<sup>105)</sup> 연방경찰은 사람과 교통의 통제 그리고 경찰순찰근무를 통하여 가능한 위험을 방지한다.



<사진 3> 연방청사 앞에서 경비근무 중인 연방경찰

또한 연방 하원(Bundestag)議長의 명령을 받아서, 연방하원 청사내에서 경찰권 및 주거권 행사를 지원한다. 50여개 이상의 외국에 설치된 독일대사관에 대한 위험방지임무를 지원한다. 연방범죄수사청의 요인경호와 관련된 임무를 지원한다.<sup>106)</sup>

### 3) 연방경호조직과 직무범위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며, 연방경찰이 요인경호임무를 맡고 있다. 연방내무부 외청격인 연방수사청(BKA)소속 수사경찰(Kriminalpolizei)이 요인경호임무를 담당하고, 요인들의 집무실·중요청사경비 및 외곽경호는 연방내무부 소속의 연방경찰(Bundespolizei) 소속 정복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105) <http://www.bundesgrenzschutz.de/Aufgaben/SonstigeAufgaben/index.php>.

106) <http://www.bundesgrenzschutz.de/Aufgaben/index.php>.

(1) 연방법죄수사청내 경호총국조직과 책임자 위상<sup>107)</sup>

연방경찰에서 경호직무를 전담수행하고 있는 바, 연방법죄수사청 소속의 연방경호총국이 해당부서이다. 연방경호총국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sup>108)</sup>

경호국장은 우리나라의 치안감급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경호총국은 전문임무별로 2개의 하부조직(zwei Sachgebiete, 경호1처, 경호2처<sup>109)</sup>)으로 나뉘어 진다. 각 조직은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시 몇 개의 작은 부서(8개의 과)로 다시 나뉘어 진다.<sup>110)</sup>

경호1처는 주로 헌법기관구성원들에 대한 近接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同부서는 4개과로 이뤄져 있으며, 과장급은 대체로 수사경찰 총경급(Kriminal- direktor 혹은 Leitender Kriminaldirektor)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경호1처 제1과(SG11)는 연방대통령(Schutz des Bundespräsidenten) 신변보호를 경호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同제2과(SG12)는 연방수상((Schutz des Bundeskanzlers)

同제3과(SG13)는 연방각부의 장관들(Schutz der Bundesminister)

同제4과(SG14)는 연방각부의 장관들(Schutz der Bundesminister)의 신변보호 경호직무를 담당하고 있다.<sup>111)</sup>

한편 경호2처는 일종의 지원/검측/작전 및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국빈에 관련된 경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호2처 제1과(SG21)는 소속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Ausbildung) 하는 부서이다.

同제2과(SG22)는 경호직무관련 이슈들(안전검측 등)에 대한 조언, 정보의 수집, 상황

107) 필자는 그동안 연방경호총국이라는 표현을 관련논문에서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한국경호관련 문헌에서는 경호총국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바, 본논문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 경호총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108) Rheinhard Scholzen, Personenschutz: Geschichte, Ausbildung, Ausrüstung, 2. Aufl.(Stuttgart: Motorbuch Verlag, 2004), p. 42에서 소개된 내용과 경호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109) 同부서의 명칭은 한국의 경호실 관련문서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참고하였다.

110) <http://www.defence-net.com/magazin/122.html>(2007년 3월 27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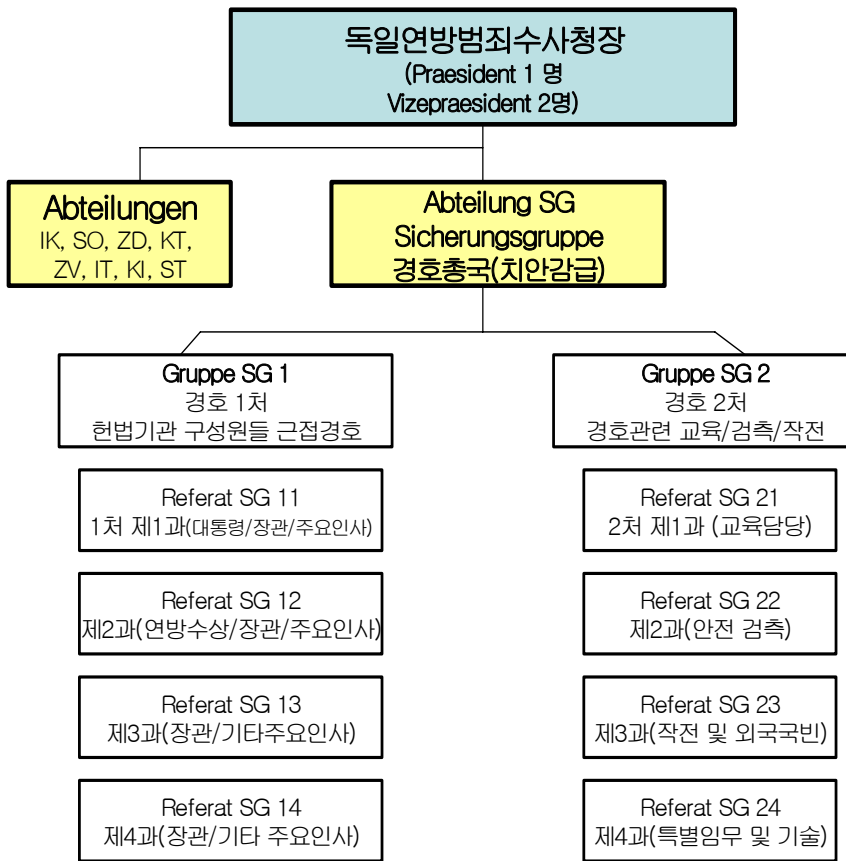
111) <http://www.defence-net.com/magazin/122.html>(2007년 3월 27일 검색)

처리(Beratung in Schutzfragen, Sammeln von Informationen, Erstellen von Lagebildern)

同제3과(SG23)는 내외국의 요인들에 대한 경호 및 경호작전 지휘(in- und ausländische Schutzpersonen, Einsatzleitung)

同제4과(SG24)는 경호작전을 위한 기법/기술, 상황해결 그리고 비밀작전을 위한 수색 (Einsatztechnik und Aufklärung, vorbereitende Durchsuchungen, verdeckter Einsatz)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sup>112)</sup>

<그림 8> 독일연방경호조직도



112) <http://www.defence-net.com/magazin/122.html>(2007년 3월 27일 검색)

경호직무에 관한 규정은 연방범죄수사청법(제1장 제5조-헌법기관구성원에 대한 보호: § 5 Schutz von Mitgliedern der Verfassungsorgane)에 규정하고 있으며, 同직무와 관련된 경찰법상의 권한 규정(제2장 4절 이하 21조-25조 규정들)도 같은 법률<sup>113)</sup>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6> 경호경찰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연방범죄수사청법 관련규정들

<p><b>§ 5 Schutz von Mitgliedern der Verfassungsorgane</b> (헌법기관 구성원들에 대한 보호: 경호관련 근거법령)</p> <p>(1) Unbeschadet der Rechte des Präsiden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und der Zuständigkeit des Bundesgrenzschutzes und der Polizeien der Länder obliegt dem Bundeskriminalamt</p> <p>1. der erforderliche Personenschutz für die Mitglieder de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sowie in besonders festzulegenden Fällen der Gäste dieser Verfassungsorgane aus anderen Staaten;</p> <p>2. der innere Schutz der Dienst- und der Wohnsitze sowie der jeweiligen Aufenthaltsräume des Bundespräsidenten,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und in besonders festzulegenden Fällen ihrer Gäste aus anderen Staaten.</p> <p>(2) Sollen Beamte des Bundeskriminalamtes und der Polizei eines Landes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zugleich eingesetzt werden, so entscheidet darüber das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im Einvernehmen mit der obersten Landesbehörde.</p>
<p><b>Unterabschnitt 4 Schutz vor Mitgliedern der Verfassungsorgane</b> (헌법기관 구성원들인 요인에 대한 경호 직무수행을 위해서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들)</p> <p>§ 21 Allgemeine Befugnisse (일반적 조치권한)</p> <p>§ 22 Erhebung personenbezogener Daten (인적 정보처리권한)</p> <p>§ 23 Besondere Mittel der Datenerhebung (정보처리에 관한 특별한 수단)</p> <p>§ 24 Datenübermittlung an das Bundeskriminalamt (연방범죄수사청에 정보이송)</p> <p>§ 25 Verarbeitung und Nutzung personenbezogener Daten (인적 정보가공과 이용)</p>

113) 관련법령의 정식 명칭은 다음과 같다: 【수사경찰영역에 있어서 연방과 각주간의 협력과 연방범죄수사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Bundeskriminalamt und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kriminalpolizeilichen Angelegenheiten (Bundeskriminalamtgesetz - BKAG) In der Fassung vom 07. Juli 1997 (BGBl. I S. 1650)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7 Teil I Nr. 46, ausgegeben zu Bonn am 10. Juli 1997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0 Strafverfahrensänderungsgesetz 1999 (StVÄG 1999) vom 02.08.2000, (Bundesgesetzblatt Jahrgang 2000 Teil I, Nr.38, Seite 1261)

## (2) 경호대상과 직무범위 개요 범위

연방수사청 경호국(Sicherungsgruppe: SG)에서 요인경호직무를 수행한다. 경호국 소속 요원들은 捜査警科에 속하는 警衛級 이상의 경찰관(Kriminalbeamte)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선발된 그리고 전문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수사경찰간부들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수방탄 차량, 첨단장치가 부착된 특수화기 혹은 첨단통신기기와 같은 현대식 장비를 갖추고 있다. 자신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武裝한 채 근무하고 있으며, 경호대상자들의 신체와 생명이 위태롭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sup>114)</sup> 경호국은 베를린에 소재하고 있다.

연방수사청법(Bundeskriminalamtsgesetz: BKAG) 제 5조에 따르면,<sup>115)</sup> 연방헌법기관 구성원들에 대한 경호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16)</sup>

독일연방의회 의장의 권한과 연방경찰의 권한(국경수비업무부서) 그리고 각주 경찰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연방헌법기관의 구성원들(연방대통령, 연방수상, 연방 上院과 下院의원들, 연방헌법재판소 裁判官들,<sup>117)</sup> 각부 長官들-Bundesminister<sup>118)</sup>)의 신변경호와 숙소와 근무지(den Innenschutz ihrer Dienst- und Wohn- sitze)에 대한 경호경비를 실시한다. 독일을 공식방문하는 외국의 정치가들, 외국을 公式 방문하는 독일의 政治家들에 대한 신변보호직무를 수행한다.<sup>119)</sup>

114) 연방수사청 본부청사는 현재도 Wiesbaden이라는 도시에 소재하고 있다. 통일 후 연방의 수도가 베를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경호국은 서독의 수도였던 Bonn 근처에 소재하였다. 2007년 3월 현재, 경호국의 주요부서는 베를린에 소재하며, 일부 부서는 Meckenheim bei Bonn에 남아 있다. 출처 [http://de.wikipedia.org/wiki/Bundeskriminalamt\\_\(Deutschland\)#Abteilung\\_SG\\_E2.80.93\\_Sicherungsgruppe](http://de.wikipedia.org/wiki/Bundeskriminalamt_(Deutschland)#Abteilung_SG_E2.80.93_Sicherungsgruppe)(2007년 3월 27일 검색)

115) § 5 Schutz von Mitgliedern der Verfassungsorgane.

116) <http://www.datenschutz-berlin.de/gesetze/sonstige/bkag.htm#nr5>

117) 연방대법원 구성원들과는 달리,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경호를 실시하는 점이 특이하다.

118) 외무, 국방, 내무, 법무장관 등이 경호대상에 포함되고 있다고 한다. 2007년 3월 현재 연방내무부 장관은 Dr. Wolfgang Schäuble이다. 동인은 1971년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재무부에 입직(사무관), 1978년부터 1984년까지 변호사를 지냈다. 이후 기독교민주당(CDU)의 간부로 활동하였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연방내무부 장관을 지낸 바 있으며, 2005년부터 다시 연방내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에 있다. 그런데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1990년 10월 12일 선거관련 행사 직후, 약물 중독자였던 괴한(후일 재판과정에서 심신상실자로 판정, 정신병원으로 이송)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 후 장애인이 되어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당시 연방경호총국의 경호원 1명이 총상을 입었다.

또한 독일의 헌법기관 및 구성원들을 방문하는 외국의 귀빈(VIP)들에 대한 신변 수행 경호와 이들의 숙소(den Innenschutz ihrer Dienst- und Wohnsitze)에 대한 경호 경비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연방외무부의 위탁과 연방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서 연방수사청은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들에게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외국에 소재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 등에 신변경호를 위하여 경찰관들을 파견한다.<sup>120)</sup>



<사진 4> 게하르트 슈뢰더 前연방수상에 대한 경찰경호장면<sup>121)</sup>

연방범죄수사청의 경호국 경찰관들과 각주의 경찰은 필요한 신변보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찰작전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연방내무부장관은 최상급 경찰관청들과 협의를 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결정한다.<sup>122)</sup> 직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호총국은 각주의 경찰관청들, 연방국경수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부서 그리고 독일 연방 의회소속 집행경찰 및 안전부서 그리고 외국정부의 정보보안기관들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sup>123)</sup> 경호대상자들 가운데, 한국과는 달리 장관급, 검찰총장급에 대한 경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이 특이할만하다.

#### 4) 경호경찰관 인사관리

119) <http://www.defence-net.com/magazin/122.html>(2007년 3월 27일 검색)

120) <http://www.sondereinheiten.de/forum/viewtopic.php?t=8401&view=next&sid=bc540f19a81b19b4418f93ebe57ce96>(2007년 3월 27일 검색)

121) [http://inhalt.oevs.monster.de/2126\\_de\\_p1.asp](http://inhalt.oevs.monster.de/2126_de_p1.asp)(2007년 3월 27일 검색)

122) <http://www.defence-net.com/magazin/122.html>(2007년 3월 27일 검색)

123) <http://www.sondereinheiten.de/forum/viewtopic.php?t=8401&view=next&sid=bc540f19a81b19b4418f93ebe57ce96>(2007년 3월 27일 검색)

### (1) 선발 및 배치 등 인사관리 개요

2005년 5월 현재, 약 550여명의 경찰관들이 경호국에 근무 중이다.<sup>124)</sup> 그 중 순수한 경호경찰관은 350여명이고, 연간 예산은 600억원대 규모라고 한다. 연방경호총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구성비를 보면, 수사경찰관(경위 이상, Kriminalpolizei) 50%, 연방경찰에서 파견된 일반 정복경찰관(순경-경사급, mittleren Dienst) 35% 그리고 일반행정직원 15% 정도로 이뤄져 있다.<sup>125)</sup>

신변경호직무를 수행하는 경호국 소속의 경호경찰관 채용은 신입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연방범죄수사청(BKA)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수사)경위급 이상의 경찰관, 연방경찰 혹은 다른 9개 범죄수사청(LKA) 소속의 경찰관들 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특별히 선발하며, 선발된 경찰관들은 추가적인 직무전문화 교육 이수 후 경호총국(SG)으로 발령 근무하는 시스템이다. 경호직무 수행을 위하여 광범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스포츠 역량이 아주 탁월하고, 행동거지가 우수한 그리고 안정된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적이며, 창조적인 능력이 있으며, 심리적인 부담을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능력과 주변 경계능력이 갖추어진 그리고 판단력 있고, 정제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sup>126)</sup>

특수하게 보호된 차량을 완벽하게 운전할 줄 알아야 하며, 사격실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경호요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임무들이 부여될 수 있다. 가능한 공격으로부터 경호대상자를 보호하기에 앞서 경호대상자의 사생활도 보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시민들과 친화적인 경호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sup>127)</sup>

報酬은 일반경찰관들과 동일하며, 근무시에는 위험수당(zwar keine Gefährdungszulage)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sup>128)</sup>

채직 중에는 경감급(Erster Kriminalhauptkommissar)까지 승진이 가능하며, 별도

124) <http://archiv.tagesspiegel.de/archiv/15.05.2005/1813867.asp>(2007년 3월 27일 검색)

125) Scholzen, 2004, p. 51.

126) [http://inhalt.oevs.monster.de/2126\\_de\\_p1.asp](http://inhalt.oevs.monster.de/2126_de_p1.asp)(2007년 3월 27일 검색)

127) [http://de.wikipedia.org/wiki/Bundeskriminalamt\\_\(Deutschland\)#Abteilung\\_SG\\_E2.80.93\\_Sicherungsgruppe](http://de.wikipedia.org/wiki/Bundeskriminalamt_(Deutschland)#Abteilung_SG_E2.80.93_Sicherungsgruppe) (2007년 3월 27일 검색)

128) <http://archiv.tagesspiegel.de/archiv/15.05.2005/1813867.asp>(2007년 3월 27일 검색)

로 고급직 경찰관(경정급)으로 승진가능하다. 경정급 이상으로 진급하게 되면 관리자 직군으로 인사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경호실무자들은 대체로 경위, 경감급 경찰관들이 대부분이다.

여성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부여되고 있는 바, 전체 요원들 가운데 18%정도가 여성경찰관들이라고 한다. 여성경호요원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들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sup>129)</sup>

경호총국의 직원은 (수사)경찰관신분으로서, 현장 행사요원은 체력조건 등을 고려하여 45세 이하로 배치하고, 정년은 계급에 상관없이 일반(수사)경찰관들처럼 年齡정년이 적용되어 60세이다. 그러나 경호부서 실무요원들은 50세 정도까지 근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다른 수사경찰관들은 계급불문하고 60세까지 동일하다. 대부분의 경호경찰관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방수사청내 다른 부서로 보직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 매년 실시하는 체력테스트(jährlichen körperlichen Leistungstests)에 통과되어야 경호국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sup>130)</sup>

독일연방경호국의 경우, 젊고 체력이 뛰어난 경호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원들이 동일부서에 한 번 배치되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직무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

## (2) 경호요원 교육제도와 내용

수사경찰 경위급을 양성하는 연방수사경찰대학과 순경급 경찰관에 대한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연방경찰교육기관에 기본적인 경찰작전 및 경찰개입에 관한 문제, 자동차안전운전 훈련, 사격훈련, 응급조치 그리고 법률적 이슈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신변보호 직무관련 훈련과정이 개설되어 있다.<sup>13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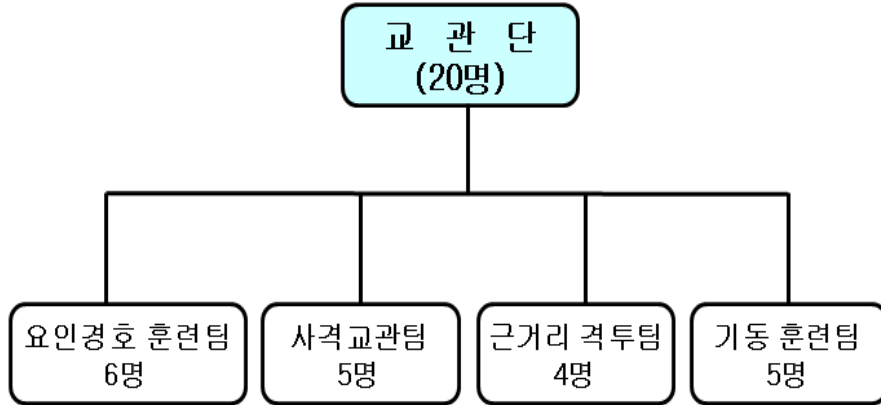
경호총국의 교육훈련 및 기획은 경호2처(SG 2)내 제1과(SG21)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총무행정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경호2처 제1과 내 순수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교관단은 총 20명으로서, 현장 행사요원 중 장년기(30대 중반이상)에 접어든 우수 인력

129) <http://archiv.tagesspiegel.de/archiv/15.05.2005/1813867.asp>(2007년 3월 27일 검색)

130) [http://inhalt.oevs.monster.de/2126\\_de\\_p1.asp](http://inhalt.oevs.monster.de/2126_de_p1.asp)(2007년 3월 27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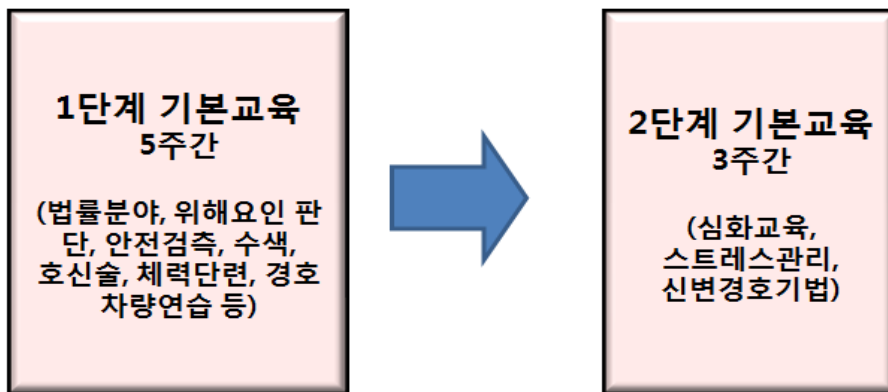
131) <http://archiv.tagesspiegel.de/archiv/15.05.2005/1813867.asp>(2007년 3월 27일 검색)

을 대상으로 선발운용하고 있다. 별도의 복지 및 인사상 특혜는 없으나 직무에 대한 자  
 긍심과 만족도가 높고, 행사부서로 복귀시키는 않는다고 한다.



<그림 7> 독일연방범죄수사청 경호총국 교육담당부서 개요

훈련은 경호요원으로 선발된 후 8주간의 기본특수훈련이 실시된다. 첫 5주 동안은 기  
 본교육(Grundlehrgang), 나머지 3주간(1주간은 직접 신변경호부서에서, 나머지 2주간  
 은 심화교육)은 신변경호 훈련을 실시하면서, 심화교육 세미나로 진행된다.<sup>132)</sup>



<그림 18> 독일연방범죄수사청 경호총국 전입 경호경찰 기본교육과정개요

132) Scholzen, 2004, pp. 51-77.

이러한 기본교육 과정은 연간 3-4회 씩 베를린에 소재한 경호총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중요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분야: 특히 연방법죄수사청법과 연방국경수비대법 그리고 직접강제력 행사에 관한 경찰법 등이다. 경호작전을 위해서 개별 경찰공무원들에게 어떤 유효한 법률적 가능성과 법률적 한계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교육받게 된다. 특히 경호경찰관들은 경찰직무규정(PDV 100, 129, 130<sup>133</sup>)들을 잘 숙지해야 한다.<sup>134)</sup>

▶ 그 다음 교육단계에서는

경호대상자에게 위협이 발생할 시에 신변경호 기본원칙들, 기술적 측면, 행동원칙들이 교육된다.

- ▷ 독일을 방문하는 외국의 중요인사들(국민) 경호
- ▷ 경호대상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들의 판단
- ▷ 건물내부의 안전유지 및 검측/수색, 폭발물 및
- ▷ 경호근무에 필수적인 총기사격연습
- ▷ 무기없이 호신술 체득하기
- ▷ 스포츠를 통한 체력단련
- ▷ 경호차량운전 연습 등이다.<sup>135)</sup>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이 완료되면, 심화교육 세미나(Aufbauseminar) 단계에서는 스트레스처리 및 갈등해결 훈련이 실시된다. 그래서 특수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태도훈련을 실시한다. 同훈련의 목적은 신변경호시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사전에 배양하는 것이다.<sup>13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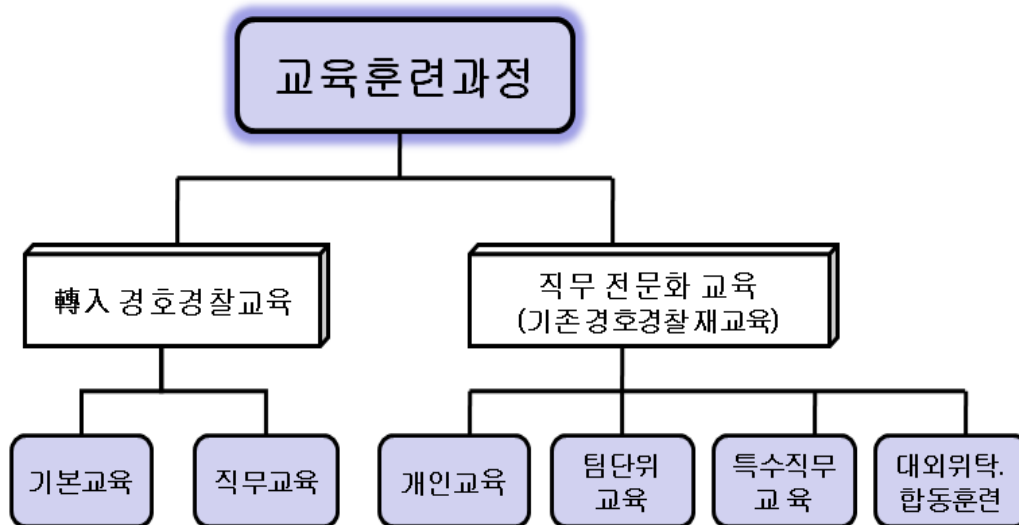
133) PDV 100 Führung und Einsatz der Polizei(경찰지휘 및 작전), - PDV 129 Personen- und Objektschutz(인적보호와 물적 보호), - PDV 130 Einsatz der Polizei bei Staatsbesuchen und sonstigen ausländischen Besuchen(외국의 국민 및 그 밖의 외국의 중요한 인사들이 독일을 방문하는 경우에 대한 경찰작전).

134) Scholzen, 2004, p. 53.

135) Scholzen, 2004, p. 56.

136) Scholzen, 2004, p. 56.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이 종료되면, 경찰관들은 3일간에 걸친 신변경호 기법에 대하여 안내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3일간의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시기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신변경호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법을 터득하기 위하여 특별히 단체근무 방법을 훈련받게 된다.<sup>137)</sup> 경호대상자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경호요원들에 대한 위협 요인에 대한 대처훈련을 받게 된다. 그래서 경호대상자에게 危害를 가하려는 시도로부터 어떻게 대처할 것인 지를 포함하여, 차량에 탑승한 채 이동하는 경우와 경호요원들간에서 협력하는 방법들을 익히게 된다. 경호대상자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훨씬 더 많은 이동수단들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더 많은 경호기법들이 요구된다. 4일 동안 경호 차량 운전과 관련된 훈련이 실시되는 바, 경호요원들은 소위 방탄차량으로 알려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특히 악천후에 대비한 훈련이 실시되는 바, 우천시, 도로 결빙시 그리고 강설에 대비하여 4톤이 넘는 방탄 리무진을 운전 훈련이 진행된다. 실시된다 운전훈련이 이뤄진다. 여러 가지 유형의 위협기도에 대비한 훈련이 실시되는 바, 특히 차량지붕 위쪽으로 脱出 및 緊急下車할 수 있는 훈련도 포함되어 있다.<sup>138)</sup>



<그림 9> 독일연방범죄수사청 경호총국 경호경찰 교육과정 개요

137) Scholzen, 2004, p. 56.

138) Scholzen, 2004, p. 58.

경호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에는 이들간에 걸쳐 실시되는 응급 조치 훈련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는 과거 연방범죄수사청(BKA)에서 경험한 사건 사례들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대처하는 훈련이 실시된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경호경찰관들이 어떤 부서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전문적인 교육을 추가로 받게 된다.<sup>139)</sup> 이러한 연방수사청의 훈련과정이 부분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더 많은 내용들이 연방경찰 혹은 각주 경찰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그러한 광범위한 교육훈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sup>140)</sup>

- ▷ 경호지휘관 훈련과정,
- ▷ 건물내부 안전유지 및 소포/우편물통제(폭발물 및 발화물질),
- ▷ 차량이동시 작전, 작전상의 경호기법들, 위험상황의 조사, 비밀작전을 통한 정보수집, 협박편지 분석(Analyse von Drohschreiben),<sup>141)</sup>
- ▷ 경호부서의 예산 및 재정, 관련물자의 조달 및 공급
- ▷ 인사관리
- ▷ 정보통신 기획 및 행정
- ▷ 물적 시설보호를 위한 지문
- ▷ 대사관 등 외교청사에 대한 안전유지
- ▷ 경찰작전 지휘 및 상황실운동 등이다.<sup>142)</sup>

이러한 직무교육과 훈련과정을 한 번 거친 경호부서 단위조직 지휘관들뿐만 아니라 개별 경호경찰관들 조차도 기히 훈련받은 내용들을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경호부서의 각급 지휘요원들마다 한 달에 이들 정도씩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교육은 단체적으로 실시된다.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바탕을 두고, 여러 영역에 걸쳐서 연습과 훈련이 이루어진다.<sup>143)</sup>

- ▷ 사격연습: 기본훈련과 특별훈련(신체상의 능력에 따라). 어두운 곳에서 사격훈련을

139) Scholzen, 2004, p. 58.

140) Scholzen, 2004, p. 58.

141) Scholzen, 2004, p. 58.

142) Scholzen, 2004, p. 59.

143) Scholzen, 2004, p. 59.

포함하여,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의 사격,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경호요원들안에서의 사격훈련이 진행된다.<sup>144)</sup>

▷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기방어훈련(호신술 연마). 기본훈련과 특별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 다른 추가적인 훈련에는 다음 사항들이 있다:

일반적인 신체단련, 응급조치, 폭발물 및 발화물질의 통제, 경호차량운전연습, 심리학, 근무 및 법적인 문서처리, 경찰직무관련 규정의 이해 등이다.<sup>145)</sup>

## 5) 경호방법과 근무방식

### (1) 경호수준과 경호대상

헌법기관의 구성원들에 대한 경호는 3단계로 분류하여 국내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경비를 제공한다. 위험국가로 분류된 해외주재 대사와 위험국을 방문하는 연방의원에 대해서도 근접경호를 제공하는 등 한국에 비하여 경호대상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sup>146)</sup>

경호수준은 Level 1~3으로 분류하며, 2006년 6월 현재, 35명의 요인들에 대하여 경호를 실시하고 있다.

▷ Level 1: 연방대통령 및 연방수상(Bundeskanzlerin)

▷ Level 2: 연방의회 議長 등(24시간 경호제공)

▷ Level 3: 연방행정부 長官들

종종 독일의 유력한 정치가(Politiker)가 外國을 방문하는 경우, 경호국 요원들은 1주일 정도 미리 해당국에 도착하여, 경호관련 위험요소들을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적절한 경호프로그램을 결정하게 된다. 경호와 관련된 통신수단은 경호2처에 속하는 것인 바, 위험상황 분석에 관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동부서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혹은 연

144) Scholzen, 2004, p. 64.

145) Scholzen, 2004, p. 64.

146) 대통령 경호실의 내부자료임. 同자료는 경호실관계자가 2006년 6월경 독일연방경호총국을 견학한 후 정리한 내용임.

방정보부(BND)와 같은 다른 같은 기관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다.<sup>147)</sup>

이를 위해 연방경호총국 조직내에는 한국 警護室의 정보팀과 같은 특수경호활동과(SG 24)를 두고, 연방정보국(BND), 연방헌법보호청, 연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경호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호국(SG)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진술을 할 證人을 보호하며, 그들의 가족이나 그들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연방수사청과 州 범죄수사청간에 증인보호 직무가 경합될 때에는 州범죄수사청(LKA) 경찰관이 담당한다.

## (2) 경호 危害요인과 경호방법

경호직무 수행과 관련한 위험단계의 수준은 경찰직무규정 제129조(PDV 129)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 ▶ 위험 제1단계(Gefahrdungstufe 1)<sup>148)</sup>

어떤 危害가 포함된 공격이 예측되는, 그래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단계이다.<sup>149)</sup>

1995년의 경우, 16명의 경호대상자들이 이러한 범주에서 신변경호가 이뤄졌다.

이러한 그룹에 속하는 경호대상자들의 경우, 국내외에서 상시적으로 경호국 소속요원들이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호대상자들이 공개된 행사에 참석할 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州경찰과 지역경찰들은 안전유지를 위하여 사전에 대비하였다. 부분적으로 선발경호팀들이 며칠정도 미리 도착하여 위험예상 상황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경호상 안전문제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을 검측하였다(ueberprueft).

이러한 경호상황에 배치된 요원들은 가능한 대피로(Fluchtwege혹은 피난로)를 확정하고, 특별히 위험한 요소나 상황이 내재된 장소(gefahren- traechtigen stellen)에 대하여 사진 및 비디오촬영을 실시한다.<sup>150)</sup>

지난 2004년 4월경 독일베를린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장관인 Colin Powell의 경우,

147) [http://inhalt.oevs.monster.de/2126\\_de\\_p1.asp](http://inhalt.oevs.monster.de/2126_de_p1.asp)(2007년 3월 27일 검색)

148) Scholzen, 2004, p. 45. Die Person ist erheblich gefaehrdet, mit einem Anschlag ist zu rechnen.

149) [http://inhalt.oevs.monster.de/2126\\_de\\_p1.asp](http://inhalt.oevs.monster.de/2126_de_p1.asp)(2007년 3월 27일 검색)

150) Scholzen, 2004, p. 46.

위험 제1단계 수준으로 신변경호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sup>151)</sup>

▶ 위험 제2단계(Gefahrdungstufe 2)

위험한 공격상황을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상태로서, 경호대상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1995년의 경우, 연방범죄수사청 경호국에서는 23명의 경호대상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범주의 경호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호대상자들의 경우, 상시적인 위험상황이 존재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 혹은 특별한 시간에 (bestimmte Zeiten beschuetzt)신변경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sup>152)</sup>

경호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에, 경호대상자가 집으로 귀환하는 노상과 특별히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공식적인 행사시에 경호국 요원들이 수시로 신변경호를 실시한다.

▶ 위험 제3단계(Gefahrdungstufe 3)

경호대상자에게 위해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신변경호 직무 범위에 속하는 대상자들을 위하여, 1995년의 경우, 41명이 대상자로서 경호를 받았다. 특별히 위해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변경호가 실시되었다.<sup>153)</sup>

## 6) 경호직무를 지원하는 州경찰의 경호담당부서

경호관련 직무는 연방경찰이 전종 수행하지만, 경호상황이 각주 경찰관할에서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각주의 범죄수사청(LKA)경호직무 관련부서에서 전문적으로 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본항에서는 라인란트-팔츠州 범죄수사청의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151) <http://www.tagesspiegel.de/berlin/archiv/28.04.2004/1093883.asp>(2007년 3월 27일 검색)

152) Scholzen, 2004, p. 46.

153) Scholzen, 2004, p. 46.



<사진 5> 라인란트-팔츠 州범죄수사청(LKA) 廳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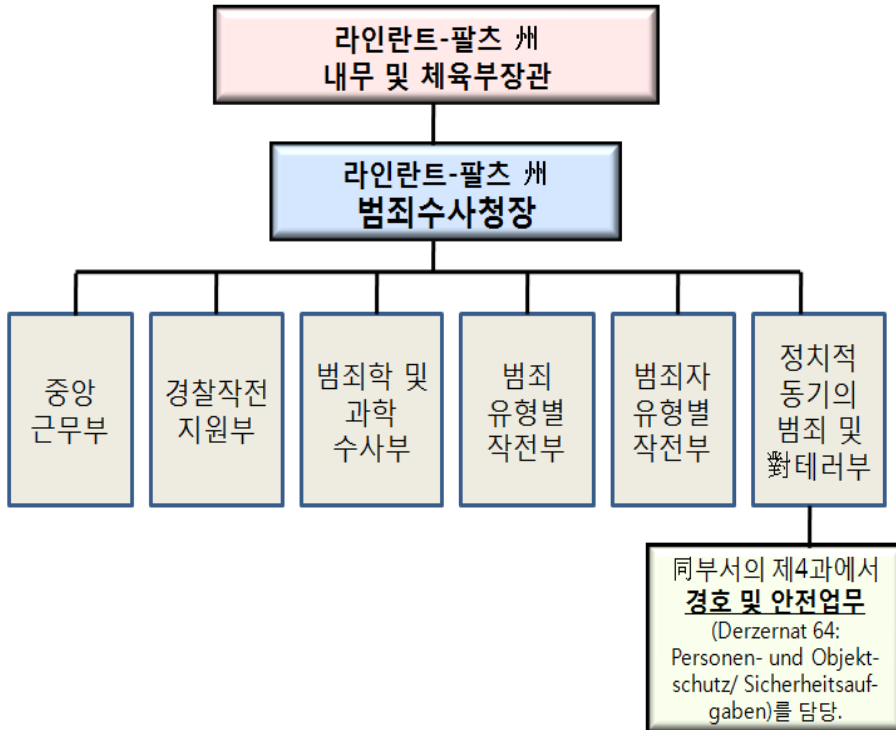
Rheinland-Pfalz 州 범죄수사청(Landeskriminalamt:LKA)의 경우, 州내무 및 체육부 직속기관(unmittelbar nachgeordnet)이다. 현대적인 정보센터로서 국내외로부터 입수된 범죄관련 경찰정보를 분석하여 관련정보를 각급 경찰관서에 배포한다. 또한 새로운 범죄대책전략, 형사정책적인 결정과 입법사항들을 위한 기본토대로서, 범죄발생통계에 대한 자료(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PKS)를 수집·정리한다. 가장 최신의 과학적 방법에 따라, 수집된 증거물을 감정 분석할 수 있는 과학수사 시설, 즉, DNA분석, 자동지문날인 및 확인시스템-AFIS-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감정 및 분석결과는 종종 범죄자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sup>154)</sup>

몇몇 심각한 범죄유형, 예를 들면 마약거래, 조직범죄, 환경 및 경제범죄 혹은 극단주의적/테러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납치, 인질범죄 그리고 협박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각 지방경찰청을 지원·조정하고,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기동성 있는 특공대(das Mobile Einsatzkommando)와 다른 전문작전팀-예를 들면, 협상팀 그리고 폭발물처리반-을 사건현장에 투입한다. 州내무 및체육부의 승인을 얻어, 예방적 범죄대책과 형사범추적 쪽으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제시할 수 있다. 위험방지 테크닉과 예방을 위하여, 경찰의 마약범죄 예방과 같은 조치에

154) <http://www.polizei.rlp.de/internet/nav/ab4/ab4509c6-071a-9001-be59-2680a525fe06.htm>(2007년 3월 30일 검색)

대하여 州전역에 걸쳐 조정한다.



<그림 10> 라인란트-팔츠州 범죄수사청 조직 및 경호부서

州범죄수사청(LKA)은 크게 6개부로 편성되어 있는 바,

- 중앙근무부(Zentralabteilung),<sup>155)</sup>
- 경찰작전지원부(Abt. 2- Einsatzunterstuetzung, 증인보호포함),
- 범죄수사학 및 과학수사부(Kriminalwissenschaft und -technik, 제3부),
- 범죄유형별 작전부(Deliktsorientierter Einsatz 혹은 Die Abteilung 4 "Delikts- orientierte Ermittlungen, 제4부),
- 범죄자유형별 작전부(Taterorientierter Einsatz, Die Abteilung 5, 제5부),

155) 주로 범죄수사청의 행정업무(재무, 법무, 인사관리)를 담당한다. 414명의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바, 정규공무원 302명, 비정규공무원 102명이 근무하고 있다. 2002년도의 경우, 인건비로 1500만마르크, 장비구입비 등으로 230만 마르크가 지출되었다고 한다.

- 정치적 동기의 범죄 및 對테러부(Die Abteilung 6, 제6부): 특히 同부서의 제3과에서 경호 및 안전업무(제4과 Derzernat 64: Personen- und Objekt- schutz/ Sicherheitsaufgaben)를 담당하고 있다.<sup>156)</sup>

### 3. 캐나다 연방경찰(RCMP)의 경호체제와 현황

#### 1) 캐나다 연방경찰 및 경호부서 조직과 일반현황

오늘날 캐나다경찰의 독특성을 보이게 된 이면에는 광활한 국토의 크기도 한 몫 하였다. 전체 면적은 9,984,670km<sup>2</sup>(남한면적의 100배)이며, 13개 州(10개의 州와 3개의 準州)에 2005년 7월 현재, 인구는 32,270,500명이다.<sup>157)</sup> 전체 인구의 80% 정도가 미국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관할인구의 크기인 경찰밀도는 약 1: 538이다.<sup>158)</sup> 캐나다 경찰의 관할권과 구조는 연방정부(federal), 州정부(Provincial 혹은 準州) 그리고 지방자치체(Municipal) 사이에서 분화·다양해

156) <http://www.polizei.rlp.de/internet/nav/ab4/binarywriterservlet?imgUid=e031bf5e-99fe-0014-4b94-615af5711f80&uBasVariant=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2007년 3월 30일 검색)

157) <http://www40.statcan.ca/cgi-bin/getcans/sorth.cgi?lan=eng&dtype=fina&filename=demo02.htm&sortact=1&sortf=6> (2007년 3월 30일 검색)

158) <http://www.statcan.ca/english/Pgdb/legal15.htm>: 2002년 현재 정규경찰관 수는 58,414명이며, 일반직원은 20,760명이었다. 이중 연방경찰관은 15,343명, 州경찰(Ontario와 Quebec 州) 및 자치체 경찰은 43,071명이었다. 따라서 연방경찰 對 州·自治경찰의 비율은 1:3정도이다. in: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Police Resources in Canada, 2002, p. 21; [http://www.rcmp-grc.gc.ca/about/organi\\_e.htm](http://www.rcmp-grc.gc.ca/about/organi_e.htm) (2007년 3월 30일 검색) 한편 2007년 1월1일 현재 연방경찰(RCMP)의 규모는 정규경찰관이 약 17,000여명이다. 일반직(2,978명, Civilian Member), 기능직원(4,626명)등이 각급 연방경찰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The on-strength establishment of the Force as of January 1, 2007 ACTUAL STRENGTH Commissioner 1(청장), Deputy Commissioners 8(차장, 치안감급), Assistant Commissioners 25(차장보, 경무관급), Chief Superintendents 58(총경급), Superintendents 159(경정급), Inspectors 373 (경감급), Corps Sergeant Major 1, Sergeant Major 6, Staff Sergeant Major 10, Staff Sergeants 788(경위급), Sergeants 1,716(경사급), Corporals 3,100(경장급), Constables 10,666(순경급), Special Constables 63, Civilian Members 2,978, Public Servants 4,626 Total 24,578

져 있다.<sup>159)</sup>

【RCMP Act】가 부여한 권한 하에서 캐나다 연방경찰(왕립캐나다기마경찰,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이 조직되었다.<sup>160)</sup> RCMP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는 캐나다 연방경찰이다.<sup>161)</sup> 同RCMP는 연방경찰이면서(National), 州경찰이면서 지역경찰 조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어느 나라의 경찰제도보다도 특이하다.

연방경찰(RCMP)은 「公安 및 非常企劃部長官(the 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Canada)」<sup>162)</sup>소속 연방경찰청장(Commissioner)<sup>163)</sup>의 지휘를 받는다. 【RCMP Act】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과 책임은 경찰청장에게 속하는 바, 그를 보좌하는 4명의 본부 次長(Deputy Commissioner)<sup>164)</sup>과 4개 연방경찰 권역을 맡고 있는 次長들이 있다.<sup>165)</sup>

연방공안및비상기획부장관 소속하에 연방정보원, 연방교정청, 연방경찰청, 연방국경관리청, 연방가석방심사위원회 등이 설치되어있다. 연방공안부 및 연방경찰청 조직도는 다

159) Seagrave, op. cit., p. 31.

160) [http://www.rcmp-grc.gc.ca/about/organi\\_e.htm](http://www.rcmp-grc.gc.ca/about/organi_e.htm)(2007년 3월 30일 검색)

161) <http://www.rcmp-grc.gc.ca/recruiting/postings-e.htm> : 연방경찰 차원의 책무는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Act이 부여한 권한으로 정해졌다. 연방경찰은 모든 州와 準州에서 마약범죄통제법, 인디언法(the Indian Act), 세금 및 물품세, 이민 및 여권법,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연방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캐나다法을 집행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평화·질서 그리고 안전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범죄예방 및 연방법위반에 대한 조사, 계약을 맺은 州와 準州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범죄예방, 수사 그리고 법령과 질서의 유지, 요인에 대한 경호 그리고 다른 연방법집행기관에 수사지원 등이다. Ottawa에 있는 연방의회 청사와 같은 연방재산도 보호한다. 연방경찰은 10개 州와 3개의 準州에 관할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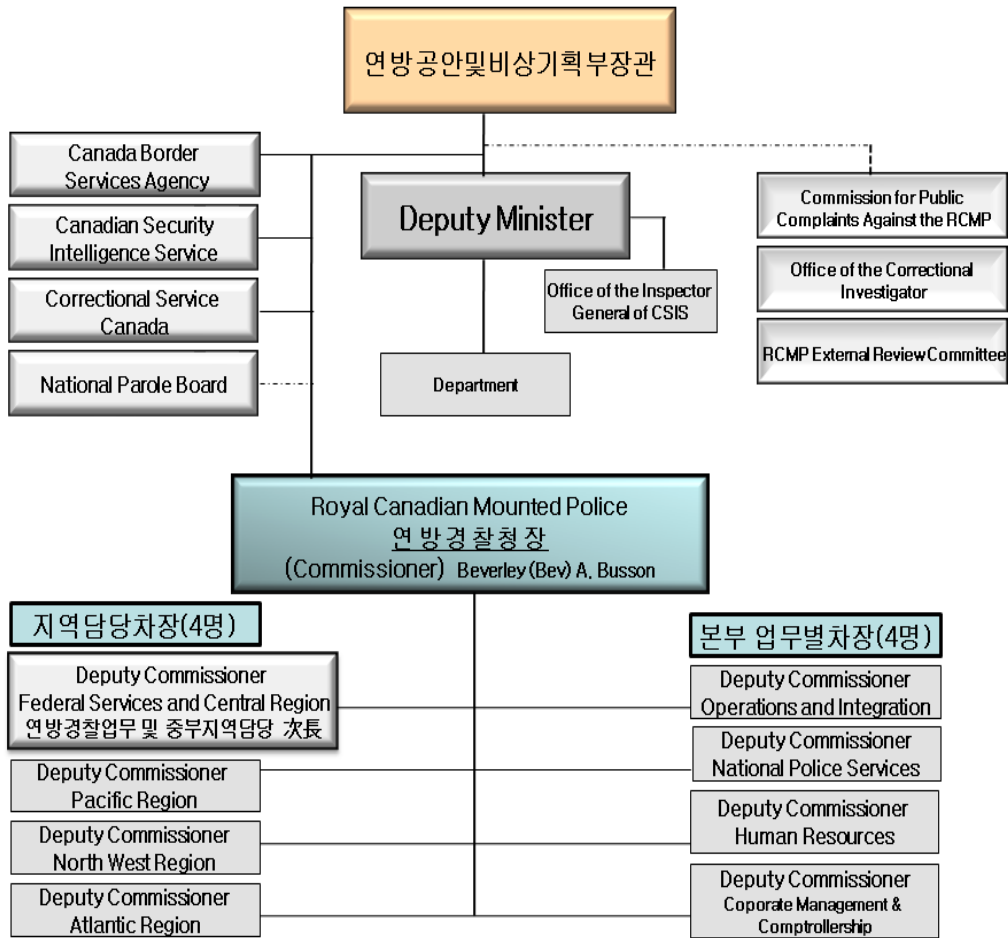
162) 2007년 3월 현재, 장관은 Stockwell DAY이다. 2006년 2월 임명되었다. 전임 장관은 2003년 12월-2006년 2월까지 재직한 바 있다.

163) [http://www.rcmp-grc.gc.ca/exec\\_bios/busson\\_e.htm](http://www.rcmp-grc.gc.ca/exec_bios/busson_e.htm)(2007년 3월 30일 검색) 2007년 3월 현재 연방경찰청장은 Beverley (Bev) A. Busson(女)이다. 동인은 1974년 연방경찰에 입문하였다. 2001년부터 태평양지역담당 연방경찰청 次長으로 재직하였으며, 2006년 12월 청장으로 임명되었다. 경찰관으로 재직 중에 범죄학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바 있다. 필자는 同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캐나다에서 동인을 접촉한 바 있다.

164) Assistant Commissioner National Police Service, Deputy Commissioner Corporate Management and Comptrollership, Deputy Commissioner Strategic Direction, Deputy Commissioner Operations등이다.

165) Deputy Commissioner Central Region(온타리오주, 퀘벡주 등 관할), Deputy Commissioner Atlantic Region(동부 대서양지역), Deputy Commissioner North West Region(북서부 및 태평양연안).

음과 같다.<sup>166)</sup>



<그림 11> 캐나다 연방공안부 및 연방경찰청 조직도

그리고 10개주와 3개 준주에 지역본부(Division)가 설치되어 있다. RCMP는 캐나다를 크게 4분하고 있는 바,

- 대서양지역(Newfoundland와 Labrador, Edward Island, Nova Scotia, New Brunswick)
- 중부지역(Quebec, Ontario)

166) <http://www.publicsafety.gc.ca/abt/www/index-en.asp>(2007년 3월 30일 검색) 同자료와 연방경찰청자료를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임.

- 북서부지역(Manitoba, Saskatchewan, Alberta, Nunavut, Northwest Territories)
- 태평양지역(British Columbia, Yukon Territory) 등이다.

한편 캐나다 연방경찰의 규모는 2007년 1월 현재 16,974여명에 달하고 있다.<sup>167)</sup>

## 2) 캐나다 연방경찰의 경호 조직과 경호대상자

### (1) 연방경호경비부 조직 등

연방경찰의 조직이 최근 개편되면서, 경호부서의 소속이 최근에 변경되었다. 종래에는 연방경찰본부 작전및운용차장 소속이었으나, 연방경찰지원및중부지역담당 次長(Deputy Commissioner Federal Services and Central Region)소속으로 변경되었다.<sup>168)</sup> 同 차장하에 다음과 같은 부서들이 설치되어 있다.

- ▷ 오타와 등 연방수도지역(National Capital Region)을 담당하는 "A" Division
- ▷ 온타리오주(Ontario)를 담당하는 "O" Division
- ▷ 퀘벡주(Quebec)를 담당하는 "C" Division
- ▷ 연방경찰 및 국제경찰활동담당부(Federal and International Operations)<sup>169)</sup>
- ▷ 경호경비부(Protective Policing Services)<sup>170)</sup> 등이다.

이중 캐나다연방경찰의 전형적인 경호조직은 다름 아닌 연방경호경비부라고 할 수 있다. 경호경비부의 책임자는 경무관급(Assistant Commissioner)에 해당하는 고위경찰 간부이다. 同부서에는 경호과, 검측과, 보안과, 경비과 및 항공보안과(Canadian Air

167) [http://www.rcmp-grc.gc.ca/about/organi\\_e.htm](http://www.rcmp-grc.gc.ca/about/organi_e.htm)(2007년 3월 30일 검색)

168) [http://www.rcmp-grc.gc.ca/about/organi\\_e.htm](http://www.rcmp-grc.gc.ca/about/organi_e.htm)(2007년 3월 30일 검색)

169) [http://www.rcmp-grc.gc.ca/fio/fio\\_e.htm](http://www.rcmp-grc.gc.ca/fio/fio_e.htm)(2007년 3월 30일 검색) 同부서에서는 각급 범죄 관련정보를 토대로 국경통제, 테러, 조직범죄, 마약범죄, 경제범죄 및 다른 범죄유형들에 대한 법집행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폴 등 국제경찰관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70) [http://www.rcmp-grc.gc.ca/html/pr-ops\\_e.htm](http://www.rcmp-grc.gc.ca/html/pr-ops_e.htm).

Carrier Protective Program)등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항공보안과를 흔히 경찰관들은 Air Marshal이라고 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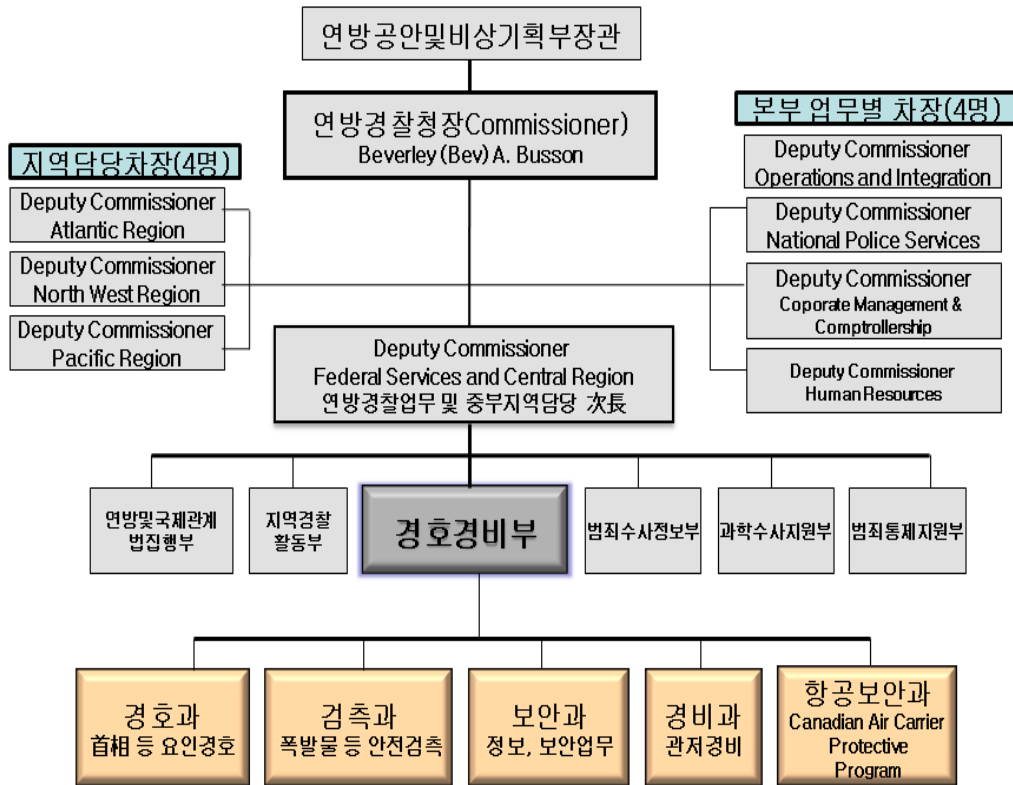
경호경비부 전체 인력은 약 700여명이며, 이중 지원 및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원들 300여명, 항공보안과 소속 요원들이 약 100여명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규경찰관으로 구성된 경호요원들은 약 300여명 정도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sup>171)</sup>

경호부서 책임자는 연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임명되며, 보통 3-5년 정도 해당부서의 책임자로 근무하는 관행을 갖고 있다. 연방경찰의 관할 지역이 매우 광범위하기, 支部개념으로 주별로 경호경찰관들을 약간씩 배치하고 있는 바, 태평양지역대("E" Division Protective Policing)에는 약 50명이 경호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sup>172)</sup> 한편 경호대상자들이 빈번하게 활동하는 동부지역(온타리오州 Toronto, Montreal 등) 및 수도 오타와지역에 경호경찰관들을 많이 배치한다. 연방수상(Prime Minister) 전담 경호요원은 82-1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경호경비부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sup>173)</sup>

171) 동내용은 필자가 연방경찰청 경호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정리한 것이다. 담당경찰관은 30년 경찰경력 중 17년을 경호경찰관으로 재직중이며, 계급은 경위-경감급 중간에 해당하는 직급이었다. 동인의 지휘하에 약 50여명의 연방경호경찰관들이 태평양 지역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172) 同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호경찰관 중 7명의 경찰관은 British Columbia 州지사(Premier)를 경호한다. 경호팀장은 경사급 여자경찰관이다. 한편, 다른 州(동부지역의 Ontario, Quebec 州)는 별도의 州경찰이 있어서, 이들이 주지사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173) 경호조직의 명칭과 관련, 일부 관계실무 부서에서는 경호처장 등으로 번역하면서,부조직을 경호국, 검측국, 보안국, 경비국 등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캐나다 연방경찰의 인력규모로 볼 때 경호부, 경호과, 검측과, 보안과 및 경비과로 칭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본다.



<그림 12> 캐나다 연방경찰 및 경찰경호조직

(2) 연방경찰의 경호대상자들

경찰경호부에서는 연방경찰의 국가요인 경호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실행, 행정 및 모니터링을 지휘한다.<sup>174)</sup> 연방경찰경호부에서 맡고 있는 경찰경호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 캐나다총독(Governor) 및 그의 가족과 관저
- 연방수상(Prime Minister) 및 그의 가족과 관저
- 연방정부의 장관들과 그 관저
- 연방대법원 및 연방법원 판사들과 그들의 주거지
- 연방의회 구성원(국회의장), 上院의원, 캐나다를 공식 방문하는 국가원수, 캐나다에

174) [http://www.rcmp-grc.gc.ca/prot\\_ops/index\\_e.htm](http://www.rcmp-grc.gc.ca/prot_ops/index_e.htm)(2007년 3월 30일 검색)

체류하는 외교관과 그 주거지

- 국제적으로 요인경호가 필요한 사람들
- 경호가 필요하다고 「연방공안및비상기획부장관」이 지정한 인사들.<sup>175)</sup>

한편, 연방수상에 대한 경호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된다:

연방수상과 그 가족에 대한 신변경호를 수행하며, 관저, 그리고 해외여행 중에도 캐나다에서 제공되는 수준의 경호를 해당방문국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 외에도 캐나다 항공 보안프로그램(CACPP)이 同부서에서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선택된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기뿐만 아니라 레이건-워싱턴 국제공항까지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 전문화된 항공기 보안요원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同프로그램은 캐나다 교통부와 연계하여 연방경찰에 설치된 것이다.<sup>176)</sup>

요인경호시 군중통제, 교통관리 및 안전구역 확보 등은 지역경찰의 몫이다. 그러한 안전구역확보 임무는 대부분 연방경찰의 몫이라고 한다. 경호차량의 이동시 오토바이 및 자동차행렬은 지역경찰이 담당하고, 요인이 탑승한 차량은 연방경호경찰이 담당한다.

### 3) 연방경호경찰관 교육 및 인사관리 등

#### (1) 경호경찰관 선발 및 교육제도

경호경찰관들은 3년 이상 연방경찰관으로서 근무한 경력자 중에서 내부테스트를 통하여 선발된다고 한다. 특히 首相근접 경호요원은 10년 이상 경호근무 경력자 가운데서 선발된다. 일반경찰로 선발되면 신규임용 기본교육 6개월, 현장에 배치되어 경찰실무 6개월을 이수한다. 나중에 경호경찰관으로 선발되면, 별도의 경호실무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게 된다.<sup>177)</sup> 선발규모는 경호인력의 배치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우선적으로 개별

175) [http://www.rcmp-grc.gc.ca/prot\\_ops/index\\_e.htm](http://www.rcmp-grc.gc.ca/prot_ops/index_e.htm)(2007년 3월 30일 검색)

176) [http://www.rcmp-grc.gc.ca/prot\\_ops/index\\_e.htm](http://www.rcmp-grc.gc.ca/prot_ops/index_e.htm)(2007년 3월 30일 검색)

177) 필자가 최근 캐나다 연방경찰 경호담당자를 면담한 바에 의하면, 일반경찰관에서 경호경찰관으로

경찰관들의 지원의사를 토대(job interests)로 이뤄진다. 그러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예를 들면 경호근무에 적합한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선발과정에서 체력테스트(Fitness Test)를 포함하여, 신체검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선발될 수 있다. 캐나다 연방경찰의 신규임용시 실시하는 체력검정 시스템(Circuit)을 4분 이내에 完走해야 한다.

특히 2006년 4월부터 도입된 新체력검정기준(New Regulation)이 적용되고 있어서, 이 테스트에서 확실하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한다. 총기사용(Firearm), 물리력행사(Use of Force) 및 응급조치(First Aid), 경찰봉사용(Baton), 가스총사용(Paper spray) 등에 대한 테스트도 실시한다.

▷ 체력검정에 통과된 者에 한해서 정식 면접을 위한 인터뷰가 진행된다.

인터뷰(Interview)과정에서 성격(personality)에 대한 부분이 세밀하게 조사된다. 예를 들면, 성격이 너무 예민하고, 공격적(too aggressive)이어서는 안된다. 너무 과도하게 반응(overreactive)하거나 너무 수동적인 경우(under-reactive)도 안된다고 한다. 이러한 절차에서 통과되면 다음에는 경호실무교육훈련과정에 입교하게 된다.

교육은 주로 Ottawa에서 실시된다. 왜냐하면, 연방수도에 대부분의 요인경호대상자들이 거주하거나 활동하기 때문에, 경호직무에 대한 수요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이다. 경호 작전계획, 위협요소평가, 절차나 규정, 법적 권한, 일반적인 지식 등은 강의실 수업형태로 진행하며, 오토바이/자동차행렬이동, 현장안전구역확보, 신변경호기법, 경호대상자 피난시키는 요령, 사격 및 무기관련 훈련은 실습위주로 현장에서 실시된다.

기본교육과정은 3주간의 훈련 프로그램(Three Week Training Program)이다.

▶ 제1단계에서는

주로 자동차운전기법(driving skill), 교통관련분야(traffic), 긴급상황 대처능력(emergency), 이동간 급속정지 및 회전(turn stop), 긴급상황 탈출절차(evasion

---

선발되면 3주간의 기본교육과정(Three Weeks Training Program)을 이수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관련기관 문건에 의하면 7주 과정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후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procedure), 오토바이 제대행렬, 1인승차, 2인 1조, 3인1조, 4인1조 방식, 신체적조건 테스트들이 진행된다.

▶ 2단계에서는 주로 경호기법관련 이론분야 교육이 실시된다.

경호기본계획 수립, 경호현장에서 필요한 경호인력 및 자원산정, 행사장소 등에 대한 위험요소평가, 안전구역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 행차노선을 어떻게 결정/기획할 것인가, 지도 및 요도 활용방법, 취약한 지역/지점/구역을 어떻게 파악하여, 회피할 것인가, 현장을 어떻게 관측/검측할 것인가, 장비사용법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제3단계에서는 신변경호분야 훈련/실습이 진행된다.

광범위한 신변경호기법(Body Guard), 맨손으로 제압하는 방법, 호신술, 관중들 속에서 요인에 대한 가상공격시나리오, 유사한 마네킹을 세워놓고 공격하는 사례연습, 신변경호를 위한 실습, 모의총을 가진 者와의 시범, 경호대상자가 건물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대비한 훈련,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how to react)를 훈련 받게 된다.

한편, 補修교육은 여러 가지 Module로 편성되어 있으며, 필요한 업무에 따라서 부분적 再교육을 실시한다. 예를 들면, 요인 경호를 위한 專從 요원교육과정(Fulltime VIP training Course)도 운용하고 있다. 업무의 형태에 따라서 24시간, 48시간, 72시간짜리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 (2) 일반적인 경호경찰 인사관리 제도

보수는 일반경찰과 동일하며 별도의 경호수당이 지급된다. 경호부서근무자에 대한 특별한 인사상, 재정적인 Benefit은 없다고 한다.

3년간 의무복무 후 본인 희망에 따라 보직이동이 가능하다. 나이가 많은 경호요원이 다수라고 한다. 정년은 원칙적으로 60세이지만, 계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바, 순경-경장급(Constable)은 58세이며, 경장/경사급(Corporal, Sergeant)이상의 경찰관들은

60세이다.

태평양 지역대("E" Division)에서 근무하고 경호요원 50여 명 중 순경, 경사급(Constable, Sergeant)이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이중 7명은 卍지사 전담경호요원들이다. 경감급 이상은 현장요원이라기 보다는 단위부서의 책임자이며, 기능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전체 연방경호 경찰관(600명) 중에서 경감급(Inspector) 이상은 25명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의 경호요원들은 순경, 경사, 경위급이다. 한편, 58세 된 경사급 경호경찰관은 38년 동안 경찰재직 기간 중 27년간 경호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2008년)에 정년퇴임한다고 한다.<sup>178)</sup>

한 요원당 최대 4일간 연속 근무할 수 있으며, "4일 근무 후, 4일 휴무(fourdays on, fourdays off)"하는 시스템이다. 하루 평균 10-12시간 정도씩 근무한다. 주당 40시간 근무원칙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보통 상위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Ottawa(연방수도)로 가서 중요한 업무수행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한다.

경호부서 근무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기가 높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는 직원이 별로 없어서, 자리가 잘 비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지원자들의 대기명부(waiting list)가 작성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시기가 잘 맞아야 선발될 수 있다.

고도의 직무수행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일반정복 경찰부서보다 선호되고 있다. 지원 자격은 최소 5년 이상 경찰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보통은 7년 이상이어야 선발절차에 응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젊은 경찰관들이 많이 경호부서에 배치되고 있으며, 이전의 많은 경찰관들은 40대 후반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2006년 4월부터 도입한 강화된 체력 테스트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부서로 전출시킨다고 한다. 요즘은 경호경찰관들의 신체적/체력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한다.

자치경찰과 연방경호경찰은 함께, 상호 협력적 관계(together and cooperation)를 유지하면서 경호직무를 수행하며, 경호행사시에는 공동 지휘자(Co-Commander)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연방경찰관들과 해당 지역경찰과는 많은 유대가 쌓여 있어서 평소에 서로 잘 협조한다고 한다. 경호행사가 많은 대도시 지역경찰관서에 경호관련 직무부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밴쿠버와 같은 대도시 자치경찰에는 경호업무를

178) 태평양 지역대("E" Division) 소속의 연방경호 경찰관 사례이다.

담당하는 부서(Emergency Operational Planning in VPD)가 있어서, 경호행사시 연방경호경찰과 지역경찰간의 업무협조를 위한 상시적인 대화 및 의사소통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정 자치경찰 관할구역 내에서 경호행사가 진행될 경우, 필요한 경찰력 동원은 연방경호경찰(RCMP)의 팀장이 해당 경찰관서의 Counter Partner 경찰관에게 요청하며, 직접 동원할 수 없다고 한다.

경호행사시 현장 업무와 관련해서, 배치된 경찰관들은 계급이 아닌 기능중심(Function)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현장책임자가 巡警급 경호전문경찰일 수 있으며, 동원된 경찰관이 警査급 경찰관이라도 지시명령에 따른다고 한다.

他기관과의 협조도 중요한 바, 연방공안부 소속의 연방정보원(CISS)과도 업무협조가 잘 된다고 한다. 과거 연방정보원은 연방경찰에 소속되어 있던 기관이기도 하다.

## 4. 일본경찰의 경호체제와 현황

### 1) 일본 경찰청의 체계

#### (1) 경찰청의 임무

일본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자치경찰인 도·도·부·현 경찰로 구성된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자치경찰인 도·도·부·현 경찰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지만 警察廳의 監督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일본경찰은 警察機關으로써의 국가와 自治體에 공안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日本의 警察制度는 현단위의 경찰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47개 현단위 본부와 1230개의 警察署로 분류된다. 일본의 警察組織 중 국가경찰은 경찰청과 관구경찰국이 있으며,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있다. 관구경찰국은 경찰청의 지방기관이다.

경찰청은 國家公安委員會에 설치<sup>179)</sup>되어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행정 조직법상의

행정기관이다. 따라서 國家公安委員會는 관리기관이고 경찰청은 시행기관으로써 양자는 각각 동일한 사무를 공동으로 관장한다. 경찰청은 독립된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이며 위원회의 단순한 사무부국은 아니다.

경찰청은 국가경찰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그 사무를 담당하고 스스로의 권한으로써 도·도·부·현 경찰을 지휘 감독한다.<sup>180)</sup>

경찰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경찰에 관한 제반제도의 기획·조사에 관한 것
- ② 경찰에 관한 국가예산에 관한 것
- ③ 국가공안에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경찰운영에 관한 것
- ④ 국제수사공조에 관한 것, 국제긴급원조활동에 관한 것
- ⑤ 항공경찰에 관한 것<sup>181)</sup>
- ⑥ 경찰교육·통신·감식·통계·장비·감찰에 관한 것
- ⑦ 경찰직원의 임용·근무·활동의 기준에 관한 것
- ⑧ 전국적인 간선도로에서의 교통규제에 관한 것
- ⑨ 경찰법 제71조 이하에 규정된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의 책정 및 실시에 관한 것

## (2) 경찰청의 조직

### ① 경찰청장 관방

한국경찰의 총무국(경무국)에 해당되는 업무 즉, 비밀관리, 공문서 접수, 발송, 보존, 소관행정에 관한 기획·조사·법령안 심사, 공보, 예산·결산 및 회계, 경찰장비 등에 관한 업무 담당 부서이다.<sup>182)</sup>

179) 경찰법 제1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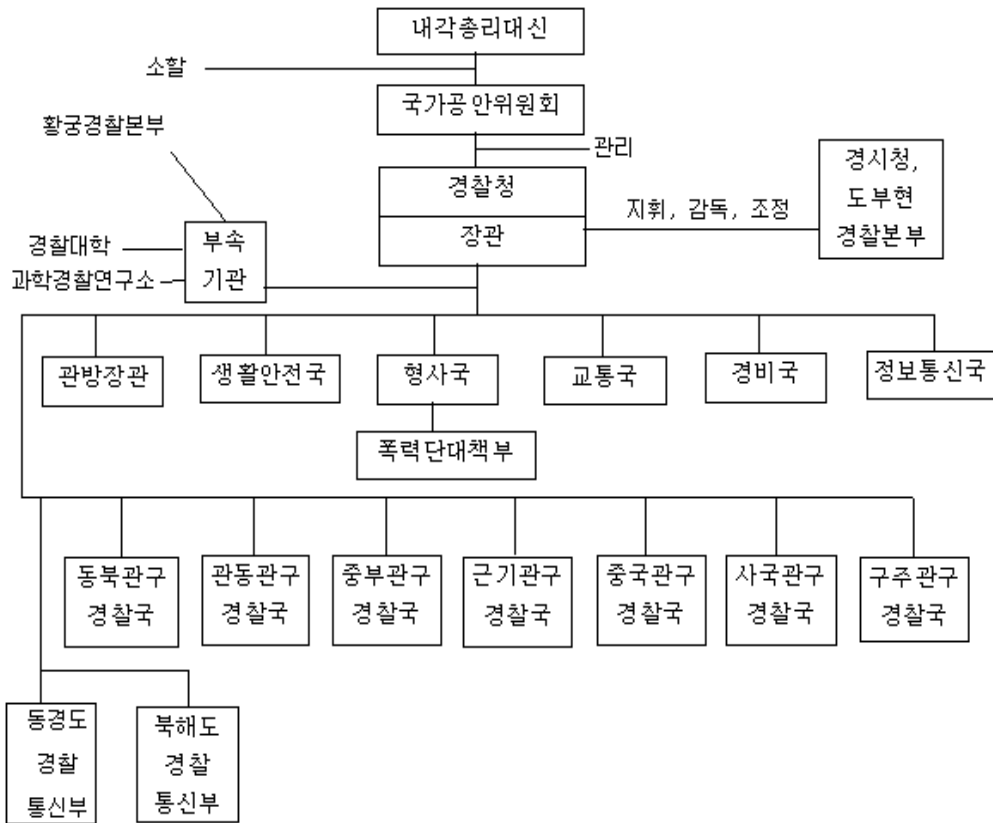
180) 치안연구소 제도개선기획단, 『기초자료편(일본경찰 연구자료집 III-1)』, p. 62.

181) 항공경찰본부는 전형적인 경찰경호기관이다. 필자는 본 연구를 위해서 2006년 10월경에 동기관을 방문, 관계자를 면담한 바 있다.

182) <http://www.npa.go.jp/english/kokusai/pdf/04.pdf>(2007년 3월 30일 검색)

② 생활안전국

한국경찰의 방범국 업무에 해당되는 업무 즉, 犯罪, 사고, 기타 사안과 관련 있는 시민 생활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사항, 지역경찰 기타 巡察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그림 13> 일본경찰청 조직

③ 형사국

형사경찰, 범죄감식, 범죄통계, 폭력단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 ④ 경비국

한국경찰의 경비, 보안 및 외사, 방첩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이다. 경비경찰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긴급사태 계획과 그 실시에 관한 사항 담당, 좌경폭력주의적 파괴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며 경비공안경찰이라고 불린다.

## ⑤ 교통국

교통경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 ⑥ 정보통신국

경찰통신과 정보관리, 범죄통계를 제외한 경찰통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경찰청의 경비·공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비국(Security Bureau)으로서 경비국에는 공안과(공안1과, 공안2과, 공안3과),<sup>183)</sup> 경비과, 외사1과, 외사2과가 있다.<sup>184)</sup> 이 중 경호업무부서는 공안2과(경호과장)이다. 경호업무는 일반적으로 경찰청의 지휘·감독하에 도도부현 경찰이 담당하지만, 總理에 대한 경호는 동경 경시청 경비부(Security Bureau)에서 담당하고 있다. 총리의 경우 지방출장시나 移動時에 경찰관 5명이 근접경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행사시에는 당해 도도부현 경비부 소속 경호담당 경찰관과 합동으로 경호를 실시한다.

183) 2006년도판 경찰청 소개책자(POLICE OF JAPAN 2006, p. 5)에서는 경비국(Security Bureau) 산하에 경비기획과, 공안과, 경비과, 외사과, 국제테러대책과 등 5개과로 소개하고 있다.

184) 공안 제1·3과는 경호정보 수집·분석·평가를 담당한다. 공안 제2과는 수상 및 요인경호에 대한 지휘·조정·감독·연락·협조업무를 맡고 있다. 안전대책 작용, 극좌파·폭력단 동향감시, 국민경호의 업무협조는 외사 1·2과에서 실시하고, 일반외사작용은 조총련계 동향을 파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同旨 이해원, "한국경찰경호시스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47면.

## 2) 도도부현 경찰조직 체계

### (1) 도도부현 경찰 임무

도·도·부·현 警察은 당해 구역 내에서 警察行政을 수행하며 국고에서 지출되는 지방재정법상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필요경비는 당해 도·도·부·현이 부담하는 자치제 경찰이다. 도·도·부·현 경찰은 당해 도·도·부·현 구역에서 警察法 제2조의 경찰책무를 맡는다.<sup>185)</sup>

도·도·부·현 警察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sup>186)</sup> 警察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임해서 犯罪의 예방, 진압 및 수사, 피의자 체포,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담당하는 것을 책무로 하는데, 그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편부당 또는 개인의 권리 및 자유의 간섭에 이르는 등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 (2) 지방경찰조직-동경도 경시청조직

東京都 경시청은 해당 공안위원회의 관리 하에 실시기관으로 도(都)경찰의 사무를 관리하고 위원회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서무업무를 처리하는 동경도경찰의 본부이다. 警視廳長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동경도 공안위원회의 동의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경시청장은 도 공안위원회의 관리에 따르고 경시청 사무를 총괄하며 警察官을 지휘·감독한다.

도(都)경찰인 동경도의 경시총감 밑에는 총무부, 경무부, 형사부, 생활안전부, 경비부, 지역부, 공안부, 교통부, 조직범죄통제부가 있고 부설기관으로 경시청 경찰학교가 있다.<sup>187)</sup> 그 하부조직으로 警察署와 파출소 및 주재소가 있다.

## 3) 경호조직과 직무범위

### (1) 경찰청 산하 황궁경찰본부(황궁경호본부)

185) 경찰법 제36조.

186) 경찰법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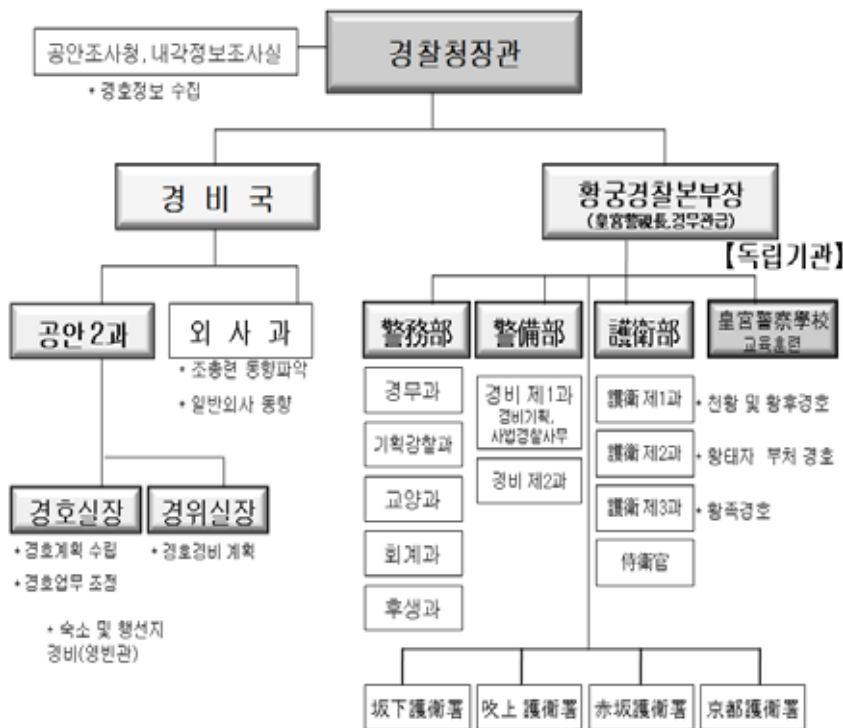
187) <http://www.npa.go.jp/english/kokusai/pdf/08.pdf>(2007년 3월 30일 검색)

1886년 宮内省 산하 「황궁경찰서」가 창설되었으며, 1947년 警視廳 「황궁경찰부」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으며, 1954년 7월 경찰청 부속기관이 되었다. 1958년 「황궁경찰본부」로 독립되었다. 황궁경찰본부(Imperial Guard Headquarters)는 경찰청의 부속기관으로서 천황·황후·황태자, 기타 황족의 호위, 주거지(御所), 각 지역 황실별저에 대한 경비를 맡고 있으며, 황궁경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황궁경찰본부는 警務部, 警備部, 護衛部, 및 皇宮警察學校로 편성되어 있으며, 4개 지역에 호위서를 각각 설치하고 있다.

- ▷ 경비부는 황궁 및 행선지 경비임무를 맡고 있고,
- ▷ 호위부는 천황, 황태자 부처, 황족에 대한 수행경호를 담당한다.

별저를 경비하기 위한 지역경찰서가 4개소 설치되어 있다. 황궁내에서는 황궁경찰이 경호를 담당하지만 지방행차시에는 황궁경찰과 함께 도도부현 경찰이 경호임무를 담당한다.



<그림 14> 일본 황궁경찰본부 조직도와 경호대상188)

2006년 10월 현재 약 910여명의 전종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경찰관은 약 50여명 정도이다. 근무방식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수행요원들의 근무방식은 비밀로 취급되어 공개를 꺼리는 동향이었다.<sup>189)</sup>

경호경찰관은 일반경찰과는 별도로 황궁경찰에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발된다.

1년에 한 번씩 선발하고 있는 바, 신체적 조건은 신장의 경우, 남자는 160cm 이상, 여자는 156cm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은

- ▶ 1차 시험(교양시험-지적능력, 일본어, 수학, 이과, 문장이해, 영어, 판단추리, 수학적 추리, 자료해석, 선택형 필기시험, 작문시험),
- ▶ 2차 시험(개별면접, 신체검사-주로 흉부, 혈압, 소변검사, 일반내과계통검사, 신체 측정-신장, 체중, 가슴둘레, 시력, 색맹여부, 체력검사-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복근력 검사 등)으로 구분된다.<sup>190)</sup>

선발된 지원자들은 황궁경찰학교에서 대졸자는 6개월, 고졸자는 10개월간에 걸쳐 기본교육을 받게 된다. 경찰학교 졸업후 4개 護衛署에 배치되어 3개월간 1차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통과정을 마치면 再입교하여, 대졸자 2개월, 고졸자 3개월 기본교양교육을 실시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다시 護衛署에 배치되어 대졸자 4개월, 고졸자는 5개월간 2차 실습교육을 받는다.

188) 同자료는 일본황궁경찰본부에서 제작한 홍보책자를 중심으로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189) 필자가 황궁경찰본부관계자와 면담시 본연구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질문하였으나 상당부분 비밀사항이라고 하면서, 답변을 꺼려하였다. 영국, 독일, 캐나다경찰과는 달리 경호업무를 비밀직 무시 하는 경향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없었다.

190) 황궁경찰본부 신규채용 홍보자료(『皇宮護衛官』) 참조.

〈표 7〉 황궁경찰본부 신입순경 기본교육과정 개요

교육과정	대졸지원자	고졸지원자
황궁경찰학교 入校 (기본교육, 단체생활)	6개월	10개월
4개 지역 護衛署 현장실습	3개월	3개월
황궁경찰학교 再入校 교양교육: 법률분야, 범죄수사, 무도, 체포술, 사격, 외국어	2개월	3개월
4개 지역 護衛署 실습	4개월	5개월
총 교육기간	15개월	21개월

보수는 일반경찰과 비슷하며, 별도의 특별수당을 지급받는다. 특히 皇族 사생활보호 및 기관기밀 유지차원에서 일반경찰과 독립된 인사관리를 한다.

## (2) 동경 경시청 경호부서

도도부현 경찰 중 警視廳은 경비부와<sup>191)</sup> 공안부로 구분되지만, 기타 도도부현 경찰은 경비부로 통합되어 있다. 경시청의 경우, 공안부는 공안 총무과, 공안1과, 공안2과, 공안3과, 공안4과, 외사1과, 외사2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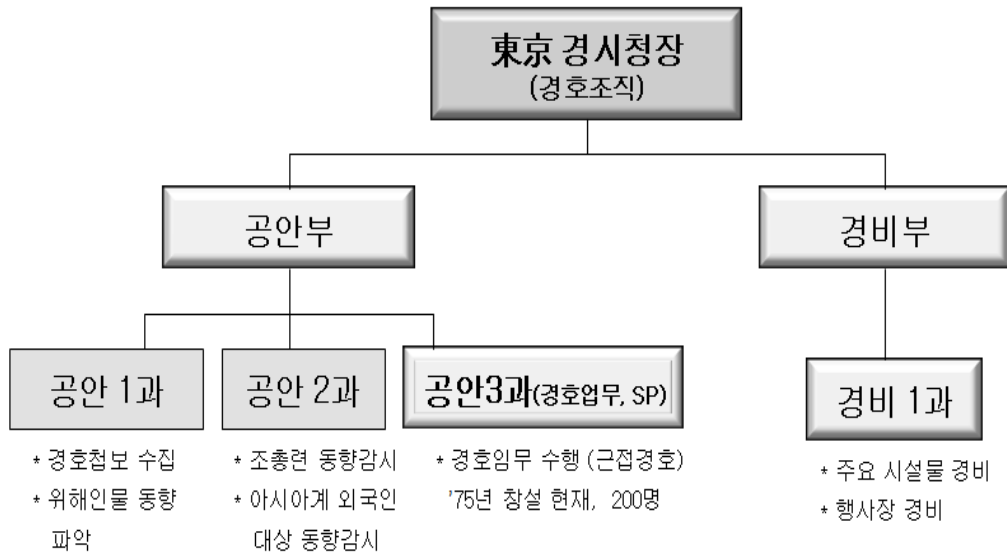
- ▷ 공안1과는 경호첩보수집, 위협인물 동향파악,
- ▷ 공안3과는 경호담당과(요인경호대, SP: Security Police)로서 경호계획 수립과 근접경호를 담당하고, 總理 및 국무대신 등 기타요인에<sup>192)</sup> 대한 경호직무를 수행한다. 일본경시청내의 별도의 SP 경찰은 여성 5명을 포함하여 약 2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 경찰요원이다.<sup>193)</sup>
- ▷ 경비부의 경비1과는 주요시설 및 행사장의 외곽경비를 담당한다.

191) 警備部에는 경비 제1과, 경비 제2과, 재해대책과, 경위과, 경호과, 제1-9기동대, 특과차량대가 설치되어 있다.

192) 국민, 중의원·참의원 양원의장, 최고재판소장, 외교사절단의 長, 내각관방장관, 정당고위간부 및 경찰청장관이 지정하는 者이다.

193) 이해원, 전계논문, 48면.

일본에서는 SP 경찰이외에도 별도의 경호부서가 있다. 同부대는 자위대소속의 경호단으로서 유사시나 SP경찰력으로서는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이 투입된다. 자위대 경호단의 역할은 일본 SP 경찰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라고 한다.<sup>194)</sup>



<그림 15> 동경 경시청 경호조직

#### 4) 경호관련 법령 개요

경찰법, 경찰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경호조직, 경호근무방식 등에 관하여 하위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경호요칙」 및 「경비실시요칙」 등을 들 수 있다. 본항에서는 경호요칙(警護要則)을 주로 소개한다.

194) 이해원, 전계논문, 49면.

## 警護要則 〈昭和 40년 7월8일 國家公安委員會 규칙 제 3 호〉

경찰법시행령(昭和 29년 정령 제151호)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해, 경호요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호에 관계되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경호의 적절하고 확실한 실시를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호 대상자)

이 규칙에 대해 경호 대상자란, 내각총리대신, 국민 그 외 그 신변에 위해가 미치는 것이 나라의 공안과 관련되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청 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경호의 본지)

제1항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본지로 한다.

제2항 경호의 실시에 있어서는, 경호 대상자의 의향을 고려하면서 제반의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식적으로 흐르는 일 없이, 효과적 한편 계획적으로, 이것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교양훈련) 경시총감, 도부현경찰본부장 및 방면본부장(이하“경찰본부장등”이라고 한다)은 평소에 소속 경찰관에 대해 그 직무 및 경험, 기능 등에 따라서 경호에 관계된 필요한 실천적 교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장 경호의 실시

**제5조** (경호정보등의 수집등) 경찰본부장등은 평상시 경호정보등(경호에 관련된 치안 정세 및 경호 대상자에게 관련된 정세 및 경호대상자의 일정 그 외 경호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이하는 같다. )을 수집 및 분석해야 한다.

경찰본부장등은 경호정보등에 의거 경호 대상자의 신변의 안전, 그 외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 및 관구경찰청국장(이하“장관등”이라고 한다.)에게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 경찰 본부장등에 통보할 것.

**제6조** (경호계획의 작성) 경찰본부장등은 경보의 실시에 있어서 미리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호계획(이하“경호계획”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이것에 의거 해당경호를 실시해야 한다.

- ① 경호의 기본방침에 관한 일
- ② 경호본부에 관한 것과 그 외 경호체계에 관한 것
- ③ 경호 조치(경호 대상자의 일정에 관계가 있는 장소의 현장 답사, 경호 대상자가 도착하기 전에 의심자, 위험물 등의 발견 그 외의 경호 대상자의 신변과 관련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한 조치, 돌발 사안의 발생 시에 있어서의 조치, 그 외 경호의 실시에 관계되어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제8조에 있어서도 같다.)에 관한 일.

④ 경호원(경호에 종사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이하도 같다)의 임무 및 배치에 관한 것

⑤ 앞의 각호로 관한 것 외에 경호의 실시에 관계된 필요한 사항

경호계획은 앞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호정보 등의 분석의 결과에 의거 경호대상자의 의향, 경호에 따르는 경비실시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제7조** (경호본부의 설치) 경찰본부장등은 경호의 실시에 있어서, 그 총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경호본부를 설치한다.

**제8조** (경호조치 등의 철저) 경찰본부장등은 경호의 실시에 있어서 미리 경호원에게 해당경호원의 임무와 관련되는 경호정보등 및 경호 조치,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 철저하게 해야한다.

**제9조** (광역에 걸친 경호의 실시 등) 도도부현경찰은 경호 대상자의 일정이 2개 이상의 도도부현 경찰의 관할구역에 걸칠 때는, 해당 경호 대상자와 관련되는 경호의 태세, 관계 도도부현 경찰의 관할구역의 경계에 있어서의 경호의 인수인계에 관련된 어려움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 정법(1954년 법률 제162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그 관할구역 외에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전항의 경우에 대해서 경호 계획에는 경호의 실시와 관련되는 관계 도도부현 경찰의 임무의 분담과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대해서 돌발 사안의 발생에 수반하는 혼란을 회피해, 그 외 경호원의 활동의 일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될 때는, 관계 경찰 본부장(관계 도도부현 경찰의 경시총감 또는 경찰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제6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관계 도도부현 경찰의 경찰관에 지휘를 실시하게 한다.

전항의 경찰관의 임무 그 외 각동항의 지휘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법제6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 외에, 경호 계획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관계 경찰 본부장등은 제1항의 경우와 관련되는 경호 계획을 작성할 때는 미리 제6조 제1항 사항을 장관 등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장관등은, 경호 계획의 작성에 관계되어 필요한 조정을 행한다. 관계 도도부현 경찰은 제1항의 경우와 관련되는 경호의 실시에 있어서는 서로 긴밀한 제휴를 도모해야 한다.

**제10조** (보고등) 경찰 본부장등은 경호에 관계되어 돌발 사안 그 외의 특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사안 및 이것에 대해 취한 조치의 개요 그 외 참고 사항을 신속하게 장관등에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 경찰 본부장등에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경찰본부장등은 경호를 실시했을 때는, 해당 경호의 상황 및 해당 경호와 관련되는 참고 사항을 장관등에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사항 중 앞의 제1항의 경우와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경찰 본부장등에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장관에게의 위임)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의 이외 경호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1994년 6월24일부터 시행한다.

## 제4장 특별경호조직 주도형 경호체제 국가의 현황

### - 미국연방의 경호기관을 중심으로 -

미국의 경우, 다양하고 수많은 연방법집행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본항에서는 경호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국토안보부 소속의 대통령경호실(Secret Service)과 국무부소속의 외교사절에 대한 경호를 전중수행하고 있는 경호보안국(Diplomatic Security)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 1. 국토안보부 소속의 경호실(Secret Service)

미국의 대통령 경호실(Secret Service, 혹은 비밀경호대)<sup>195)</sup> 한국의 청와대 경호실(PSS)창설에 모델이 된 바 있다. SS는 초창기 재무성 소속으로 출발하여, 지난 9.11테러사건 발생 이후, 새로이 발족된 국토안보부(DHS)로 2003년부터 소속이 변경된 바 있다. 이하에는 국토안보부 조직의 개요와 경호실을 중심으로 미국의 경호체제를 소개한다.

#### 1) 국토안보부(DHS)의 임무와 조직

##### (1) 국토안보부의 임무<sup>196)</sup>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1944년 당시 해리트루

195) 한국의 경호관련 부서에서는 Secret Service를 “비밀경호대”로 칭하고 있다. 일부 문헌에서는 “S.S”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백악관 경호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본항에서 필자는 “비밀경호대”라는 표현대신에 금번 연구에서부터 “대통령경호실” 혹은 “경호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SS가 더 이상 비밀조직도 아니고, 국무부소속의 경호기관과 약간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196) <http://www.whitehouse.gov/homeland/>.

먼 대통령이 국방부를 창설한 이래 최대 규모로 신설된 연방부서이다.<sup>197)</sup> 국토안보부는 22개 부서를 흡수하여 통합 운영되며 17만 명의 직원이 근무한다.<sup>198)</sup> 임무는 ① 국가 수호를 위해 통합된 국가 전력을 선도하고, ②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예방, 제지하고, 국가에 대한 위협과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대응한다. ③ 국경의 안전을 책임지고 적법한 이민자와 방문객을 환영하며 자유로운 통상교섭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한다.<sup>199)</sup>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국토안보부)의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자각목표로 위협을 확인하고 취약점을 진단하며, ② 잠재적인 충돌을 사정하고, 국토수호 협력 단체와 미국민에게 때맞춘 정보를 유포한다. ③ 예방목표로는 국토에 대한 위협을 간파하고, 저지하고 완화시킨다. ④ 보호목표로는 테러행위 및 자연재해 등의 비상사태로부터 국가의 구성원과 자유, 중요하부조직, 재산, 경제를 보호한다. ⑤ 대응목표로는 테러행위 및 자연재해 등의 비상사태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주관하고 처리 및 조립한다. ⑥ 복구목표로는 테러행위, 자연재해 등의 비상사태 이후 국가, 주, 지방, 개인

197) 미국은 국가위기 상황발생 및 대테러 등 전방위 국난대처를 위해 국토안보법을 지난 2002년 11월 25일 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Secret Service 역할 및 기능이 국토안보부로 이관되었으며, 그 운영권한도 재무성장관에서 국토안보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 참고로 국토안보부법 제 821조에 따르면, “...경호실의 기능 및 역할, 전인원의 자산, 의무 및 책무 등이 이관됨은 물론 재무성장관의 기능과 그 비밀경호대의 본질 및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국토안보부로 이관되어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자료는 청와대경호실 홈페이지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호관련 법령을 인용한 것이다.

198) <http://aspire7.hihome.com/reference/bigbrother-1.htm>: 2003년 3월에 정식으로 발족된 부서 행정부의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로, 다른 부서에서 흡수한 17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력과 함께 창설 첫 해인 당시 무려 375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된 바 있다. 국토안보부의 1차적 임무는 미국을 겨냥한 국내외의 테러공격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같은 임무수행을 위해 국토안보부는 22개 부처를 흡수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부서 내 조직들은 크게 국경안전국, 정보분석국, 인프라보호국, 생화학무기관리국, 경호실(SS)을 비롯해 기존의 연방재난 긴급관리청(FEMA) 등 총 5국(局) 1청(廳)으로 구성된다. 국경안전국은 법무부의 이민국(INS), 재무부의 관세국, 교통부의 해안경비대, 교통보안청을 흡수해 국경과 해안 경비, 미 본토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관리한다. 연방재난긴급관리청(FEMA)은 비상시 시민 대피와 구조를 전담한다. 정보분석국은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의 협조를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9·11 테러를 거울삼아 신설되는 인프라보호국은 백악관, 연방청사, 의회의사당, 원자력발전소 등과 같은 주요 사회기간시설이나 건물을 보호하는 일을 맡는다. 생화학무기 관리국은 화학, 생물, 방사능, 핵과 관련된 테러를 집중 연구하고 대처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그동안 고위급 인사들을 은밀하게 경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호실(SS)이 재무부 소속이었다가 국토안보부로 흡수되었다.

199) <http://aspire7.hihome.com/reference/bigbrother-1.htm>.

의 노력을 주관하여 기관을 재정비하고 사회를 재건한다. ⑦ 봉사목표로는 적법한 거래, 여행, 이민을 촉진하여 공공에 대해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⑧ 조직적 탁월성 목표로는 최고의 자원인 시민을 귀중히 여기며, 공감대, 혁신, 상호존중, 책임, 그리고 협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능률, 효율, 조직적 상승작용을 달성한다.

## (2) 국토안보부 조직

국토안보부는 여섯 가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직되었다. 이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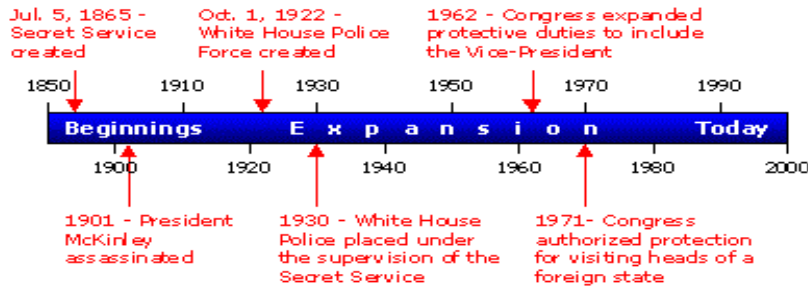
- ① 정보수집과 경고
- ② 국경 및 수송안전
- ③ 국내의 테러방지 활동
- ④ 주요시설 및 자원보호
- ⑤ 테러로 인한 대참사 억제
- ⑥ 위급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이다.<sup>200)</sup>

정보수집과 경고, 국경 및 수송안전, 국내의 테러방지 활동은 기본적으로 테러공격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주요시설 및 자원보호, 테러로 인한 대참사 억제는 테러공격에 대한 미국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위급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은 일단 테러공격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하는 것과 관련되는 업무이다.

국토안보부의 조직은 장관과 부장관, 그 밑의 장관직속 관리국, 과학기술국, 정보 분석 및 하부구조 보호국, 국경 및 수송경비국, 비상준비 및 대응국이 있으며, 장관참모 기능으로서 비서관, 법률국, 공공업무국, 주·지역 협력국, 특수지원국, 수도권지역 협력국, 업무 분담부서가 있다. 또한 장관보조기능으로서 해안경비대, 검열국 심의(상담)국, 시민권리 자유국, 시크릿 서비스(SS : 비밀경호국), 국제업무국, 대마약국이 있다.

200) <http://www.whitehouse.gov/homeland/>.





<그림 17> 미국 경호실의 역사(S.S)201)

원래는 S.S 창설 목적이 위조지폐의 수사였으나 Garfield 대통령과 Mckinley 대통령 암살사건 이후인 1901년 의회에서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S.S가 대통령 경호임무를 맡게 되었다.

1865년 7월 5일 당시 화폐위조에 대처하기 위하여 워싱턴시에서 S.S Division(비밀 경호과)를 설치하였다. 당시의 책임자는 William P. Wood 였으며, 재무성장관이었던 Hugh McCulloch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사건 연루자를 수사하는 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넓혀나갔다. 즉 우편물절도, KKK사건, 밀수사건, 토지사기사건 및 다양한 연방법 위반사건을 수사하였다.

1870년 S.S본부를 뉴욕시로 이전하였다가, 1874년 다시 워싱턴시로 이전한 바 있다.

1883년 S.S는 연방재무성 내 명백한 조직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1894년 Cleveland 대통령에 대한 비공식적인 부정기적 경호를 시작했다.

1901년 의회는 非공식적(informally)으로 William McKinley 대통령 암살사건 이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요청하였다.

1902년 S.S는 대통령경호를 위한 책무를 정식으로 부여받았으며, 2개의 경호선발대가 백악관에 배치되었다.

1906년 S.S에 제공되는 대통령경호를 위해 소요되는 재원마련 근거가 될 법령 (Sundry Civil Expenses Act for 1907)을 제정하였다.

1908년 S.S는 대통령당선자를 경호하기 시작했으며, 후일 대통령이 된 Roosevelt는

201) <http://www.treas.gov/usss/history.shtml>.

8명의 경호요원을 법무성으로 전보 발령하였다. 이들은 연방수사국(FBI)이라고 불리는 조직의 핵심인물이 되었다.<sup>202)</sup>

1913년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항구적인 경호를 승인하고, 대통령 당선자 경호에 대하여 법률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1915년 Wilson 대통령은 S.S가 미국 내의 간첩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재무성장관에게 지시했다.

1917년 의회는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항구적인 경호를 승인했으며, 대통령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연방법위반으로 규정하였다.

1922년 백악관 경찰대(White House Police Force)가 Harding 대통령의 요청으로 동년 10월 1일 창설되었다.<sup>203)</sup>

1930년 백악관 경찰대가 S.S 감독하에 놓였다.

1951년 트루먼대통령에 대한 공격시도로 인하여, 의회는 S.S로 하여금 대통령과 그 가족 그리고 대통령당선자 및 부통령(본인이 원한다면) 경호를 항구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Public Law-82-79).

1961년 의회는 前職대통령에 대해서 합리적 기간 동안(a reasonable periode of time) 경호하는 것을 승인했다.

1963년 의회는 John F. Kennedy 영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 대한 2년 동안 경호를 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1965년 의회는 前職대통령과 그들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생존기간 동안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는 16세가 될 때까지 경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sup>204)</sup>

202) 수사업무(Investigative Mission)와 관련하여, 남북전쟁 말기,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던 화폐의 1/3 정도가 거의 위조된 것이라고 한다. 1865년 7월 5일 당시 S.S는 미국경제의 적으로부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무성 소속의 한 과단위로 설치되었다. 한 10여년전이 지나면서, 화폐위조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 당시 초기 몇 년 동안에 S.S는 위조와 관련이 적은 사건들도 수사하였다. Teapot Dome 정유회사 스캔들 및 KKK사건, 연방정부 토지사기 사건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미국과 스페인전쟁 및 1차세계대전 기간에는 방첩활동까지 담당하였다. 다른 연방법집행기관들이 설치되면서, S.S의 수사기능은 연방재무성관련 범죄 쪽으로 제한되었다.

203) [http://www.secretservice.gov/whoweare\\_ud.shtml](http://www.secretservice.gov/whoweare_ud.shtml)(2007년 3월 31일 검색)

204) 1997년 S.S의 관련법 개정으로 전직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10년까지만 경호를 실시한다.

1970년 백악관경찰대가 “Executive Protective Service”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워싱턴시에 소재한 외교공관 경비책임을 포함하여 직무가 확대되었다(Public Law 91-217).

1971년 의회는 S.S가 외국의 정부대표 혹은 다른 공식적인 귀빈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경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1975년 Executive Protective Service의 임무가 워싱턴시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 및 미국전역에 소재한 외교적 임무를 띠고 있는 공관에 대한 경비책임을 맡도록 임무가 확장되었다.

1977년 11월 15일 The Executive Protective Service가 Secret Service Uniformed Division이라는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변경되었다.

1986년 재무성 소속의 경찰대(Treasury Police Force)가 S.S Uniformed Division으로 합병되었다.

1997년 의회는 “1997년 1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후 10년 동안만 S.S의 경호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1997년 1월 1일 이전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前職 대통령들은 평생동안 경호를 받게 된다 (Public Law 103-329).<sup>205)</sup> 同법률에 의거, 종신경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Clinton 대통령이 마지막이 된다. 조지 부시 대통령부터는 퇴직 후 10년까지만 경호실 요원들에 의한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대통령에 대한 【위협방지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가의 특별한 중요한 행사에서, S.S가 경호작전에 대한 계획, 조정, 실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다.

2001년 愛國法(The Patriot Act : Public Law 107-56)이 통과됨으로써, 컴퓨터와 연관된 사기사건 및 그러한 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S.S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2002년 관련법률(Public Law 107-296)이 통과됨으로써,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창설되었으며, S.S가 재무성으로부터 이관되었다. 새로운 부서는 2003년 3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205) <http://www.secretservice.gov/faq.shtml#faq9>(2007년 3월 31일 검색)

## (2) 경호대상과 임무

S.S는 법률(Statute)과 행정부명령(Executive Order)의 위임을 받아서,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바, 경호업무와<sup>206)</sup> 범죄수사업무<sup>207)</sup> 및 경비업무이다.<sup>208)</sup>

### ① 경호대상자와 신변보호업무(Protective Mission)

- 대통령, 副통령(혹은 대통령 궐위시-闕位時- 그 지위를 승계받는 순서에 따른 다른 각료들)과 그들의 가족들,
- 대통령·副통령 당선자 및 그의 직계가족,
- 前職 대통령 및 배우자(퇴직 후 10년까지),<sup>209)</sup> 전직 대통령 자녀 중 16세 미만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외국의 정부 수반, 기타 미국을 방문 중인 중요인사 및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者,
- 미국대통령(Executive Order of the President)이 경호대상자로 지정하는 者,
- 대통령 선거일 기준 120일 동안의 주요정당의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에 대통령

206) 경호임무(The Protective Mission)와 관련하여, 1901년 William McKinley 대통령이 Buffalo에 서 암살되었는데, 그는 36세에 암살된 미국의 3번째 대통령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요청과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의회는 S.S가 새로운 대통령인 Theodore Roosevelt를 경호하도록 지시했다. 1906년 의회는 S.S가 대통령경호에 대한 책임을 영구적으로 맡도록 입법화하였다. 그 때 이후 경호임무는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S.S는 부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귀중품보호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독립선언서, 미국헌법전, 구텐베르크성경,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중에는 다른 중요한 서류들을 보호하기도 했다. 또한 전쟁기간 중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들에 대한 경호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모나리자” 전시회가 개최되었을 때, 그림을 보호하는 임무도 맡았다.

207) 수사업무(Investigative Mission)와 관련하여, 남북전쟁 말기,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던 화폐의 1/3 정도가 거의 위조된 것이라고 한다. 1865년 7월 5일 당시 S.S는 미국경제의 적으로부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무성 소속의 한 과단위로 설치되었다. 한 10여년전이 지나면서, 화폐위조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 당시 초기 몇 년 동안에 S.S는 위조와 관련이 적은 사건들도 수사하였다. Teapot Dome 정유회사 스캔들 및 KKK사건, 연방정부 토지사기 사건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미국과 스페인전쟁 및 1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방첩활동까지 담당하였다. 다른 연방 법 집행기관들이 설치되면서, S.S의 수사기능은 연방재무성관련 범죄 쪽으로 제한되었다.

208) 백악관 및 워싱턴 시내에 소재한 외교공관에 대한 경비임무를 맡고 있는 요원들을 정복경찰관들이다.

209) 1997년 이전에 대통령으로 재직한 者와 그의 부인(재혼하지 않은 조건)은 종신경호, 이후에 퇴직한 전직대통령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한하여 경호를 실시한다.

후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sup>210)</sup>

- 국가적으로 특별히 경호가 필요한 행사시, 국토안보부장관 등이 지정한 경우, 이러한 경호대상자에 대한 위협요인을 수사한다. 백악관을 경비하고, 부통령의 관저 그리고 외교 공관, 워싱턴특별시에 소재한 다른 청사들을 경비한다. 지정된 국가의 특별한 경호행사에 대해서 경호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한다.<sup>211)</sup>



<사진 6> 미국 경호실요원들의 조시부시 대통령 경호모습<sup>212)</sup>

## ② 범죄수사업무(Investigative Mission)

경호실은 1865년 법집행기관으로 발족되었다. 대부분의 직무가 대통령경호와 관련된 업무이지만, 그 기본적인 업무의 출발은 위조화폐의 수사였다. 지금도 이 임무는 수행되고 있다.<sup>213)</sup> 또한 연방의 유가증권과 채권을 위조하는 등의 연방법위반의 범죄행위를 수사한다. 사기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어떤 장치에 접근하는 것, 금융기관 사기, 개인정보절도, 컴퓨터사기,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국의 재정, 금융 그리고 정보통신망 구조에 대한

210) U. S. Code 18, Sec. 3056 Powers, Authorities and Duties of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211) <http://www.secretservice.gov/protection.shtml>(2007년 3월 31일 검색)

212) <http://en.wikipedia.org/wiki/Image:SecretServiceAgent.jpg>(2007년 3월 31일 검색)

213) <http://www.secretservice.gov/investigations.shtml>(2007년 3월 31일 검색)

공격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금융범죄를 수사한다.<sup>214)</sup>

S.S 경호전문가들은 국가적 특수 경호행사를 기획하며, 사이버 범죄, 신원사기, 컴퓨터 사기, 재정범죄,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관련된 사건에 대응한다. S.S는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로 이루어진다. 국토안보부가 만들어 질 때 S.S는 국토안보부의 다른 기능 및 조직과 합병됨이 없이 조직 그대로 남아서 운영되고 있고, 同부서는 독특하고도 전문화된 부서로서 국토안보부의 핵심임무를 수행하고 있다.<sup>215)</sup>

### (3) 경호실의 조직과 인력규모

오늘날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성과 대규모 경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바, 2007년 3월 현재, 약 5,1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경호 및 수사요원(special agents)은 2,100여명,<sup>216)</sup> 정복근무자(Uniformed Division- police officer)들은 1,300여명<sup>217)</sup> 그리고 기술 및 행정요원들(technical and administrative employees)이 약 1,700여명이다.<sup>218)</sup> 특수요원들은 신변경호업무와 혹은 재정분야 사기범죄(financial fraud)를 수사한다. 정복근무자들은 일반경찰관(recognized as police officers)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들은 백악관 및 부통령관저, 대통령이 집무하는 공간 내에 위치한 건물들, 재무성청사와 그 부속 건물, 워싱턴시내에 소재한 외교공관, 미국의 다른 지역에 소재한 외교기관 등에 대한 경비책임을 맡고 있다. 평소에 워싱턴시내를 순찰한다.<sup>219)</sup>

214) 범죄수사임무와 관련하여, S.S는 미국정부와 외국정부의 통화나 유가증권 위조행위를 계속 수사하고 진압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발행한 수표, 채권, 채무관계서류 위조 및 사기사건을 수사한다. 1980년 의회는 신원관련 허위문서 및 장비와 관련된 사기사건을 포함하여 수사관할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1984년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관련 사기 및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관할권을 확대하고 컴퓨터사기와 관련된 수사권, 재무성의 전자금융시스템과 관련된 컴퓨터사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재무성 쪽으로 부여하는 등의 추가적인 입법을 추진하였다.

215) George W. Bush,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02, p. 16.

216) 이 요원들은 경호임무와 수사 임무를 순환하면서 맡을 수 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S.S의 수사 부서와 경호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보안전문가, 전기공학, 통신전문가, 심리학전문가, 컴퓨터전문가, 화기전문가, 정보분석가, 거짓말탐지기조사관, 법과학전문가들이다.

217) [http://www.secretservice.gov/whoweare\\_ud.shtml](http://www.secretservice.gov/whoweare_ud.shtml)(2007년 3월 31일 검색)

218)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Secret\\_Service](http://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Secret_Service)(2007년 3월 31일 검색)

219) [http://www.secretservice.gov/kids\\_faq.shtml](http://www.secretservice.gov/kids_faq.shtml)(2007년 3월 31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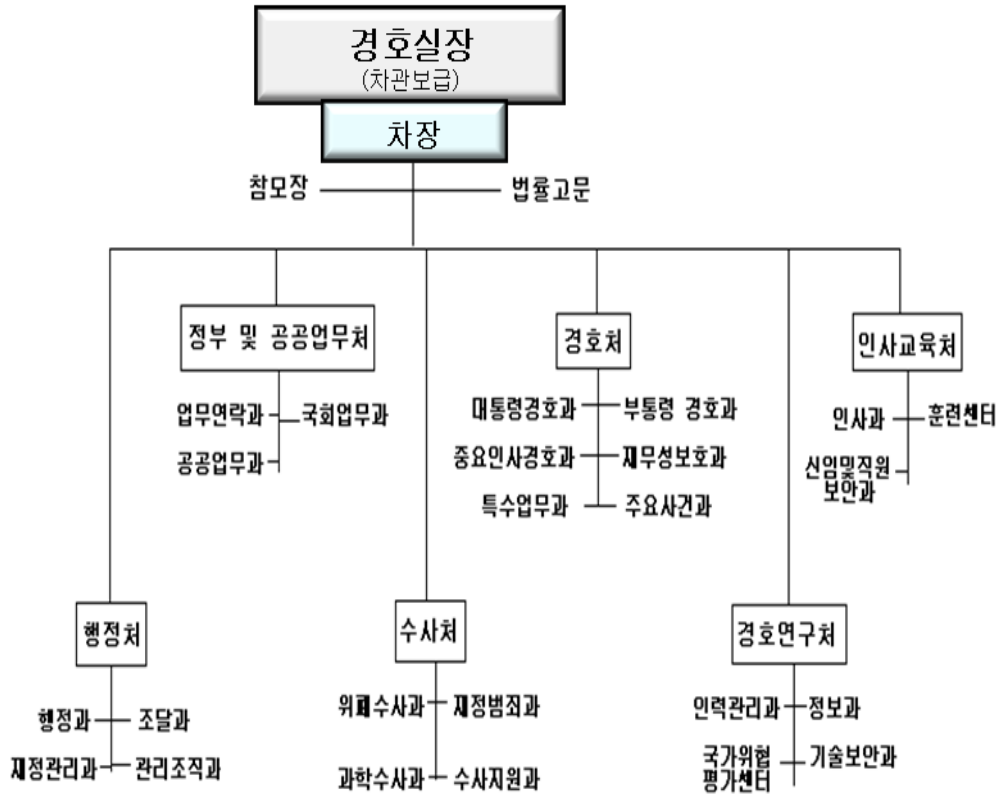


<사진 7> 워싱턴시내 백악관주변을 순찰하는 경호실 소속 정복경찰관들<sup>220)</sup>

현재 미국 내 50여개 지부(출장소, 연락사무소 등)를 설치하고 있으며, 브라질, 프랑크푸르트, 멕시코, 모스크바, 남아공, 헤이그, 불가리아, 런던, 파리, 리용, 로마, 밀라노, 방콕, 홍콩, 오타와, 몬트리얼, 밴쿠버, 마닐라, 보고타 등에 해외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sup>221)</sup>

220) [http://en.wikipedia.org/wiki/Image:US\\_Secret\\_Service\\_officers.jpg](http://en.wikipedia.org/wiki/Image:US_Secret_Service_officers.jpg)(2007년 3월 31일 검색)

221) [http://www.secretservice.gov/field\\_offices.shtml](http://www.secretservice.gov/field_offices.shtml)(2007년 3월 31일 검색)



자료 : 미국경호실 내부자료, 2004.

<그림 18> 미국 경호실(S.S) 조직도

현재의 22대 경호실장은 Mark Sullivan으로, 지난 2006년 5월 31일부터 경호실장에 임명되었다.<sup>222)</sup> 동인은 1983년 Detroit Field Office에서 경호실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경호실의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S.S는 1인의 경호실장과 차장,<sup>223)</sup> 참모장, 법률고문과 행정처, 정부 및 공공업무처, 수사처, 경호처, 경호연구처, 인사교육처로 구성되어 있다.

▷ 행정처는 행정과, 조달과, 재정관리과, 관리조직과로 구성된다. 정부 및 공공업무처

222) <http://www.secretservice.gov/director.shtml>(2007년 3월 31일 검색)

223) <http://www.secretservice.gov/depdirector.shtml>(2007년 3월 31일 검색). 2007년 3월 현재, 차장은 Mr. Brian Nagel이다. 동인은 23년간 경호실에서 근무해왔으며, 2006년 6월 11일 경호실 차장으로 임명되었다.

는 업무연락과, 국회업무과, 공공업무과로 구성된다.

- ▷ 수사처는 위폐수사과, 재정범죄과, 과학수사과, 수사지원과로 구성된다.
- ▷ 경호처는 대통령경호과, 부통령 경호과, 중요인사 경호과, 재무성 보호과, 특수업무과, 주요사건과로 구성된다.
- ▷ 경호연구처는 인력관리과, 정보과, 국가위협평가센터, 기술보안과로 구성된다.
- ▷ 인사교육처는 인사과, 신입 및 직원보안과, 훈련센터로 구성된다.

경호실은 경호행사의 주무부서로서, 경호행사시 경호과장의 책임하에 행사팀을 편성하고 경호대상자가 방문하게 될 행사지역을 답사, 지역설정, 행사성격, 경호인력, 필요장비,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며 軍, 연방 기관, 지역경찰, 지방정부 등에 필요사항을 요청하며, 필요시 합동근무를 행한다.<sup>224)</sup>

### 3) 경호실요원들에 대한 교육

#### (1) 특수요원 교육과정(Special Agents)

특수요원으로 선발된 신규 교육생들은 우선적으로 Georgia州에 소재한 Glynco에 있는 연방법집행훈련센터에 입교한다. 거기서 그들은 범죄수사관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게 되는 바, 同과정에서 11주간의 기본교육을 받게 된다.<sup>225)</sup>

同교육과정은 형법, 범죄수사기법들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연방수사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교육과정으로서, 기본적인 경찰직무에 관한 내용(basic police skills)을 배우게 된다. 또한 해당관서의 전문화된 훈련을 위하여 일반적인 기초를 제공한다.<sup>226)</sup>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에는 법률, 화기조작훈련, 자기방어훈련, 보고서작성요령 등을 익히게 된다. 첫 번째 교육과정이 종료되면, 모든 특수요원들은 워싱턴D.C로 돌아온다.<sup>227)</sup>

범죄수사관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교육생들은 경호실 부속 교육기관에

224) <http://www.treas.gov/usss/protection>.

225) [http://www.secretservice.gov/kids\\_faq.shtml](http://www.secretservice.gov/kids_faq.shtml)

226) <http://www.secretservice.gov/faq.shtml#faq23>(2007년 3월 31일 검색)

227) [http://www.secretservice.gov/kids\\_faq.shtml](http://www.secretservice.gov/kids_faq.shtml)

서 제공하는 16주간의 특수요원양성을 위한 추가적인 훈련과정에 참가하게 된다.<sup>228)</sup> 두 번째 교육과정에서의 교과 커리큘럼은 경호실 특수요원으로서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분야를 배우게 된다. 이 교육과정은 범죄수사와 경호에 대한 두 가지 임무 수행과 관련된 특수한 경호실관련 지침과 절차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화폐위조와 같은 위조범죄 수사, Credit Card詐欺 사건을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사기사건에 관련된 기계장치에 대한 접근, 다른 경제범죄, 방첩수사, 물리적 보호기법들, 보다 전문화된 차량 운전기법, 심화된 경호기법들과 응급조치에 관련된 의약품 등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보다 발전된 적용을 훈련받게 된다. 두 번째 교육커리큘럼의 핵심은 저격행위, 통제기법, 물속에서 생존하는 방법들과 신체적 적합성 향상에 관한 광범위한 훈련에 관한 것이다.<sup>229)</sup>

특수요원들이 이러한 두 가지 학교교육과정을 마쳤더라도, 자신들의 직업상 필요한 전문화된 기법들을 계속해서 교육 훈련받게 된다.<sup>230)</sup> 부분적으로, 이러한 훈련과정은 사격 실력에 대한 정규적인 재검정, 응급조치와 관련된 의약품활용 훈련으로 이뤄져있다. 경호 직무에 배치된 요원들은 경호대상자들과 관련된 "실제 세계에서(real world)"의 다양한 긴급 상황을 요원들에게 보여주는 위기상황 처리 시나리오와 문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신속한 피드백을 요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시나리오상의 훈련에도 참가한다.<sup>231)</sup>

현장에 배치된 요원들은 범죄수사영역에서 보다 심화된 기법에 대한 훈련 기회를 갖는다. 또한 그들은 다른 법집행기관에 의하여 후원을 받고 있는 훈련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경호실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은 광범위하게 다양한 관리기법과 개인발전을 위한 훈련과정에 참가할 수 있다. 윤리, 다양성, 인식능력, 리더쉽, 관리감독의 기초와 같은 분야들이 경호실 요원들에게 최근 빈번하게 제공되는 주제들이다.<sup>232)</sup>

228) <http://www.secretservice.gov/faq.shtml#faq23>(2007년 3월 31일 검색)

229) <http://www.secretservice.gov/faq.shtml#faq23>(2007년 3월 31일 검색)

230) [http://www.secretservice.gov/kids\\_faq.shtml](http://www.secretservice.gov/kids_faq.shtml)

231) <http://www.secretservice.gov/faq.shtml#faq23>(2007년 3월 31일 검색)

232) <http://www.secretservice.gov/faq.shtml#faq23>(2007년 3월 31일 검색)

## (2) 정복부서요원 교육과정

경호실 소속의 정복부서 요원(경찰관들) 양성과정에 입교한 교육생들은 연방법집행훈련센터에서 진행되는 12주간의 기본교육과정에 참가한다. 그 후 워싱턴DC교외에 소재한 경호실부속 교육기관에서 12주간의 전문화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sup>233)</sup>

同교육 과정에서는 경찰직무절차, 화기조작술, 신체적 적합성 향상, 심리학, 경찰과 지역사회관계, 형법, 응급조치, 체포/압수/수색절차에 관련된 법률, 신체적 방어기법, 외교 특권에 관한 사항, 국제조약 및 규약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된다. 현장실습 훈련과 보다 심화된 재직자 훈련프로그램들이 교실에서의 강의를 보충하게 된다.<sup>234)</sup>

## 4) 유관기관과의 협력

### ①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중앙정보국(CIA)은 국제테러조직 및 적성국 동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 및 전파하며, 외국 국민방문에 따른 경호정보를 제공한다.

### ②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연방수사국(FBI)은 국가테러예방, 수사, 조직범죄에 대한 첩보수집 및 수사, 신원조사 정보, 기타 첩보활동을 통한 경호정보를 제공한다.

### ③ 국토안보부 (DHS)

국토안보부 내의 Coast Guard(해상에서의 경비, 테러방지, 수습) Counter Narcotic(국내외 마약조직에 대한 첩보, 위해 동향 분석), 시민권 이민국(해외불순인물 잠입 예방, 테러용의자 출입국 파악), 검열국 등의 기관으로부터 경호정보를 제공받는다.

233) <http://www.secretservice.gov/faq.shtml#faq23>(2007년 3월 31일 검색)

234) <http://www.secretservice.gov/faq.shtml#faq23>(2007년 3월 31일 검색)

## 2. 국무부 소속의 경호보안국(DS)

### 1) 경호보안국의 임무와 경호대상자

#### (1) 임무의 개요

미국무부(외무부)소속의 외교사절 경호보안국(Bureau of Diplomatic Security: 약칭 DS)은<sup>235)</sup> 정보 및 방첩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기관이며, 특별한 영역의 범죄수사를 맡고 있는 연방法執行기관이기도 하다.<sup>236)</sup>

주임무는 외교사절에 대한 신변경호(protecting people), 해외에 소재한 미국 대사관 및 국내에 소재한 국무부관련 시설의 보호(protecting property) 그리고 외교행낭(diplomatic pouch) 등 외교관련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수많은 미국무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對테러관련업무(대테러관련 정보 수집 및 수사, 정보 및 위협분석)도 수행한다.<sup>237)</sup> 또한 여권 및 비자위조사건을 수사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소재한 다른 나라의 외교공관 등에 대한 보호업무도 수행한다.<sup>238)</sup> 따라서 사람(people)과 재산(property) 그리고 정보(Information)를 보호(보안유지)하는 데 직무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sup>239)</sup>

동부서에 소속된 직원들은 특수요원들(special agent), 공학분야(engineers), 외교행낭운반(diplomatic couriers)직원, 일반직 전문요원들(Civil service specialists) 그리고 계약직 직원들이 있다.<sup>240)</sup>

235) 미국 국무부(외무부) 소속의 경호기관에 대한 명칭은 외빈경호국, 요인경호국 혹은 외빈경호대, 심지어 요인경호과로 소개하는 등 매우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부서에 대한 소개가 많지 않다. 본논문에서는 Bureau of Diplomatic Security에서 경호업무와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과 그 조직의 규모를 감안하여 "경호보안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236) <http://www.state.gov/m/ds/about/faq/>(2007년 3월 31일 검색)

237) <http://www.state.gov/m/ds/>(2007년 3월 31일 검색)

238) <http://www.state.gov/m/ds/>(2007년 3월 31일 검색)

239) <http://www.state.gov/m/ds/about/overview/>(2007년 3월 31일 검색)

240) <http://www.state.gov/m/ds/about/overview/>(2007년 3월 31일 검색)

## (2) 경호직무와 대상자 범위

국무부 경호보안국의 중요 신변경호대상자는 다름 아닌 국무부장관(외무부장관)이다. 동부서는 국무부장관을 24시간 경호한다.<sup>241)</sup> 국무부장관의 신변경호를 위하여, 그리고 미국정부의 외교정책을 안전하고(safely) 보안이 유지된 채(securely)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연방, 州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법집행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sup>242)</sup>

그리고 유엔주재 미국대사,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장관급 이상의 중요인사들(cabinet-level foreign dignitaries 혹은 국가원수급에 못 미치는 중요인사들, below the head-of-state level)에 대한 신변경호를 제공한다.<sup>243)</sup> 이러한 중요인사에 대한 신변경호는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일반적으로 실행된다. 관련부서에서는 외국의 외무부장관들, 보리스엘친 前러시아대통령, 넬슨만델라 前남아공대통령 등 외국의 전직 국가원수들, 영국의 왕실가족들 그리고 유엔사무총장 및 NATO사무총장,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책임자, 중동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각국을 대표하는 인사들, 그리고 달라이 라마(Dalai Lama)같은 인사들이 포함된다.<sup>244)</sup> 이러한 인사들에 대한 신변 경호행사는 매년 약 150여건에 달한다.



<사진 8> 경호보안국(DS) 요원들의 신변경호를 받고 있는 미국무부장관

241) <http://www.state.gov/m/ds/about/overview/>(2007년 3월 31일 검색)

242) <http://www.state.gov/m/ds/protection/c8756.htm>(2007년 3월 31일 검색)

243) <http://www.state.gov/m/ds/about/overview/>(2007년 3월 31일 검색)

244) <http://www.state.gov/m/ds/protection/c8756.htm>(2007년 3월 31일 검색)

매년 가을이 되면, 국제연합(UN) 총회에 참석하려는 수많은 외국의 중요인사들이 뉴욕시를 방문하게 되는 바, 유엔총회를 대비하여, 동부서 소속요원들은 매년 1월초부터 경호업무를 시작하고, 이 업무는 9월초까지 지속된다.<sup>245)</sup> 유엔총회가 개최되는 시점을 전후해서 실제로 모든 요원들이 뉴욕시로 이동한다고 할 수 있다. 경호보안국은 특별한 행사들을 대비하여 안전과 보안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시리아와 이스라엘간에 평화회담이 개최되는 시점에(1999년), 회담장소인 Shepherdstown, WV에서 1999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외무부장관들의 신변경호를 수행하였다. 또한 2002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Salt Lake City에서 유명한 운동선수들과 이곳을 방문하는 중요인사들과 장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한 적이 있다. 또한 2004년 하계 올림픽이 개최된 그리스에서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그리스정부와 협력하기도 했다.<sup>246)</sup>

### (3) 보안 및 경비업무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원활하게 실행하고,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생활 및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경호보안국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다.<sup>247)</sup> 해외에 파견되어 미국의 외교적인 임무를 위해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효과적인 보안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고, 실행하고 있다.<sup>248)</sup> 각지역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호보안국 특수요원들은 해외에서의 안전유지 활동의 본거지로서 노력하고 있으며, 국무부 소속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외교임무들 그리고 국가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위한 최일선 경비(defense)와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sup>249)</sup> 이처럼 경호보안국은 외교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도 아주 특이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sup>250)</sup>

국무부장관의 주거지를 비롯하여, 미국 내에 소재하는 100여개의 국무부관련 시설물

245) <http://www.state.gov/m/ds/about/overview/c9010.htm>(2007년 3월 31일 검색)

246) <http://www.state.gov/m/ds/about/overview/c9010.htm>(2007년 3월 31일 검색)

247) <http://www.state.gov/m/ds/about/overview/c9004.htm>(2007년 3월 31일 검색)

248) <http://www.state.gov/m/ds/about/overview/>(2007년 3월 31일 검색)

249) <http://www.state.gov/m/ds/about/overview/c9004.htm>(2007년 3월 31일 검색)

250) <http://www.state.gov/m/ds/about/>(2007년 3월 31일 검색)

에 대한 안전과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에 소재한 외국의 대사관 및 영사관등 외교공관을 지원하는 바, 그들의 외교직무와 직원들에게 안전을 제공한다.<sup>251)</sup>

전세계 150여 나라에서 480여명의 경호보안국 특수요원들은 미국의 大使들에게 안전과 보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조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교업무와 관련된 보안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정하고 있다.<sup>252)</sup> 물리적, 기술적 공격으로부터 미국정부의 외교임무와 구성원들의 주거지에 대한 방패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고, 실행하고 있다.<sup>253)</sup>

#### (4) 특수한 영역의 수사 및 법집행

미국무부 경호보안국에서는 약 34,000여명의 직원들이<sup>254)</sup> 근무하고 있는 바, 이들 가운데 특수요원들은 여권과 비자에 대한 불법적인 발급, 사용 혹은 제작함으로써, 미국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서 법률을 집행한다.<sup>255)</sup> 따라서 여권이나 비자위조사건이나 이와 관련된 사기사건을 수사한다.<sup>256)</sup> 또한 수사상의 인적 보안을 유지하고, 보안관련

251) <http://www.state.gov/m/ds/about/overview/>(2007년 3월 31일 검색)

252) <http://www.state.gov/m/ds/career/c8853.htm>(2007년 3월 31일 검색)

253) <http://www.state.gov/m/ds/about/overview/c9004.htm>(2007년 3월 31일 검색)

254) 동부서에 소속된 직원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Special Agents(Diplomatic Security special agents are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s who serve worldwide. Overseas, our special agents advise ambassadors on all security issues and coordinate all of a mission's security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gents investigate passport and visa fraud and protect the Secretary of State and visiting foreign dignitaries.), Security Engineering Officers(Security engineering officers are highly skilled professional engineers who serve worldwide. Security engineers are responsible for the technical and informational security programs at our diplomatic and consular posts overseas. In the United States, engineers provide support for our overseas operations.), Security Technical Specialists(Security technical specialists are assigned throughout the world to develop, implement, and maintain technical security programs at U.S. diplomatic missions.), Diplomatic Couriers(Diplomatic couriers ensure the secure movement of classified U.S. Government material across international borders.), Civil Service(The Bureau of Diplomatic Security has a dedicated cadre of Civil Service employees who work in a variety of disciplines.)  
<http://www.state.gov/m/ds/career/>(2007년 3월 31일 검색)

255) <http://www.state.gov/m/ds/about/overview/>(2007년 3월 31일 검색)

256) <http://www.state.gov/m/ds/career/c8853.htm>(2007년 3월 31일 검색)

이슈를 해결한다.

미국무부 직원들, 국내외의 국무부시설물, 미국의 보호하에 있는 외국의 중요인사, 미국 내에 소재한 외국의 외교공관 등에 대해서 가해진 수 천 건의 威脅들을 조사해왔으며, 방첩수사(protective intelligence investigations)를 실시하기도 한다.<sup>257)</sup> 同부서에 소속된 특수요원들은 전세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방법집행요원들이다.<sup>258)</sup>

## 2) 경호보안국 요원들에 대한 교육

경호보안국 요원들은 종합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하여 선발된 각지원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진다. 워싱턴DC에서 6개월간의 기본교육이 시작된다. 이어서 Georgia州 Brunswick에 소재한 연방법집행훈련센터에서 기본교육과 특수훈련을 받게 된다. 훈련은 워싱턴지역에 소재한 국무부 내부 교육시설에서도 계속된다. 교육생들은 모든 요구되는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교육생들은 호신술 등 개인방어기법(personal protection techniques), 형법과 범죄수사, 배경조사기법, 응급조치요령과 화기조작법 그리고 방어운전기법(defensive driving)에 대해서 훈련을 받게 된다.

해외에서의 특수한 임무수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요원들은 보안 및 안전관리, 우편물처리, 방첩활동, 전자감시 및 보안 그리고 외국어에 대해서 훈련을 받게 된다. 다른 훈련 분야에는 전문적인 화기조작법, 폭발장치처리, 군수품수사, 화재사건수사 그리고 의료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sup>259)</sup>

257) <http://www.state.gov/m/ds/about/overview/>(2007년 3월 31일 검색)

258) <http://www.state.gov/m/ds/about/overview/>(2007년 3월 31일 검색)

259) <http://www.state.gov/m/ds/career/c8853.htm>(2007년 3월 31일 검색)

## 제5장 특별 및 일반경찰 혼재형 경호체제 국가의 현황

- 프랑스를 중심으로 -

### 1. 프랑스의 경찰체제

프랑스 경찰은 다른 선진국 경찰 중에서 한국경찰과 가장 흡사한 조직 및 활동을 하고 있는 바,<sup>260)</sup> 수상→ 내무부장관→경찰청장의 위계로 이어지는 국가경찰체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기관은 크게 도시지역의 국가경찰, 그 외 지역에 대하여 군인경찰(군인경찰은 시골지역에 대한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음)이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인 市나 邑에서는 시장의 자치권 범위 내에서 자치경찰을 창설할 수 있다.<sup>261)</sup>

프랑스의 경찰권은 국무회의에서 선출되는 경찰청장에게 있으며, 경찰청장 휘하에 총무국·교육국·정보국·방법국·형사국·보안국(영토감시국)·국경경찰국 등 7개의 局과 감찰단·기동단·국제협력단·요인경호실 등이 있다. 즉 경찰청장 소속으로 요인경호실이 설치되어 있다.<sup>262)</sup> 프랑스 인구는 59,400,000여명, 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총 145,997명이다. 이중 경찰관은 115,789명, 행정직 공무원 13,055명, 보조경찰관 16,153명이다.<sup>263)</sup>

### 2. 경찰청소속 경호부서

경호실은 1935년에 창설되었으며, 최초에는 「공식방문과(Voyage officiel)」라고 불리다가, 1994년에 경호실로 개칭되었다. 프랑스나 외국의 주요 인사를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근접경호를 책임지고 있다. 프랑스 경찰의 주요 경호대상자들은 대

260) 이종화의 8인, 『비교경찰제도론』(서울: 법문사, 2003), 53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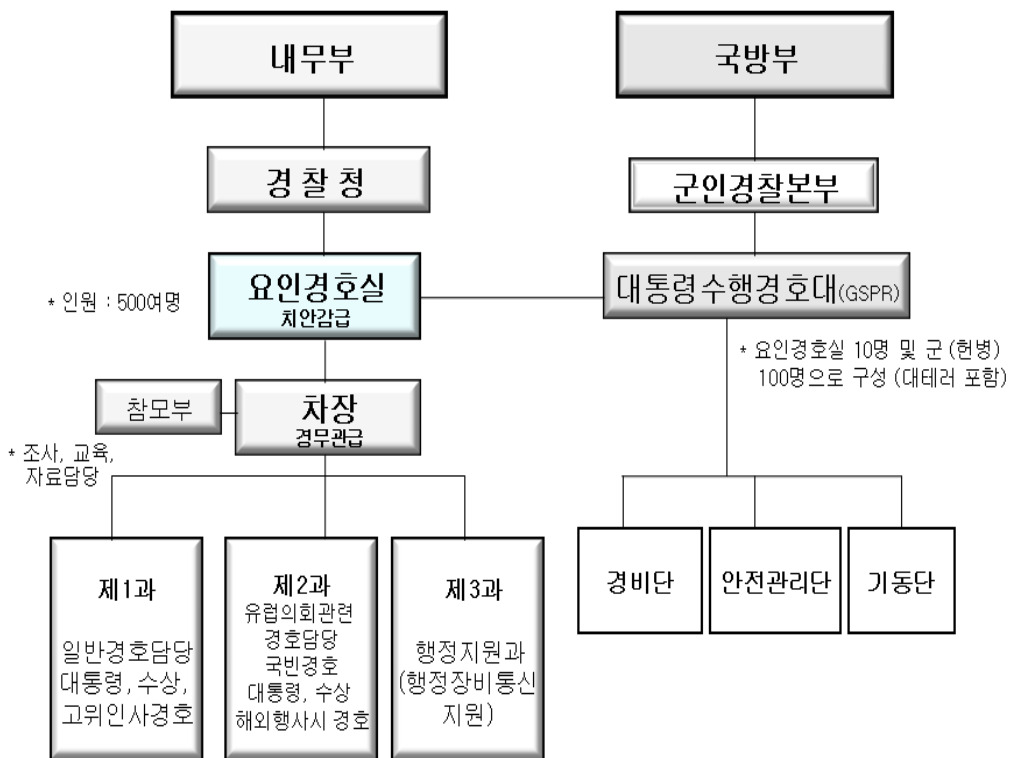
261) 박창호의 4인, 『비교수사제도론』(서울: 박영사, 2004), 66면 이하.

262) 요인경호실 명칭은 SPHP: Service de Protection des Hautes Personnalites이다.

263) 이종화의 8인, 전제서, 541면.

통령(1994년부터 군인경찰과 합동으로 대통령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sup>264)</sup> 수상,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 등이다.<sup>265)</sup> 경찰의 경호대상이 되는 외국의 주요인사는 외국의 국가원수, 정부수반과 동반가족이다. 그 외에 유럽의회 의장에 대한 신변경호업무도 수행한다.

경찰관 중에서 엄격한 심사와 선발과정을 거쳐 5년간 근무조건으로 선발되어 5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하에 경호과, 스트라스부르크(Strassburg) 유럽의회 관련 경호과, 지원과를 두고 있다.



<그림 19> 프랑스 일반경찰 및 군인경찰의 경호조직도

264) 시락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관련, 二元化(군·경찰)된 경호체계가 요인경호실(국립경찰) 주관으로 통합되었다고 한다. 즉 경찰이 軍을 통제 가능한 사회적 여건으로 경찰이 군지원 부대를 직접 통제하고 있다.

265) 이종화의 8인, 상계서, 539면.

한편, 경찰청 정보국, 국토감시국 및 해외안전총국 등으로부터 정보업무를 지원받고 있다. 요인경호실 외 국방성 소속의 군인경찰로 편성된 관저경호대(300여명)가 운영되고 있다.

### 3. 파리지방경찰청(La 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파리지방경찰청은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를 관할한다. 산하 조직에는 인사예산과, 총무과, 교통관리과, 경비과 등 4개의 행정부서와 교통과, 방범과, 형사과, 정보과, 감찰과 그리고 장비과 등 6개의 집행 부서를 두고 있다. 경비교통 부서에서는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각종 행사, 시위 등의 경비상황과 국가시설경비 책임을 맡고 있다.<sup>266)</sup>

### 4. 군인경찰(La Gendamerie Nationale)의 경호부서

선진국 가운데 경찰력의 일부를 군인이 담당하는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스페인이 준군사조직의 형태를 갖는 경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민간 경찰화 시켰다. 프랑스의 군인경찰은 군조직과 계급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신분만 국방부 소속의 군인형태를 가질 뿐, 일반경찰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취급하는 업무의 95%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2001년 현재, 군인경찰은 장교(3,806명), 부사관(76,849명), 의용군인경찰(11,025명) 및 보조군인경찰(3,50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군인경찰의 대부분인 63,500여명은 지방군인경찰대에서 근무하며, 군인경찰 중 17,025명은 기동군인경찰대에 소속되어 주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 즉 대테러부대, 산악구조대, 동굴구조대, 공화국수비대(일종의 기마의장대), 공수군경찰대, 대통령수행경호대 등의 특수부서에 속해 있다.<sup>267)</sup>

266) 이종화의 8인, 전계서, 540면.

267) 이종화의 8인, 전계서, 558면 이하.

## 제6장 결 론

### 1. 선진 각국제도의 시사점들

#### 1) 경호직무 주관부서

요인에 대한 경호직무는 전통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의 일환이다. 그래서 대륙 법계 및 영미법계 국가 대부분에서 일반 경찰직무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경호직무의 주관부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찰조직이 전담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제국가로서 약간의 예외적 상황이긴 하지만, S.S. 역시 역사적으로 볼 때, 연방 법집행기관(위폐범 죄수사)으로 출발하였으며, 상당수 정복경찰관들이 경호경비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이 라던가, 특정한 영역의 범죄수사를 병행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경찰로 평가하기에 무리가 없을 듯하다. 또한 선진 각국에서는 경호직무는 자치경찰 사무가 아니라, 국가경찰 혹은 연방경찰사무로 정착되어 있는 바, 향후 한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더라도 경호 직무는 수도경찰 혹은 국가경찰 사무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경찰경호부서의 소속

경호경찰부서의 소속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방경찰, 국가경찰, 수도경찰 등으로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전문경호기관이 대통령이나 국가원수 직속으로 설치된 경우는 거의 없다.<sup>268)</sup>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과거 경호실이 재무성, 최근에는 국토안보부 소속이라는 점을 볼 때, 한국의 대통령경호실과 같은 체제는 사례가 드물다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한국의 대통령이 직접 경호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은 선진국에서는 매

268) 최근 대통령 경호실이 여성가족부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법률 제안권이 있는 행정자치부를 통해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냈다고 하는 사실도 경호실의 특별한 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sup>269)</sup> 프랑스의 경우, 군인경찰이 존재하면서, 경호직무의 일부를 병행수행하고 있으나, 내무부 소속 경찰청의 지휘를 받도록 관행이 개선된 사례는 시사점이 있다 할 것이다.

<표 8> 각국의 경호조직체계

국가	경호대상	경호기관	경호책임자	인 원	협조기관
미국	대통령	국토안보부 경호실(S.S)	차관보급	경호·수사요원 2,100명	
	국무부 장관등	국무부 경호보안국(DS)	국장급		
한국	대통령	대통령경호실(PSS)	차관급 (장관급 任命可)	370여명	경찰, 군
	국무총리등	경찰	경정/경감급		
영국	여왕, 수상, 장관급, 왕실	수도경찰청 특별임무국	경무관급	410명	지방경찰
독일	대통령, 수상, 장관급, 헌법재판관	연방수사청 경호총국	치안감급	500여명	지방경찰
일본	황실, 수상, 의회고위층	警察廳 경비국, 警視廳 공안2과	경호과장(총경) 황실경찰본부 (경무관)	200여명	지방경찰
프랑스	대통령, 수상, 장관	경찰청 요인경호실, 軍人경찰	치안감급 중장급	400여명	경찰
캐나다	총독, 수상, 장관, 고위법관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경무관급	200여명	지방경찰

### 3) 경호부서 책임자의 위상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 각국의 경호부서 책임자는 차관보(미국), 치안감, 경무관급(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에 해당하는 경찰고위 간부들이다. 경호부서가

269)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내부승진인사를 한 것은 참여정부 남은 1년간의 임기동안 안정적인 경호업무 수행과 경호실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한 것이며, 이는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와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내부 전문 인사를 승진기용한 점은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긍정적이라 평가되지만,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와 맥을 같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일반(경호)경찰조직이 요인경호직무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 대통령경호실은 다름아닌 5.16군사쿠데타의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권력기관이 아니라,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조직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해당부서의 책임자들은 보통 3-4년씩 재직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과거에는 장관급, 현재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 책임자를 맡고 있으며,<sup>270)</sup> 여전히 권력기관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다. 필자가 경험한 선진 각국의 경호경찰은 그 책임자의 위상보다는 직무의 중요성을 존중하여 유관 정보보안기관들과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격하였다. 또한 일선경호 직무현장에서도 전문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배치된 경찰관들의 직책고하에 상관없이 전문경찰의 지휘를 받고 있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sup>271)</sup> 또한 연방경찰과 자치경찰간에 경호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동지휘관(Co-Commander) 시스템을 운영하는 가운데, 경찰력동원, 현장상황판단, 안전구역유지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는 자세는 필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 4) 경호경찰관의 직급 및 인사관리제도

미국을 제외한 각국의 경호경찰관들은 일반경찰 경력자들 가운데,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엄정한 선발과정을 거쳐서 선발, 배치되고 있다. 일단 선발되면 경호경찰관으로서의 추가적인 전문화 교육을 이수한 후 실무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한 일반경찰관들과 동일한 정년기준을 보장받고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이 가능하다. 경호부서에 근무함으로써 인사상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경호경찰에 대한 선호도가 他경찰부서도 높은 것은 공통된 현상이다.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순경-경사급 경찰관이 대부분이며, 독일의 경우는 경위-경감급 경찰관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한국의 대통령 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들의 경우, 65.2%가 사무관(5급) 이상이라고 하는 점은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270) 현재에도 직제상(대통령경호실법시행)으로는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도 있다.

271) 한국의 경우, 경찰이나 경호실 관계자들의 인식 속에는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을 지휘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자의 위상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 5) 경호직무와 경호대상자의 범위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과 이에 준하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호직무는 경호실이 전담하고, 각급 외교사절이나 국무부장관에 대한 경호는 경호보안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독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경호직무가 경찰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총리 경호와 황실경호가 경찰조직별로 분리되어 수행되고 있다.

선진 각국의 경우, 경호대상자들이 우리나라보다 그 대상범위가 훨씬 더 넓은 것이 공통적이다. 총리(수상)뿐만 아니라, 왕실의 가족, 각료급 장관들, 국제기구의 간부, 고위 법관, 의회의 고위인사(정당고위간부)들, 州지사(캐나다)까지 포함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97년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에 한하여 전직대통령에 대한 신변경호를 실시한다고 한다. 현재 한국의 경호관련 법령에 따르면, 모든 전직 대통령은 終身토록 경호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6) 경호경찰 직무전문화를 위한 교육제도

선진 각국의 경호경찰은 경찰경력자 가운데 선발하여, 별도의 경호직무관련 기본교육 과정과 재교육과정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 경찰에 비하여 전문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동향이다. 다양한 경호기법, 상황판단, 위험요소확인, 안전검측 활동, 응급처치요령, 사격훈련, 전문교육장 구비, 다양한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운용, 차량운전기법, 경호직무에 적합한 신체적 조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필자가 각국의 경호부서 요원들과 면담한 바에 의하면, 한국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자국 경찰의 전문경호기법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 7) 경호경찰조직의 일원화

미국 경우는 크게 국토안보부 경호실과 국무부 경호보안국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 각국 경호경찰은 경호대상자의 범위에 상관없이 국가경찰/연방경

찰/수도경찰 등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는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등 주무부서와 집행부서가 나뉘어져 있으며, 특히 경호대상자들과 근무영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202경비대, 전직대통령 경호대, 외빈경호대, 사저경비대, 각급 주요인사 수행경호대 등 다양하다.

## 2. 바람직한 경호경찰 발전 방안 모색

### 1) 경호직무에 대한 인식변화

경호직무가 경찰고유사무이자 본질적 직무영역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요인에 대한 신변경호는 위험방지(Gefahrenabwehr) 차원에서 전통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는 경찰학이 오래전 학문적으로 정착된 독일경찰법학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져 온 이론이다. 경찰작용의 본질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리고 위험방지라고 이해되고 있다. 요인에 대한 신체적 물리적 위험과 장애를 사전에 제거(Beseitigung)하고 예방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온전한 행사와 이를 통한 공동체의 양호한 질서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경찰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론이라 할 것이다.

공동체내의 질서를 유지·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내적 안전(innere Sicherheit)을 유지하는 기능은 인류사회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조직의 형태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기능이다.

근대경찰 출범당시 국왕을 비롯한 궁궐에 경호경비 직무를 신식경찰인 『궁내경찰서』가 맡았다. 해방이후 영미식 경찰제도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책임은 경무대경찰서가 맡게 되었다.<sup>272)</sup> 그야말로 일반경찰작용의 일환으로서, 의심의 여지없이

272) 美군정을 전후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기에 경찰책임자였던 조병옥박사(군정청 경무부장, 내무부장관), 장택상(수도경찰청장, 외무부장관) 그리고 이승만대통령 같은 분들은, 영국·미국식 교육을 받는 者로서, 경찰이 대통령경호직무를 맡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서정학 경무관과 총경이었던 金正旭씨가 경무대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다. 金正旭씨는 내무부 치안국 소속이면서 경무대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다. 참조: [http://monthly.chosun.com/html/200111/200111040006\\_1.html](http://monthly.chosun.com/html/200111/200111040006_1.html).

경찰고유사무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자유당정권의 극심한 부정 부패와 민심이반으로 급기야 대통령이 해야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권부의 핵심에서 온갖 부정을 저지른 경호책임 경찰관(경무대경찰서장)은 후일 역사적 斷罪를 받게 되었다. 이어 5.16군사쿠데타의 주축 세력들은 경찰경호체제를 해체하고, 軍人중심의 경호대를 발족시키고,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였다. 정보기관이 중심이 되어, 경호조직을 흡수하였으며, 정권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대통령 경호실이라는 별도의 독립기관을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북분단이라는 숙명적 위기상황<sup>273)</sup>과 (독재)정치권력의 유지라는 독특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要인에 대한 경호직무”가 순수한 위험방지 작용으로서 경찰직무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수립 후 최근까지 수 십 여 년간 경호직무를 수행해왔던 기관이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행세해 왔던 점은 역사적으로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sup>274)</sup>

문민정부로 들어서면서 전문 경호관 출신인사를 조직의 首長으로 임명한 바 있으며, 수년전 경찰청장 출신인사를 경호책임자<sup>275)</sup>로 임명했던 것은 참여정부의 획기적 개혁조치로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대통령경호실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경호직무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Materielle Polizei)이다. 대통령경호실법은 경찰직무관계법에 대하여 特別法이기 때문에, 경호직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sup>276)</sup>이 없는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일반경찰관계법을 근거로 위험방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위협의 개념과 위험방지 및 장해제거를 위한 경찰개입조치(경찰권발동) 상황은 일반경찰작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273)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은 국가중요인사에 대한 경호를 국가보위임무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자유당시대, 문민정부 및 참여정부시절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경호책임자가 대부분 軍고위장성 출신의 권부 핵심인사로 충원되면서, 경호직무가 충성심을 전제로 한 군사적, 안보적, 권력적 측면으로 강조된 면이 있다. 그러나 몇 차례에 걸친 위기상황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274) 경호책임자의 직책(장·차관급)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이러한 역사적 현상인식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275) 김세욱 前경호실장은 경찰계직시 작전과장, 경호과장, 기동대장, 경비부장, 경비국장 등 주로 경찰직무 가운데 경호경비와 밀접한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바 있다.

276) 경호직무 수행과정에서 총기사용과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규정과는 다른 대통령경호실법상의 내용이 일부 적용된다.

따라서 경호실 조직은 향후 직무의 본질적 특성(위험방지작용)과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여 “실질적·형식적 의미의 경찰”로 탈바꿈해야 한다.

## 2) 경호직무확대에 따른 조직과 위상강화

### (1) 경찰경호조직의 통합화 추세와 필요성

경찰사무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은 국가사무 혹은 자치사무로 대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선진 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요인(대통령, 국왕, 정부수반 등)에 대한 신변경호직무는 국가적 사무로 이해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호직무는 통합화 혹은 집권화 경향-연방경찰, 국가경찰 혹은 수도경찰청-을 띠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경찰조직의 분권화 차원에서 논의되는 경찰사무 가운데, 경호경비직무는 명실상부하게 국가사무로 인식하고, 국가경찰에서 관장해야 한다. 이는 영국의 수도경찰청(MPS), 일본의 경찰청과 동경경시청, 독일의 연방경찰(BKA), 프랑스의 국가경찰 및 군인경찰, 캐나다의 연방경찰, 미국의 경호실이 각각 요인에 대한 경호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향후 한국경찰의 분권화과정에서 각 지방경찰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호경비직무가 자칫 소홀히 다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sup>277)</sup> 따라서 경호경비와 같은 국가경찰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경찰자치 경찰의 협력과 직무응원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sup>278)</sup> 관련 직무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

277) 경무대에서 경호관을 지냈던 전직 경찰간부의 회고에 따르면, 1950년 6.25전쟁 발발시에, 남하하던 이승만대통령 일행을 경호하면서, “.....戰勢(전세)가 좋지 못해 수행원들이 서울로 가려는李大통령을 충남도지사 관저에 머물게 한 적이 있었다.李大통령은 대전에서 사흘 간 머무는 동안 수원으로 가서 미국측과 회담을 하고 오기도 했다. 대전에서 다시 진해에 있는 대통령 별장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밤이면 등화관계 때문에 칠혹 같은 어둠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다. 어두운데다 초행길이어서 수행원들이 대통령을 안전하게 모시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그 날 밤 비까지 오고 있었다. 수행원들이 그곳 지리에 밝은 충남도지사에게 안내를 부탁했지만 자유당 소속이 아니었던 그는 거절했다. 결국 충남도지사의 거절로 수행원들끼리 어둠을 헤치고 갔다. 대통령께는 도지사를 찾아보니 없더라 고 보고했다”고 한다. 참고자료: 월간조선 2001년 11월 기사【경무대 경호원 金正旭씨가 지켜본 인간 李承晩】([http://monthly.chosun.com/html/200111/200111040006\\_1.html](http://monthly.chosun.com/html/200111/200111040006_1.html)).

278) 지방분권화가 진전될수록 인사제도를 통한 통제와 개입은 거의 불가능해지며, 재정상의 원조 혹

산된 조직과 경찰력을 통합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2) 경호직무확대에 따른 조직과 위상강화

경찰경호대상자의 범위가 국가원수, 총리 등 주요인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갈등양상의 분출,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 국가경제적 측면, 테러위협 등의 상존, 위해요인의 증가, 대외관계를 비롯한 외교적 접촉의 활성화<sup>279)</sup> 등으로 신변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장관급인사,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인사, 정당대표 등 정치인 등에 대한 경호필요성을 감안, 경찰 경호직무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경호실의 보충적, 2차적 경호기관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실과 중복 혹은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경찰이 위협방지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관의 소속, 신분 그리고 직무전문성 수준도 매우 다양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호직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력을 모두 합치면 무려 2,000명에 이른다. 향후 신변보호에 대한 경찰개입 사례가 증가할 것인 바, 독립된 조직으로 혹은 기존 조직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sup>280)</sup> 따라서 경찰 조직내에 산재한 여러 경호조직들을<sup>281)</sup> 보다 더 통

은 예산 지원을 통한 직무응원의 유도는 현재 영국경찰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내무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 및 차장임면 승인 및 해임요구, 예산의 50%를 부담함으로써, 이에 따른 감사 등을 통한 지원·조정·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할 것이다. 同旨 표창원 외 8인, 『비교경찰제도론』(서울: 법문사, 2003), 336면.

279)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경찰의 외빈경호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80) 특히 현행 경호관련법령에 따르면, 前職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수요가 매 5년마다 발생한다. 2005년 2월 25일 이후 김영삼 前대통령에 대한 경호업무가 경찰소관으로 이양되었다. 또한 한국 사회가 더욱 발전할수록 중요 민간인에 대한 신변보호 문제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절차상 증인, 피해자 보호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독일연방경찰 경호국(SG)에서 증인 및 피해자 신변보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참고할 만하다.

281) 현재 경찰의 요인 경호대상자는 前·現職 대통령 및 그 가족, 그리고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외국국민, 기타 경호가 필요한 자들이다. 이와 관련된 조직은

- ▷경찰청 경비국 경호과,
- ▷서울지방경찰청 경비2과(경호계), 전직 대통령경호대
- ▷청와대에 파견된 청와대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직할대인 202경비대
-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의 경비중대들
- ▷국회경비대 소속의 국회의장 수행경호 및 공관경비팀

합, 일원화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경찰경호 부서 책임자도 직무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선진국 수준(최소 치안감급)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향후 "권력기관의 제자리 찾기"가 현실화되어, 대통령경호실이 경찰청으로 이관된다면, 대통령경호실법을 폐지하고, 가칭 【경찰경호법 혹은 요인경호법】과 같은 단일법을 제정하여, 경찰이 경호주체임을 명시하고, 경호업무의 전담기구로서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 ▷ 경호책임자는 치안감-치안정감급으로 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 ▷ 경호경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호경비 警科制를 채택하며, 사법경찰 및 예방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 소속직원들은 경사·경위급 이상 경찰관으로 보한다.<sup>282)</sup>
- ▷ 일정한 기간 복무 후 일반경찰 부서로 인사배치 가능토록 하며, 정년은 일반경찰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경호직무에 적합성(신체적 조건등)여부를 판단하여 일반경찰로 전환배치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실무부서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바, 경호직무의 전문성, 경호환경의 변화(위해요인증가), 軍에 대한 文民統制, 정보기관과의 협조, 해당공무원들의 처우 등 많은 변수들이 산적한 바, 향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3) 관련법령의 정비

현행 요인경호 직무와 관련된 법령은 일반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대통령경호실법과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이 있으며, 하위법령으로서는 대통령경호 안전대책위원회규정(대통령령), 경호규칙(경찰청 훈령), 경호편람 등 다양하다. 법령의 소관부처나 경호대상자의 상황(퇴임후 기간)에 따라 근거법령도 현저히 달라지는 상황인

▷대법원장 수행경호팀, 관저경비팀

▷헌법재판소장 숙소경비팀

▷정부종합청사경비대 소속 국무총리 수행경호 및 공관경비팀 등이다.

▷경호대상자의 거주지 관할경찰서의 경비책임도 부과되고 있다.

282) 독일연방수사청(BKA) 경호총국(SG) 소속 경찰관들은 전원 대학을 졸업한 경위급 이상의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수한 경호경찰관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바,<sup>283)</sup> 법령의 통합화가 우선 필요하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要人警護法(案)】이 법제화된다면, 경찰경호직무 영역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공고해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sup>284)</sup> 同법안에 대하여 일부 기관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는 동향이지만, 선진 각국의 경찰관계법 입법추세에 비추어 볼 때, 경찰직무집행을 구체화하는 개별작용법 형식으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sup>285)</sup>과 관련하여, 경호대상자, 경호전담기관 및 경호기간의 명확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퇴임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기간도 미국의 입법례(퇴임 후 10년)를 참고하여 어느 정도 기간상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인사관리 및 교육강화를 통한 직무전문화

경호부서에 근무할 경찰관들을 선발하고,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배치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본교육과정의 경우,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경호직무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상설화하고, 교육훈련의 콘텐츠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직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급변하는 다양한 경호직무 환경에 당해 경찰관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 경찰이 경호직무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83) 김대중 前대통령은 대통령경호실법,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전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적용된다. 김영삼·전두환·노태우前대통령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적용되며, 경찰경호를 제공받는다.

284) 현재 경찰 “경호경비”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 “要人の 개념과 범위에 대한 기준”이 法律이나 法規 命令이 아닌, 행정규칙인 경호규칙(경찰청 훈령)이다. 요인경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일반국민들에게 기본권 제한적인 경찰권 발동사례가 빈번해질 것인 바, 향후 경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요인경호법안】 등 상위 법령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최근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행사와 관련, 주변차량통제가 특혜라며 경호와 교통통제를 없애 달라는 요지의 국민감사 청구가 제기되고 있는 바, 법률에 근거한 경찰개입조치와 경찰비례의 원칙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285) 동법 제7조에 따르면, 前職대통령이 禁錮이상의 刑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대부분의 예우를 박탈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예외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한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는 각국의 경호경찰 교육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경호부서 근무자에 대한 短期인사를 최소화하고, 관련 직무에 대한 전문경과제를 실시하는 등 직무전문성이 유지,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선진 각국처럼 경호부서가 일반경찰관 사이에 선호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인사관리상의 배려가 필요하다.

한국경찰에서 근접경호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전직대통령경호대, 외빈경호대 그리고 국무총리경호대 정도이다. 22경찰경호대는 경호실주관 국빈행사에 限해 근접경호를 한다. 근접경호 뿐만 아니라 일반 경호경비 경찰관에 대한 인사관리와 교육 훈련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경호직무 수행능력이 저하되면, 경찰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대통령경호실은 경호업무에만 전종하고 있는 바, 경호에 대해서는 가히 전문가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 민간경비업체는 조직 운영면에서 신속적이고 유연하며, 자본과 경쟁체제로 인하여 발전가능성이 한 층 더 높은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경호경찰의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발→교육·훈련·再교육(질적 향상 및 양적 확대도모)→배치→인사관리(경과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 5) 선진 각국 경호경찰과 유대 강화

선진 각국의 경호경찰부서에 경찰관들을 적극 파견, 연수토록 하여 전문경호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국제교류가 증대되고, 개방화추세가 더욱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경호대상자들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국 주요인사들의 訪韓 빈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각국 경호경찰과의 접촉도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경호경찰의 직무전문성과 질적 향상이 더욱 긴요시 된다 할 것이다.

## 6)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강화

각계각층의 이해대립, 위험사회로의 이행, 정치적 갈등양상의 분출, 국제화/개방화로

인한 테러 등 위해요인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경호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경찰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직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각급 정보/보안기관들과의 상호협력이 더욱 더 필요시 된다. 권력기관간 위계적 측면에서 일방적 지휘 통제방식보다는 국익과 경찰상 목적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상호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터폴 등 외국의 각급 유관기관들과도 긴밀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시된다.

## 참 고 문 헌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서울: 경찰청, 2004.
- 경찰청, 「경찰백서 2000」, 서울: 경찰청, 2000.
- 박창호외 4인, 「비교수사제도론」, 서울: 박영사, 2004.
- 변관수, “韓國警察의 要人近接警護 發展方案에 관한 研究“,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 이종화외 8인,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법문사, 2003.
- 이해원, “한국경찰경호시스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장기봉, “21세기 國家警護機關 MODEL에 관한 研究“,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치안연구소 제도개선기획단, 「기초자료편(일본경찰 연구자료집 III-1)」.
-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1999」, 서울: 행정자치부, 1999.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Verfassungsschutzbericht 1996, 1997.
-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Police Resources in Canada, 2002.
- Franz-Ludwig Knemeyer, Polizei- und Ordnungsrecht, 6. Aufl., 1995.
- George W. Bush,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02.
- Möller · Wilhelm,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4. Aufl., 1995.
- Rheinhard Scholzen, Personenschutz: Geschichte, Ausbildung, Ausrüstung, 2. Aufl., Stuttgart: Motorbuch Verlag, 2004.
- Scholler · Schloer, Grundzüge des Polizei- und Ordnungsrecht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4. Aufl., 1993.
- Semerak, Arved F., Die Polizei, 1988, p. 26.
- Volkmar Götz,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12. Aufl., 1995.

警察廳(日本), 『POLICE OF JAPAN 2006(경찰청 소개책자)』.

皇宮警察本部(日本), 『皇宮護衛官(신규채용 홍보자료)』.

[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

<http://www.pss.go.kr/warp/kr/intro/history/>.

[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old3.html](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old3.html).

[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old5.html](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old5.html).

[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old7.html](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old7.html).

[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old8.html](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old8.html).

[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old9.html](http://www.pss.go.kr/warp/kr/data/old_security/old9.html).

[http://monthly.chosun.com/html/200111/200111040006\\_1.html](http://monthly.chosun.com/html/200111/200111040006_1.html).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103/nd2001030150.html](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103/nd2001030150.html).

<http://www.joins.com/article/2493599.html?ctg=1003>(2006년 11월 1일 검색).

<http://www.pss.go.kr/warp/kr/intro/constitution/>(2007년 3월 31일 검색).

<http://www.pss.go.kr/warp/en/info/education/>.

<http://www.met.police.uk/so/index.htm>.

<http://www.met.police.uk/so/structure.htm>(2007년 3월 27일 검색).

<http://www.met.police.uk/about/organisation.htm#rank>.

<http://www.met.police.uk/about/organisation.htm#metorg>(2007년 3월 27일 검색).

<http://www.met.police.uk/so/protection.htm>(2006년 10월 6일 검색).

[http://en.wikipedia.org/wiki/Yvonne\\_Fletcher](http://en.wikipedia.org/wiki/Yvonne_Fletcher)(2007년 3월 30일 검색).

[http://news.bbc.co.uk/onthisday/hi/dates/stories/april/17/newsid\\_2488000/2488369.stm](http://news.bbc.co.uk/onthisday/hi/dates/stories/april/17/newsid_2488000/2488369.stm)(2007년 3월 30일 검색).

<http://www.bka.de/profil/profil5.html>(2007년 3월 27일 검색).

<http://www.biologie.de/biowiki/Bundeskriminalamt#BKA-Pr.C3.A4sidenten>  
(2007년 3월 27일 검색).

[http://www.bka.de/profil/broschueren/bka\\_zahlen\\_fakten.pdf](http://www.bka.de/profil/broschueren/bka_zahlen_fakten.pdf)(2006년 4월 28일

검색).

<http://www.ks1.s.bw.schule.de/seitenwww/themen/projekte/bundeslandesverwaltung/bundeskriminalamt.htm> (2007년 3월 27일 검색).

[http://www.verfassungsschutz.de/de/publikationen/verfassungsschutzbericht/vsbericht\\_2003](http://www.verfassungsschutz.de/de/publikationen/verfassungsschutzbericht/vsbericht_2003)(2006년 4월 30일 검색).

[http://www.bundespolizei.de/cIn\\_030/nn\\_484486/DE/Home/09\\_\\_Historie/Historie\\_\\_node.html\\_\\_nnn=true](http://www.bundespolizei.de/cIn_030/nn_484486/DE/Home/09__Historie/Historie__node.html__nnn=true)(2006년 6월 20일 검색).

<http://www.bundesgrenzschutz.de/Aufgaben/SonstigeAufgaben/index.php>.

<http://www.bundesgrenzschutz.de/Aufgaben/index.php>.

<http://www.defence-net.com/magazin/122.html>(2007년 3월 27일 검색).

[http://de.wikipedia.org/wiki/Bundeskriminalamt\\_\(Deutschland\)#Abteilung\\_SG\\_E2.80.93\\_Sicherungsgruppe](http://de.wikipedia.org/wiki/Bundeskriminalamt_(Deutschland)#Abteilung_SG_E2.80.93_Sicherungsgruppe)(2007년 3월 27일 검색).

<http://www.datenschutz-berlin.de/gesetze/sonstige/bkag.htm#nr5>.

<http://www.sondereinheiten.de/forum/viewtopic.php?t=8401&view=next&sid=bc540f19a81b19b4418f93ebe57ce96>(2007년 3월 27일 검색).

[http://inhalt.oevs.monster.de/2126\\_de\\_p1.asp](http://inhalt.oevs.monster.de/2126_de_p1.asp)(2007년 3월 27일 검색).

<http://www.sondereinheiten.de/forum/viewtopic.php?t=8401&view=next&sid=bc540f19a81b19b4418f93ebe57ce96>(2007년 3월 27일 검색).

[http://inhalt.oevs.monster.de/2126\\_de\\_p1.asp](http://inhalt.oevs.monster.de/2126_de_p1.asp)(2007년 3월 27일 검색).

<http://archiv.tagesspiegel.de/archiv/15.05.2005/1813867.asp>(2007년 3월 27일 검색).

<http://www.tagesspiegel.de/berlin/archiv/28.04.2004/1093883.asp>(2007년 3월 27일 검색).

<http://www.polizei.rlp.de/internet/nav/ab4/ab4509c6-071a-9001-be59-2680a525fe06.htm>(2007년 3월 30일 검색).

<http://www.polizei.rlp.de/internet/nav/ab4/binarywriterservlet?imgUid=e031bf5e-99fe-0014-4b94-615af5711f80&uBasVariant=22222222-2222-2222-222222222222>(2007년 3월 30일 검색).

- <http://www40.statcan.ca/cgi-bin/getcans/sorth.cgi?lan=eng&dtype=fina&filename=demo02.htm&sortact=1&sortf=6>(2007년 3월 30일 검색).
- <http://www.statcan.ca/english/Pgdb/legal15.htm>: .
- [http://www.rcmp-grc.gc.ca/about/organi\\_e.htm](http://www.rcmp-grc.gc.ca/about/organi_e.htm)(2007년 3월 30일 검색).
- <http://www.rcmp-grc.gc.ca/recruiting/postings-e.htm>: .
- [http://www.rcmp-grc.gc.ca/exec\\_bios/busson\\_e.htm](http://www.rcmp-grc.gc.ca/exec_bios/busson_e.htm)(2007년 3월 30일 검색).
- <http://www.publicsafety.gc.ca/abt/wwa/index-en.asp>(2007년 3월 30일 검색).
- [http://www.rcmp-grc.gc.ca/fio/fio\\_e.htm](http://www.rcmp-grc.gc.ca/fio/fio_e.htm)(2007년 3월 30일 검색).
- [http://www.rcmp-grc.gc.ca/html/pr-ops\\_e.htm](http://www.rcmp-grc.gc.ca/html/pr-ops_e.htm).
- [http://www.rcmp-grc.gc.ca/prot\\_ops/index\\_e.htm](http://www.rcmp-grc.gc.ca/prot_ops/index_e.htm)(2007년 3월 30일 검색).
- <http://www.npa.go.jp/english/kokusai/pdf/04.pdf>(2007년 3월 30일 검색).
- <http://www.npa.go.jp/english/kokusai/pdf/08.pdf>(2007년 3월 30일 검색).
- <http://www.whitehouse.gov/homeland/>.
- <http://aspire7.hihome.com/reference/bigbrother-1.htm>:
- <http://www.treas.gov/usss/history.shtml>.
- [http://www.secretservice.gov/whoweare\\_ud.shtml](http://www.secretservice.gov/whoweare_ud.shtml)(2007년 3월 31일 검색).
- <http://www.secretservice.gov/faq.shtml#faq9>(2007년 3월 31일 검색).
- <http://www.secretservice.gov/protection.shtml>(2007년 3월 31일 검색).
- <http://en.wikipedia.org/wiki/Image:SecretServiceAgent.jpg>(2007년 3월 31일 검색).
- <http://www.secretservice.gov/investigations.shtml>(2007년 3월 31일 검색).
- [http://www.secretservice.gov/whoweare\\_ud.shtml](http://www.secretservice.gov/whoweare_ud.shtml)(2007년 3월 31일 검색).
-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Secret\\_Service](http://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Secret_Service)(2007년 3월 31일 검색).
- [http://www.secretservice.gov/kids\\_faq.shtml](http://www.secretservice.gov/kids_faq.shtml)(2007년 3월 31일 검색).
- [http://en.wikipedia.org/wiki/Image:US\\_Secret\\_Service\\_officers.jpg](http://en.wikipedia.org/wiki/Image:US_Secret_Service_officers.jpg)(2007년 3월 31일 검색).
- [http://www.secretservice.gov/field\\_offices.shtml](http://www.secretservice.gov/field_offices.shtml)(2007년 3월 31일 검색).

<http://www.secretservice.gov/director.shtml>(2007년 3월 31일 검색)

<http://www.secretservice.gov/depdirector.shtml>(2007년 3월 31일 검색).

<http://www.treas.gov/usss/protection>.

[http://www.secretservice.gov/kids\\_faq.shtml](http://www.secretservice.gov/kids_faq.shtml).

<http://www.secretservice.gov/faq.shtml#faq23>(2007년 3월 31일 검색).

<http://www.state.gov/m/ds/about/faq/>(2007년 3월 31일 검색).

<http://www.state.gov/m/ds/>(2007년 3월 31일 검색).

<http://www.state.gov/m/ds/protection/c8756.htm> (2007년 3월 31일 검색).

<http://www.state.gov/m/ds/about/overview/>(2007년 3월 31일 검색).

<http://www.state.gov/m/ds/about/overview/c9010.htm>(2007년 3월 31일 검색).

<http://www.state.gov/m/ds/about/overview/c9004.htm>(2007년 3월 31일 검색).

<http://www.state.gov/m/ds/about/>(2007년 3월 31일 검색).

<http://www.state.gov/m/ds/career/>(2007년 3월 31일 검색).

<http://www.state.gov/m/ds/career/c8853.htm>(2007년 3월 31일 검색).